

R 937 | 2021. 10. |

농촌 지역사회에서 여성농업인 지위와 정책 과제

The Roles of Rural Women and Gender Inequality in
Local Communities

임소영 김남훈 박대식 하인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R 937 | 2021. 10. |

농촌 지역사회에서 여성농업인 지위와 정책 과제

The Roles of Rural Women and Gender Inequality in
Local Communities

임소영 김남훈 박대식 하인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 담당

임소영 | 연구위원 | 연구 총괄, 제4, 6장

김남훈 | 부산대학교 조교수 | 제3, 5장 면접 및 설문조사

박대식 | 명예선임연구위원 | 제1, 2장 선행연구 및 이론 정리

하인혜 | 연구원 | 자료 수집 및 국내 사례 조사

연구보고 R937

농촌 지역사회에서 여성농업인 지위와 정책 과제

등 록 |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 2021. 10.

발 행 인 | 김홍상

발 행 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 쇄 처 | 에이치에이엔컴퍼니

I S B N | 979-11-6149-521-7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농촌 지역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은 다양하다. 농산물 생산자일 뿐만 아니라 마을 행사, 돌봄, 마을 가꾸기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역사회를 유지하는 활동을 한다. 농촌의 고령화가 심각하고 농업 외 경제활동의 필요성이 더욱 늘어난 지금 여성농업인은 그 어느 때보다 바쁘다.

그러나 여성농업인이 지역사회에서 공헌하는 만큼의 대우를 받거나 남성과 동등한 위치를 누리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대답하기 어렵다. 오히려 생산자로서의 대표성, 지역사회 활동의 성별 분담과 보상 체계의 관점에서 여성농업인의 지위는 남성에 비해 낮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여성농업인에 대한 성적 침해도 자주 발생하여 인권이 보호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연구는 지역사회에서 여성농업인의 지위 실태와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이다. 농업인들이 스스로 인식하는 지위의 현주소와 근본 원인, 그리고 대안에 대한 논의가 이 연구의 주된 내용이다. 여성농업인의 지위와 농촌 지역의 성평등 문제는 매우 오래된 관행과 문화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정부의 노력과 함께 민간에서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도 제시하였다.

아무쪼록 이 연구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여성농업인에게 자부심을 부여해 줄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는 데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 자료 수집과 연구 방향 설정에 협조해 주신 활동가와 농업인, 농민단체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연구에 참여하거나 자문에 응해 주신 원내·외 전문가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한다.

2021. 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홍 상**

요 약

연구 목적

- 농촌 지역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역할이 중요하다.¹⁾ 여성농업인은 농업 노동력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돌봄 및 관리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농업인의 위상은 조력자 또는 주변인에 머물러 있는 것이 지역사회의 현실이다. 이 연구는 농촌 지역사회에서 여성농업인 지위를 파악하고 지위 향상을 위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여성농업인의 대표성, 여성농업인이 지역사회의 유지·발전을 위해서 하는 다양한 활동에 대한 인정의 정도, 지역사회 활동에 있어서 성 역할에 대한 인식, 여성농업인에 대한 인권 침해 정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파악된 실태와 원인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정부와 민간의 영역에서 취할 수 있는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 방법

- 이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의 문헌조사가 이루어졌다. 우선 사회학, 여성학 등 관련 이론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한 국내 정책과 일본의 사례, 민간에서의 다양한 시도를 통해 민간과 정부의 대응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찾기 위하여 문헌조사를 실시하고 외부 전문가에게 원고를 위탁 의뢰하였다. 국내와 일본의 정책에 대해 검토하면서 관련 통계를 이용한 기초 분석도 이루어졌다.

1) 지역사회는 일정한 지역에서 지역사회 주민이 함께 거주하면서 상호관계를 맺고 생활하는 지리적 지역사회와 함께 이해와 관심을 기반으로 생활하는 기능적 사회를 포함한다(김경섭 외 2012).

- 농업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는 전국 단위 농업인 표본(여성 848명, 남성 376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여성농업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주관적 인식, 지역사회에서 성별 간 역할 분담, 여성농업인의 지역사회 기여에 대한 공식적 인정 여부, 성 관련 인권 침해 현황을 파악하였다.
- 설문조사와 함께 면접조사도 실시되었다. 면접조사 대상은 여성농업인, 자치조직 대표, 지역개발 관련 위원, 지역농협 임원, 비공식 조직 대표, 여성농업인 센터 대표 등이다.

연구 결과

- 여성의 대표성과 관련된 지표를 보면 일견 여성농업인의 지위가 과거에 비해 나아진 것처럼 보인다. 경영주로 등록한 여성의 비율이 증가하였고 여성 조합원의 비율도 30%를 초과하였다. 농협 내 여성 임원 비율도 늘어났다. 그러나 농촌 지역에서 여성의 비중을 고려할 때 현재의 수준으로는 대표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수치상의 변화가 여성과 남성 간 동등성 확보의 결과라기보다는 남성 경영주의 사망에 따라 여성 가구원이 경영주 및 조합원 지위를 물려받은 사례도 많아 일종의 착시현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성 스스로가 전문적인 식견, 의견 개진 능력의 부족을 느껴 의사 표시에 소극적인 경우도 있고 실제 여성의 능력과 상관없이 여성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편견이 작용하여 여성의 의견이 무시되는 분위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 지역사회의 유지에 필요한 재생산 활동은 주로 돌봄, 가사노동과 유사한 형태를 가지는데 그러다 보니 남녀 모두 재생산 활동을 여성과 남성이 공동으로 담

당해야 할 것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여성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짙었다. 마을과 관련된 여러 활동에서 여성의 비중이 작지 않지만 행정기관과의 대관 업무나 전체 행사의 기획은 남성의 역할이고 이를 실행에 옮기고 조력하는 역할은 여성의 역할로 인식되고 있다. 가정 내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여전히 농촌사회에서 지배적인 가운데, 지역사회로 확장된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 성별 분업에 대한 인식이 고착화되어 있는 현실에서 여성의 재생산 노동에 대한 보상은 불필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여성농업인의 노동 부담이 과중함에도 불구하고 마을 공동밥상, 돌봄 활동은 여성농업인에게 돌아가고 있으나 마을에 대한 봉사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 여성농업인의 지위는 인권 보호와도 연결된다. 농촌 지역사회에서 여성 인권에 대한 침해는 주로 성적 침해의 형태로 많이 나타난다. 여성에 대한 성폭력·성희롱과 사생활 침해, 정상가족 강요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특히 청년 여성농업인이 이러한 성적 침해 문제에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농촌 지역의 거주 공간이 개방성이 높은 데다 원격지에 산재되어 있는 특성을 갖고 있어 도시에서 거주하다 농촌으로 이주한 청년 여성농업인이 성범죄를 우려하는 경우도 있다. 여성농업인의 인권 침해는 다만 여성에 대한 남성의 침해뿐만 아니라 여성 간 인권 침해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는 세대 간 가치관과 문화 차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고 이전 세대에서 답습되어 오던 성차별적인 시각이 젊은 세대에게도 계속해서 강요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이다.

정책 제언

- 지역사회에서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한 민간 부문의 대응은 다음과 같은 방향성하에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구성원 간 연대와 소통의 확대를 통해 공동체적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여성의 주체적 참여가 필요하다. 이해당사자인 구성원 특히 여성이 주축이 되어서 남성 구성원을 설득하고 스스로를 계몽시켜 나가는 것은 변화의 동력을 내재화하여 성차별을 타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는 힘이 된다. 셋째, 민간에서 시작된 대응 노력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보다 조직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민간에서의 시도를 행정기관이 인력·재정 측면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행정기관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과 같은 보다 공식화된 조직을 결성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동경영주 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동경영주의 권한과 자격요건에 대하여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어업경영체법」)에서 농업인의 유형을 경영주와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구분하고 경영주의 범위 안에 공동경영주를 포함시키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 농협 임원 중 여성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 실질적인 발언권 확보에 중요한 전략이라고 판단된다. 현재 여성 조합원이 30% 이상을 차지하는 조합에서만 여성 이사를 의무적으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성 조합원 구성 기준을 지금보다 낮출 필요가 있다. 또한 조합 평가 항목에 여성의 참여도를 포함하도록 한다면 농협이 자발적으로 여성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보다 많은 여성농업인이 논의의 장에 참여할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여성농업인의 리더십 강화를 위한 교육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 특히 농기계 등 설비 작동법을 교육하거나 회계/마케팅 등 전문 경영인이 되기 위한 소양을 갖추는 교육을 더 확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 참여가 용이하도록 교육시간을 저녁시간으로 배치하고 현장교육뿐만 아니라 온라인 교육을 확대하여 가능한 많은 여성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여성강사를 배치하는 등 환경적 측면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다.
- 시·군 또는 읍·면 단위에서 여성의 정치 참여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각종 위원회에서 여성의 비율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 지자체에서 지도층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성을 양성하기 위하여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성농업사 제도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 지역 내 재생산 활동에 대해서는 개인의 희생정신에 기대기보다 활동의 조직화와 제도화를 통해 공식적 노동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농촌 사회적 경제조직은 농축산물 생산, 농업 관련 산업, 돌봄·의료·교육·문화 서비스 등의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어 마을 내 재생산 활동을 공식화하는 통로로서 고려할 만하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조직의 구성과 운영에서 여성이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활동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 농번기 공동급식사업의 경우에는 지원 단가의 현실화와 마을 상황에 맞는 지원 방식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공동급식이 여성농업인의 추가적인 부담이 되지 않도록 외부업체를 활용하거나 지역 내 사회적 경제조직과의 연계를 높이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마을 구성원에 대한 성평등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때 성평등 교육은 여성의 관점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구성하고 강사를 양성하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성평등 교육은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에게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평등 교육은 여성과 남성 모두를 대상으로 하되 과정에 따라 여성 또는 남성을 분리하여 진행하거나 여성과 남성을 동시에 교육하는 식의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이장이나 정책 관련 의사결정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에게 성평등 교육을 의무화하거나 성평등 교육 수료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성평등 교육을 더욱 확산해야 한다.
- 여성에게 이루어지는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CCTV를 설치하고 순찰을 강화하는 등 공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일차적인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농촌으로 이주하는 여성농업인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임시 주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그러나 공적 개입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성폭력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마을 방범대를 조직하여 순찰을 돌거나 마을 내 성폭력·성희롱 고충 상담 창구를 설치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근본적으로는 의식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농촌형 성평등 강사의 육성을 더욱 지원하고 마을, 읍·면 단위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폭력예방교육을 신청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 지자체의 여성농업인 정책 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개정되어야 한다. 지자체 조례는 여성농업인의 정책참여 확대, 정책활동에 대한 지원, 성평등 인식 개선을 정책 과제로서 보다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또한 여성농업인 전담팀 설치를 명문화하여야 한다. 중앙정부는 전담인력을 확보하거나 전담팀을 구성하는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며 담당자에 대한 성평등

교육도 꾸준히 진행해야 한다. 각 지자체는 마을 내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 등을 수행할 때 지원 대상 선정 및 평가체계 속에 여성의 참여율, 대표급의 여성 비율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민간과 행정기관을 연결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여성농업인센터가 가정폭력 및 성폭력 관련 상담, 여성농업인 정책 문의,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Roles of Rural Women and Gender Inequality in Local Communities

Background and Purpose

- Women's roles are essential to maintaining local communities²⁾ in rural areas. They participate in the regional development and community care as well as farming labor, child/senior care, and household management. However, their status in society is limited to helpers or outsiders.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ir position in rural communities and suggest alternatives to improve it. Specifically, it seeks to inspect female farmers' representativeness in local society, recognition of their various activities for regional development, awareness of gender roles in community activities, and human rights violations against female farmers. Also, this study intends to suggest policy alternatives for the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based on detected problems and causes.

2) A local community includes a functional community where residents live in the same geographic space and share understanding and interests through mutual relationships. (Kim Kyeong-sup et al. 2012)

Research Methodology

- To achieve our goals mentioned above, we reviewed diverse prior literature, including related theories in sociology and women's studies. Also, we studied relevant documents to check domestic policies to improve female status in rural communities, Japanese cases, and various private-sector endeavors to find implications for policies and other alternatives in the public and private areas. Also, we commissioned external experts to write manuscripts for our review. In addition, we conducted statistical analysis for domestic and Japanese policies.
- We conducted surveys targeting farmers. The surveys sampled nationwide farmers (848 women and 376 men) to inspect women's awareness of their social and economic position, role sharing between genders, official recognition of female farmers' contribution to local communities, and the state of gender-related human rights violations.
- We also interviewed female farmers, heads of local organizations, members of local development committees, executive members of local Nonghyup or agricultural cooperatives, leaders of non-official groups, and representatives of female farmers' centers.

Key Findings

- Indicators on women's representativeness show their position has improved compared with the past. The number of women registered

as business owners has increased, and the ratio of female Nonghyup members is over 30%. Also, the proportion of female executives in Nonghyup expanded. However, considering the percentage of the female population in rural areas, their representativeness is insufficient. Also, the numerical changes do not denote gender equality. On the contrary, female family members inherit the status of the business owner or Nonghyup member upon the death of male members in their families, resulting in misleading information. In many cases, women are less active in expressing their opinions as they feel their expertise is insufficient. Also, their ideas are often ignored due to the social prejudice that women are not competent.

- Reproductive labor to maintain local communities have similar types, such as care and domestic chores. So, there is no recognition that men and women share those activities, which are consequently considered women's responsibilities. Although women have significant roles in village activities, men are in charge of planning events and working with administrative agencies. After some decision-making by men, women help to put those plans or decisions into action. The traditional concept of gender roles in the family in rural areas is relevant in local communities.
- As the awareness of gender division is deep-rooted, the compensation for women's labors for reproduction is considered unnecessary. Although women have heavy work burdens, they have to prepare joint meals for their villages and provide care. And these activities are

considered volunteer services for their villages.

- The social status of female farmers is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Human rights violations against women in local communities in rural areas are mainly in the form of sexual abuse. They include sexual violence, sexual harassment, invasion of privacy, and coercion to keep women in the traditional family type with parents and children. In particular, young female farmers suffer such sexual abuses. Also, as houses in rural areas are open and scattered remotely, young women migrators from cities are afraid of sexual offenses. Men usually commit human rights violations against women. However, in some cases, women violate other women's human rights. These cases result from differences in values or cultures among generations. Also, the traditional gender-biased view forced upon young generations is another cause for such violations.

Policy Suggestions

- The private sector's responses to improve the status of female farmers need to be in action as follows: First, joint responses through collaboration and communication among community members are essential. Second, women should participate actively. Their efforts to persuade men in their communities and enlighten themselves will serve as a drive engine for changes and eliminate gender discrimination. Third, a tightly-arranged approach is required to continue the private sector's endeavors. Administrative agencies

should support those endeavors by providing human and financial resources. Also, we believe that forming official organizations, such as cooperative associations, will be adequate to help the public sector engage in.

- Regarding the joint ownership regulation, the government should prepare legal grounds for its implementation and work to bring about social consensus on joint owners' qualifications through various debates. The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Agricultural and Fisheries Business Entities needs to categorize farmers into business holders and non-holders. Also, it has to specify joint owners in the category of business holders. Raising the ratio of women executives in Nonghyup is deemed to be a appropriate strategy to secure their rights to speak. At present, agricultural cooperatives (Nonghyup) with more than 30% of female members are mandated to select female directors. It is necessary to lower the rule for more female participation. In addition, if the assessment list for cooperatives includes women's participation, nonghyup will work voluntarily to help women's involvement.
- Female farmers' leadership enhancement programs are required. Training for farming machine operation and accounting/ marketing education to nurture professional business owners need to be enhanced. Night training for easy accessibility and in-person/ online programs will help more women enroll in those opportunities. Also, hiring female trainers will help raise women's enrollment because it is

expected to make the environment more comfortable.

- It is essential to raise the ratio of women in various committees for their involvement in local politics. Local governments need to benchmark Japan's female farmer system to foster women leaders.
- Concerning the reproductive labor in local communities, communities should recognize them as labor to be paid through specific platforms rather than expect individuals' sacrifices. As socioeconomic units in rural areas work for various categories, such as farm and livestock production, agricultural businesses, care, medical services, education, and cultural services, it will be desirable to use them as a channel to systemize reproductive labor. Also, fostering female farmers as activists will be helpful to enhance their leading roles in composing and operating socioeconomic organizations.
- Regarding the meal service for villagers during a busy farming season, we believe that the level of pay should be increased and seek more ways to alleviate the burden of rural women by diversifying the method of delivery.
- Villages should provide gender equality education. Education programs and lecturer fostering should be prepared in a detailed manner to reflect women's perspectives. Not only men but also women need education for gender equality. Therefore, education programs need to be diverse and flexible by training men and women

separately or simultaneously. Also, it is required to mandate village heads or decision-makers to enroll in education programs or provide incentives to those completing training programs.

- Primary responses to prevent sexual offenses against women are to set up surveillance cameras and enhance patrols. Also, villages need to consider ways to provide temporary houses for safety to female migrators from cities. However, as these public involvements have limitations, villagers should voluntarily work to prevent sexual violence. For example, organizing neighborhood watch units for patrolling or opening a counselling center for victims will be effective. As changes in awareness are required to root out offenses, it is essential to nurture lectures for gender equality and encourage villagers to voluntarily attend classes for gender equality.
- Local governments should revise ordinances to support the establishment of female farmer policies. The revised rules should clearly suggest women's participation in policies, support for their policy activities, and awareness of gender equality as policy tasks. In addition, they specify the setup of special units for female farmers. The central government needs to secure specialized human resources or provide incentives to local governments for composing special teams for female farmers. Also, gender equality should be provided continuously. Local governments should include women's participation and the ratio of women representatives in the screening process to select villages for development projects. In addition, they

help female farmers' centers play a mediating role between the private sector and administrative agencies by carrying out various projects for counseling for domestic violence and sexual offenses, female farmer policies, and education.

Researchers: Lim Soyeong, Kim Namhoon, Park Daesik, Ha Inhye

Research period: 2021. 1. ~ 2021. 10.

E-mail address: sylim@krei.re.kr

차 례

제1장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3
2. 연구 목적	5
3. 연구 범위 및 방법	6
4. 선행연구 검토	8
제2장 이론적 배경	21
1. 사회학 이론	23
2. 여성학 이론	26
3. 본 연구의 이론 활용	35
제3장 농촌 지역사회에서 여성농업인의 지위	37
1. 여성농업인의 지위에 관한 주관적 인식	39
2. 영역별 여성농업인의 지위 실태	44
3. 소결	69
제4장 여성농업인 지위 관련 정책	71
1. 중앙정부 부처별 여성농업인 지위 향상 정책	73
2. 지자체의 여성농업인 지위 관련 정책	80
3. 일본의 여성농업인 정책 사례	83
4. 한계와 개선 과제	91

제5장 민간분야 대응 사례와 시사점	93
1. 제주여민회의 성평등마을규약	95
2.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4리 먹뱅이 인형극단	98
3. 성폭력 근절을 위한 지리산 여성회의	101
4. 시사점	103
 제6장 지역사회에서 여성농업인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 과제	107
1. 여성농업인 지위 현황과 문제점	109
2.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 과제	112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과제	120
 부록	123
1. 여성농업인 지위 관련 설문조사 결과	123
2. 일본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 정책과 시사점	128
 참고문헌	157

표 차례

제1장

〈표 1-1〉 면접 참여자 특성	8
-------------------------	---

제3장

〈표 3-1〉 마을(행정리)에서 주관적 여성의 지위	40
〈표 3-2〉 마을 내 여성의 지위가 낮다고 생각하는 주된 이유(여성 대상 설문)	40
〈표 3-3〉 마을 내 성별 간 평등 대우 여부	41
〈표 3-4〉 남성과 여성의 본인 명의 재산 비교	42
〈표 3-5〉 남성과 여성의 교육 수준 비교	42
〈표 3-6〉 본인의 주관적 계층 의식	43
〈표 3-7〉 성평등 교육 이수 경험	43
〈표 3-8〉 여성의 사회적 지위 관련 영역별 점검 지표	45
〈표 3-9〉 농촌형 성평등 지표	46
〈표 3-10〉 2020년 여성 이·통장 현황	48
〈표 3-11〉 지역농협 여성 조합원 및 임원 현황(2021년 6월 기준)	49
〈표 3-12〉 여성의 지역 농·축협 가입 여부	49
〈표 3-13〉 작목반 가입 여부	50
〈표 3-14〉 시·군 단위 위원회 위원 활동 경험 여부	50
〈표 3-15〉 읍·면 동 기준 주민자치회(위원회) 위원 성별 현황('20. 12. 31. 기준) ..	51
〈표 3-16〉 여성 조합원의 지역농협 또는 축협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 기회 여부 ..	51
〈표 3-17〉 성별 일반협동조합 및 농업·어업·임업 협동조합 취업자 수 현황	52
〈표 3-18〉 지역농협 및 축협 조합원 가입 방식(여성 대상 설문)	53
〈표 3-19〉 마을에서 여성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이유(남성 대상 설문)	57
〈표 3-20〉 지역 농협 또는 축협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여성 대상 설문)	58
〈표 3-21〉 거주하는 마을의 봉사 활동 주 참여 주체(여성 대상 설문)	59
〈표 3-22〉 마을 봉사 활동 대가 지급 필요성	61
〈표 3-23〉 마을 봉사 활동의 책임 주체	62

〈표 3-24〉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도	65
〈표 3-25〉 여성의 인권에 대한 보호 여부(여성 대상 설문)	67
〈표 3-26〉 여성 인권 침해 유형(여성 대상 설문)	67
〈표 3-27〉 마을 및 면 단위 여성 쉼터나 문화 공간 필요 여부	69

제4장

〈표 4-1〉 공동경영주 현황	75
〈표 4-2〉 여성농업인 특화 교육과정	77
〈표 4-3〉 여성친화도시 현황('21년 1월 기준)	78
〈표 4-4〉 지역별 해바라기센터 현황	79
〈표 4-5〉 여성농업인 육성 조례 제정 현황	80
〈표 4-6〉 지자체별 여성농업인 전담 인력 현황	82
〈표 4-7〉 2020년 여성농업인이 빛나는 농업 창조를 위한 제언 개요	84
〈표 4-8〉 제5차 남녀공동참여기본계획의 성과목표	87
〈표 4-9〉 농업여자 프로젝트의 사업 내용	88

제5장

〈표 5-1〉 제주도 성평등 마을규약 표준조항	97
---------------------------------	----

부록 1

〈부표 1-1〉 응답자 일반 특성	123
〈부표 1-2〉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지위(여성 대상 설문)	125
〈부표 1-3〉 마을 내 성평등 인식(여성 대상 설문)	125
〈부표 1-4〉 마을의 중요한 일 결정 시 회의 참여 주체(여성 대상 설문)	125
〈부표 1-5〉 마을의 중요한 일 결정 시 여성 의견 존중 여부(여성 대상 설문)	125
〈부표 1-6〉 여성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주된 이유(여성 대상 설문)	126
〈부표 1-7〉 가입한 지역농협 및 축협 여성 조합원 의견 제시 시 의사결정 반영 여부(여성 대상 설문)	126

〈부표 1-8〉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여성이 의견 제시 시 정책 반영 여부(여성 대상 설문)	126
〈부표 1-9〉 현재 참여하고 있는 지역사회 단체(여성 대상 설문)	127
〈부표 1-10〉 지역사회 단체 가입하지 않은 주된 이유(여성 대상 설문)	127

부록 2

〈부표 2-1〉 여성농업인의 역할과 위상의 시대적 변화	129
〈부표 2-2〉 일반 농업 인구 중 여성의 비율	137
〈부표 2-3〉 연령별 농업 취업인구와 여성 비율	138
〈부표 2-4〉 연령별 신규 취농인 수 및 여성 비율(2018년)	139
〈부표 2-5〉 2020년 여성농업인이 빛나는 농업 창조를 위한 제언 개요	141
〈부표 2-6〉 가족경영협정 체결 내용(2020년 3월 기준)	145
〈부표 2-7〉 제5차 남녀공동참여기본계획의 성과목표	149
〈부표 2-8〉 농업여자 프로젝트의 사업 내용	150

그림 차례

제4장

〈그림 4-1〉 제5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체계도	74
〈그림 4-2〉 가족경영협정의 체결 수 추이	85
〈그림 4-3〉 여성 인정농업인 비율	86
〈그림 4-4〉 농업위원 및 농협 임원 중 여성 비율	87

제5장

〈그림 5-1〉 성평등마을규약 표준조항 구분 및 조항별 선정 이유	96
〈그림 5-2〉 먹뱅이 인형극단	100

부록 2

〈부도 2-1〉 여성이 바꾸는 미래의 농업 추진사업	136
〈부도 2-2〉 기간적 여성농업인 수와 평균연령	138
〈부도 2-3〉 가족경영협정의 체결 수 추이	144
〈부도 2-4〉 여성 인정농업인 비율	146
〈부도 2-5〉 농업위원 및 농협 임원 중 여성 비율	148

제1장

서론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농촌 지역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역할이 중요하다.³⁾ 여성농업인은 농업 노동력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돌봄 및 관리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농업 분야에서 기계화가 진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노동력은 농작업에서 빠질 수 없다. 발작물의 제초, 시비, 가지치기, 수확, 수확 후 처리, 가공뿐만 아니라 농기계 및 농기구 관리에 이르기까지 농산물 생산 전 단계에서 여성농업인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은 곳이 없다. 여성농업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응답자의 52.5%가 전체 농사일의 50% 이상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농사일의 75%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이 24.2%를 차지하고 있다(안석 외 2019: 50).

여성농업인은 가사노동과 육아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데다 농업활동을 겸하고 있으며, 농업소득만으로는 충분치 않기 때문에 농외활동에 나서는 등의 노동 부담이 과중하다. 이러한 가운데 여성농업인은 마을 가꾸기, 어르신 및 아동 돌봄,

3) 지역사회는 일정한 지역에서 지역사회 주민이 함께 거주하면서 상호관계를 맺고 생활하는 지리적 지역사회와 함께 이해와 관심을 기반으로 생활하는 기능적 지역사회를 포함한다(김경섭 외 2012).

마을 잔치나 체육행사 준비 등 각종 마을 관련 활동에 있어서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1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여성농업인 중 89.5%가 적어도 하나의 단체에 가입되어 있으며 마을 부녀회에 80.8%, 계에 57.3%, 농·수·축협에 27.8%가 가입하였다(임소영 외 2020: 123-124). 여성농업인이 참여하는 마을 활동의 대표적인 사례는 농번기 마을 공동 밥상이나 마을기업 및 농촌체험 마을 지원 등이다(안석 외 2019).

특히 농가인구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젊은 인력이 부족해짐에 따라 남아 있는 여성농업인의 활동 부담은 더욱 커지고, 지역사회 내에서의 여성농업인의 역할과 비중이 작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지위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박주희(2009)는 돌봄과 같은 사회적 재생산 활동과 농업 생산에서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동이 평가절하되거나 공식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안태윤 외(2014)는 농촌사회가 여성의 농업과 가사노동의 기여는 인정하는 수준까지 갔지만, 지역사회 리더로서 인정하지 못하고 여전히 남성 중심의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진혜민(2016)은 설문조사를 통해 여성농업인에게 부녀회, 작목반, 영농조합, 농협 등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하려는 의향이 있지만 지역사회 활동에서 남녀 차별을 느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김영정(2018)은 여성농업인이 전문성을 갖춘 활동가로 인정받기보다 사업에 동원되고 대상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여성의 경험과 기여가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마을의 돌봄을 전담하는 가족 내 가부장적 성 역할이 지역사회에 그대로 확장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임소영 외(2020)는 여성농업인의 대표성이 여전히 낮고 지역사회에서의 기여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료화하지 않고 있어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여성농업인의 대표성 제고와 지역개발사업에서 여성의 주체적 참여 확대를 정책 과제로 제시하였다.

여성농업인의 지위가 낮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여성의 대표성이

낮아 여성의 의견이 잘 수용되지 않는다는 점,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재생산 노동의 가치에 대한 인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여성농업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성적 침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는 가부장적 사고를 비판적 사유 없이 그대로 지역사회로 확대한 결과이며, 여성과 남성을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서로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공동체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영역에서 필요하며 공간적 관점에서는 삶의 터전인 지역사회에서 성평등이 실천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가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을 펼치더라도 지역사회에서 성평등이 이루어져야 국가 차원에서의 성평등 노력이 실효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에 대한 논의는 국가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성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지위 향상 면에서는 지역사회로 논의의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존 여성농업인 연구는 주로 국가 단위에서 여성농업인의 경제적·직업적 역할과 이에 따른 법적 지위 향상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농촌 지역사회 관점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과 지위를 파악하고 관련 정책을 제안한 연구는 없었다.

여성농업인이 참여하는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을 분석하고 지역사회에서 여성농업인이 갖는 지위를 질적·양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농촌 지역사회에서 여성농업인에게 걸맞은 지위를 파악하고 성차별 해소 및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농촌 지역사회에서 여성농업인 지위를 파악하고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여성농업인의 대표성, 여성농업인이 지역사회의 유지·발전을 위해 하는 다양한 활동에 대한 인정의 정도, 지역사회 활동에 있어서 성 역할에 대한 인식, 여성농업인에 대한 인권 침해 정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파악된 실태와 원인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정부와 민간의 영역에서 취할 수 있는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3. 연구 범위 및 방법

3.1. 연구 범위

지역사회는 지리적 범위, 사회적 상호작용, 구성원의 활동 영역을 토대로 행정 리 단위 마을에서 읍·면 및 시·군 단위의 지역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마을 내 여성농업인의 역할과 지위를 주로 연구하고, 일부 주제에 대해서는 할당제 등 차별 철폐 조치로 인해 외부적 배제가 개선된 읍·면과 시·군 단위 지위도 포함하여 조사한다.

이 연구에서는 농촌에서 지역사회 관련 역할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가능성 또는 의향이 있고, 농업 경영에 참여하는 여성을 여성농업인으로 정의하여 연구한다.

본 연구에서의 여성농업인은 직업적·법적 범위⁴⁾보다는 지역사회 관점에서 지리적·기능적 범위로 정의하여 농촌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농촌 여성의 일부까지 포함한다.

지역사회에서의 지위는 여성농업인이 지역사회 주체로서 활동 가능한가를 다른 주체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측정하고, 여성농업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다른

4) 여성농업인의 법적 정의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에 따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여성농업인, 즉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여성으로 정의할 수 있다.

집단과 비교하여 어느 위치에 있는가, 차별이 존재하는가 등으로 측정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루는 여성농업인의 지위는 성평등에 관한 논의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의 개념을 혼용하고 있다.

3.2. 연구 방법

이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의 문헌조사가 이루어졌다. 우선 사회학, 여성학 등 관련 이론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한 국내 정책과 일본의 사례, 민간에서의 다양한 시도를 통해 민간과 정부의 대응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찾기 위하여 문헌조사를 실시하고 외부 전문가에게 원고를 위탁 의뢰하였다. 국내와 일본의 정책에 대해 검토하면서 관련 통계를 이용한 기초 분석도 이루어졌다.

농촌 지역사회의 현실을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여성농업인의 지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도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는 전국 단위 농업인 표본(여성 848명, 남성 376명)을 대상으로 진행⁵⁾하였으며 여성농업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주관적 인식, 지역사회에서 성별 간 역할 분담, 여성농업인의 지역사회 기여에 대한 공식적 인정 여부, 성 관련 인권 침해 현황을 파악하였다.⁶⁾

설문조사로 나타나지 않는 내밀한 사정을 파악하고 연구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서, 지역 내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여성 또는 남성을 대상으로 집단 면접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면접조사 대상은 여성농업인, 자치조직 대표, 지역개발 관련 위원, 지역농협 임원, 비공식 조직 대표, 여성농업인센터 대표 등이며 지역사회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지위, 차별 현황과 원인을 분석하

5) 통계청 인구조사를 활용하여 광역별·연령별 인구 비례 추출하였으며 농촌 거주 비농업인을 제외하고 여성과 남성을 7대 3의 비율로 나누어 면접조사를 진행하였다.

6) 설문응답자의 기본 특성은 〈부표 1-1〉을 참고.

였다. 또한 여성농업인 활동가, 대표자, 임원, 위원회 위원(장) 등 현장 활동가와 여성농업인 관련 여성학, 농촌 사회학 관련 학계 전문가와 협의회 및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표 1-1〉 면접 참여자 특성

구분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합계
생산자 단체		2	2	4		8
마을 리더		1		1	2	4
개인 농업인	4		1			5
현장 활동가		1	3			4
사회적경제조직			1			1
합계	4	4	7	5	2	22

자료: 자체 작성.

4. 선행연구 검토

4.1. 여성농업인 운동 경과

1970년대 새마을 부녀지도자들이 새마을운동에 참여한 것은 가부장제와의 협상(the bargaining with patriarchy)을 전략으로 농촌 지역사회에 등장하였다(유정미 2001). 부녀지도자가 새마을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이유는 가부장적 억압의 현실, 근대화에 따른 삶의 양식 변화를 배경으로 여성의 삶을 조정할 수 있는 권력 창출 기회로 여겼기 때문이다. 그동안 농촌 여성은 가사일과 농업생산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고 가부장적 전통 때문에 성별 위계로부터 고통을 겪었다. 그러나 가족계획과 생활개선 사업의 영향으로 가사노동이 감소하여 부녀지도자들이 새마을운동에서 공적 영역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획득하였다.

국가가 부녀지도자를 선출한 이유는 국가 계획을 선전하고 여성노동력을 동원할 주체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부녀지도자도 지역사회에서 여성을 조직화하여 각종 사업 등에서 권리를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궁극적으로 부녀지도자의 새마을운동 참여는 가부장제에 대한 저항과 타협의 과정이었다. 부녀지도자가 공적 영역의 활동을 경험하면서 불평등한 성별 위계에 저항하였으며 공적 영역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배제된 사회적 기회를 회복하고자 하였고 이를 국가발전 담론을 통해 정당화하였다. 그러나 성별 위계에 전면적으로 도전할 수 없었고 공적 영역에서 활동하되 성 역할 이분법에 따른 의무와 규범을 지키는 것으로 타협하였다.

부녀지도자는 국가와 관계하여 가부장제와 협상을 전략화하였다. 새마을운동을 통해 국가를 여성 권리 향상의 후원자로 인식하고 국가를 통해 사적 가부장을 견제하였다. 국가를 통한 정당성 확보는 가부장제에 대한 전면적 대결이 아니라 가부장적 성격의 한계와 타협하게 되었다.

1960~70년대에 농촌 여성은 국가개발정책의 지원을 받아 농촌 부녀조직을 형성하고 가정 밖 공적 영역으로 진출하였으나, 지역사회 내 성별 분업과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집단 권력화까지 나아가지 못했다(신현옥 2000).

국가는 가족계획과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국가 차원의 지원과 여성의 자발성을 기반으로 농촌에 마을 부녀조직 형성을 촉진하였다. 지역사회에 국가가 직접 참여를 피하면서 여성공동체를 활용한 효율적 개발정책을 추진하였다.

마을 부녀조직의 지역사회 활동은 마을 가꾸기로 제한되었다. 마을 가꾸기는 절미저축을 통한 공동기금 조성, 구판장 운영, 탁아소 운영, 불우이웃돕기 등 지역사회 개발사업의 비가시적 영역이었다. 마을의 자원을 유지·관리하고 마을의 복지와 재생산과 관련된 활동이다.

여성지도자는 초기에 남편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선정되었지만, 점차 자익과 능력, 교육 수준이 향상되었다. 행정기관과 지역 여성의 접촉창구 역할을 담당했으며 지역 여성의 입장을 대변하고 조언하는 상담자 역할을 담당하였다.

부녀조직은 지역개발프로그램을 집행하는 실행자, 생활 정보를 제공하는 공간

으로 기능하였다. 그러나 부녀조직의 역할은 비공식 영역에서 이루어진 내조자로 제한되었다.

부녀조직 활동은 여성의 역할과 활동 영역을 가정 밖으로 확대하여 공적 영역으로 진입을 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나 이는 여성의 지위 향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지역사회에서 부녀조직이라는 새로운 정치적 공간에서 가부장제와 타협하여 개별적 권력화를 시도했지만, 여성의 집단적 권력화는 달성하지 못했다.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 여성농업인 조직이 생겨나고, 1980년대 사회운동의 발전과 더불어 여성농업인 운동도 사회의 한 부문운동으로 발전하였다(박신규·정은정 2010).

여성농업인 운동은 1977년 카톨릭농민회 여성부와 카톨릭농촌여성회(후에 카톨릭여성농민회)가 출범하면서 조직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1989년 12월에는 전국여성농민위원회가 결성되었고, 1990년에는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한여농)으로 명칭을 바꾸었다(고은실 1991; 정명채 외 1995; 정명채 2003).

1990년대에 이르러 여성농업인 운동은 자주적 여성농업인 운동으로서 독자조직을 결성하고 여성농업인의 생산자로서의 지위 향상, 사회참여 등을 실현하기 위한 운동을 펼쳤다(박신규·정은정 2010). 1996년에는 농업인 후계자 부인과 여성농업인 후계자들의 조직인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한여농)와 농협중앙회가 연계하여 젊은 부녀회원을 중심으로 지역농협 단위로 조직된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농가주부모임)가 창립되었다(이선영·황미진 2019; 황미진 외 2017).⁷⁾

2000년대부터는 여성농업인 운동 진영은 ‘씨앗을 지키는 여성농업인’을 내세움으로써 경계와 연대를 통해 정체성을 기획하고 확장한다. 여성농업인 운동권도 국제연대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그러나 투쟁만으로는 지금의 농업현실을 풀어나갈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대안을 만드는 투쟁’을 강조하고 있다(박신규·정은정 2010).

7) 농촌진흥청과 연계된 여성농업인 조직인 ‘한국생활개선회(생활개선회)’는 1958년에 창립되었다.

4.2. 지역사회와 여성

박주희(2009)는 주민주도형 농촌 마을만들기에서 여성 노동의 중요성을 자생적 마을만들기를 실험한 마을 사례에서 주민 경험을 중심으로 성별 분업, 여성 노동의 과중화 양상 등을 분석하였다. 농촌 여성은 사회적 재생산뿐만 아니라 친환경 농업 등의 생산에서도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지만 여성 노동은 평가절하되거나 미지불 노동 형태로 나타났다. 특히, 나눔과 봉사라는 이름은 노동 착취를 은폐하는 기제로 작용하였다.

정부가 공모하는 마을개발사업에서 사업을 구상하는 주체와 실제 행위하는 주체가 분리되고, 성별분업하에서 여성의 노동이 과중화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임금노동에서 배제된 사회적 돌봄에 대한 재평가와 보상은 화폐를 중심으로 한 자본 형태가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임춘희·송인하(2010)는 농촌 마을공동체 참여에 여성이 배제되는 형상을 젠더레짐(Gender Regime)⁸⁾으로 설명하면서 마을공동체운동에서 젠더레짐이 고려되지 않고 있음을 밝혔다. 농촌에서 여성 인구는 증가하며 공동체 내 사회적 자본 축적에 남성보다 더 많이 기여하지만 젠더레짐은 여전히 여성의 참여를 제약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특히 외부와 연계하는 사회적 자본 형성에는 여성의 참여가 제한된다. 마을공동체의 외부연결망에는 암묵적으로 남성의 역할이 당연시되는 성차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현재 농촌 지역에서 추진되는 마을공동체 운동에서 공동체 구성원이 여성을 배제하는 비민주적 젠더의식을 탈피하지 못하면 마을공동체 운동의 성과는 여성의 입장을 배제한 절반의 효과에 그칠 수 있다. 농촌의 마을공동체 운동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려면 구성원의 교육과 사회화에 젠더 관점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실행해야 한다.

최유진 외(2013)는 사회적 자본을 사람들 사이에 네트워크가 형성됨으로써 생

8) 젠더에 의해 통치되는 방식을 의미한다. 다음 장에서 더 자세히 설명한다.

겨나는 무형자산으로 정의하고, 여성농업인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인적자본 개발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활성화와 지속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주민의 모임 참여는 성별에 따라서 사회자본화 가능성이 차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마을 일과 관련된 의사결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하는 반면에 여성은 경로잔치와 같은 문화 활동을 중요시한다.

여성농업인과 남성농업인은 지인 네트워크의 규모와 구성에 있어서 차별적이다. 남성농업인은 여성농업인에 비해서 친하게 지내는 마을 밖 지인이 상대적으로 많다. 여성농업인은 활동하는 모임 및 단체의 수가 상대적으로 협소하고 활동 정도가 낮은 경향이 있다.

사회관계 다양화를 위한 지원 방안으로 ① 일회성 교육보다는 정기적으로 지속되는 교육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함, ② 부녀회장의 성인지적 리더십이 요청됨, ③ 농외소득 활동이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자본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향후의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④ 농업 교육이나 각종 사업에서 부부 동반 또는 여성농업인 참여 시에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사회 활동을 촉진함, ⑤ 사회단체는 여성농업인에게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증진시킬 수 있음 등을 제시하였다.

안상수 외(2013)는 여성농업인센터를 중심으로 여성농업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제약 요인을 검토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책제언으로는 ① 여성농업인의 농업생산 및 농업경영 주체로서의 인식 제고, ② 미설치 기초지자체 지역으로 여성농업인센터 설립 확대, ③ 역량강화교육 여성농업인 참여율 제고, ④ 여성농업인센터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강화, ⑤ 여성농업인센터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지원 방안 모색: 협업사업 개발 등, ⑥ 여성농업인센터 정체성 재정립: 역량교육 및 상담사업의 강화, ⑦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 콘텐츠 지원 강화, ⑧ 역량교육 사업 관련 강사 인력풀 구축 등을 강조하였다.

조연숙(2015)은 마을공동체 내 젠더이슈를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활동가와 참여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보고 성인지 관점에서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구성원의 성별 차이가 마을 활동의 장애 요인으로 나타남

에 따라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구성원의 성별 특성과 관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여성과 남성이 성평등 가치에 갖는 지향성은 유사하고 돌봄과 양육에 대한 성별 고정 관념이 약화되었지만 위원회 구성에서 여성의 과소대표성이 존재하며 대표 지위에는 여전히 남성의 비중이 높은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마을공동체가 더욱 활성화되려면 성인지 관점에서 성평등 가치 강조, 의사결정 및 행정구조의 성별 특성 반영, 마을활동가 및 참여자에 대한 성인지 의식 교육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임선주·정경운(2016)은 농촌 마을기업에 참여한 고령 여성의 노동 현실을 파악하고, 한국사회에 작동하는 여성 노동 신화 도출을 목적으로 하였다. 농촌 마을기업은 농촌 소득 향상과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인식되지만 마을기업 참여자가 고령 여성인 상황에서 노동량 증대, 노동 영역의 다각화 등 결과적으로 노동 과중이라는 문제점을 낳았다.

이 연구에서는 농촌 생산구조의 변화와 여성 노동 현황을 파악하고 농촌 고령 여성 참여의 사례를 홍보하기 위한 기사를 선별하여 여성 노동 신화를 도출하였다. 여성 노동 신화를 노동중독, 저임금의 지배, 상품에 대한 모성적 판타지, 새로운 보살핌의 통치라는 네 가지 측면에서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현재 농촌의 소득 창출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다수의 농촌 정책이 고령여성 스스로 ‘일해야 살아 있다’라는 신념을 내면화시켜 노동중독에 가까운 일상을 겪게 하였다. 그동안 금전적으로 보상받지 못했던 재생산 노동에 비해 현금을 지급받는 사실을 주지시켜 저임금을 수용하도록 하였다. 마을기업이 제공하는 일자리 창출은 고령여성을 돌봄의 대상이 아닌 소득 창출을 위한 예비 인력으로 간주하였다.

김영정(2018)은 마을공동체와 여성의 관계를 돌봄의 가치와 공공성 추구의 차원에서 재조명하고, 여성의 임파워먼트와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거점으로서 마을공동체의 가능성과 한계를 참여자의 개인적 경험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마을공동체 활동의 대부분이 여성의 참여에 의해 이루어짐에도 마을과 여성의

관계는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

사례에 따르면 여성은 아이 돌봄을 매개로 사적 네트워크를 시작하면서 조직적 모양새를 갖추어 사업 주체가 되는 성장을 경험하고 활동의 공공성을 획득하였다. 마을공동체 활동이 개인 차원을 넘어 주제 의식과 영역을 확장하고 단순 참여가 아닌 활동을 지속한다. 이 과정에서 친밀성에 기초한 공공성을 확보하였다.

전문성을 갖춘 활동가로 인정받기보다 사업에 동원되고 대상화되는 인식을 가지는 한계가 있다. 여성의 경험과 기여가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마을의 돌봄을 전담하는 가족 내 가부장적 성 역할이 지역사회에 그대로 확장된다.

마을공동체는 돌봄의 가치를 확산하고 여성의 지역사회 참여 교두보로서 기능하는가, 아니면 가정의 가부장 위치를 지역사회로 그대로 이동하여 여성을 동원 대상으로 인식하는가의 기로에 있다.

이중구(2020)는 여성 이장의 선출과정과 활동상을 조사하여 마을사회의 여성 리더의 성장 배경과 그것이 갖는 정치적 의미를 탐색하였다.

사례 마을에서 여성이 마을의 리더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에 세력화된 여성단체의 활동이 긍정적인 이력으로 작용했으며, 여성들이 사회 활동을 통해서 형성한 인맥을 통해서 필요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성인구가 남성인구보다 많은 여초 현상을 보이는 마을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여성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진 점도 중요한 요인이었다.

여성 리더의 선출과 활동을 통해서 읽을 수 있었던 의미는 여성 주체성과 여성 리더십의 발현이다.

여성이 마을 리더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다음과 같다. ① 여성단체의 존재는 세력화를 통해 여성들의 정치적 입지를 향상시킨다. ② 사회단체를 통한 사회 활동은 여성 리더의 배출에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 ③ 여성의 사회활동은 지역사회의 유력 인사와의 접촉을 확대하고, 이때 형성한 인맥을 통해서 여성이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기여한다.

진명숙(2020)은 여성 중심의 친밀과 돌봄 기반의 사회경제적 활동에 나타나는 여성 주체의 행위자성에 주목하면서, 이러한 활동에 내포된 여성적 저항의 의미

를 찾고자 하였다. 돌봄 실천이 가부장제에 균열을 가하는 정치·경제적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여성을 위한 친밀한 장소를 만드는 과정은 농촌의 지배적인 가부장적 장소성에 균열을 가하는 여성의 행위자성을 보여준다.

교육 돌봄, 노인 돌봄, 상호돌봄 기반의 공동체적 활동은 지역 생활 정치의 장을 형성하고, 남성을 돌봄의 파트너로 참여시켜, 남성도 돌봄을 함께해야 한다는 대항 담론을 제시한다.

커뮤니티와 돌봄 활동을 둘러싸고 여성들 간에 다양한 목소리와 차이가 존재한다. 교육 친밀과 돌봄 기반의 공동체적 활동은 가부장제 맥락을 벗어나 생성적 차이를 낼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현혜경·라해문(2020)은 제주지역의 마을운영규약의 개선 과제를 검토하면서 마을규약에서 성평등 요소가 부족함을 지적하였다. 제주지역의 마을에서는 여성과 남성의 역할이 분업화된 형태로 고정되어 있으며 여성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마을규약에서 성평등 요소를 담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규약의 목적에 “민주적이고 성평등한 마을 운영”을 명시하도록 하고 권리 조항에서는 여성의 의사결정권, 참여권, 발언권 보장을 명시하고 1인1표제의 시행, 피선거권 부여를 제도화하도록 제안하였다.

4.3. 여성농업인 역할과 지위

조관일(2006)은 농촌의 구조가 바뀌면서 원시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농촌에서 여성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그 변화 요인이 무엇인지 역사적·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현재 농업·농촌의 여건에서 농촌 여성이 처해 있는 위상과 상황을 규명하고 농촌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농업정책이 수립되고 발전되어야 하는지 모색하였다.

농가 노동이 부부노동 중심으로 변하고 농업소득 부족 때문에 농촌 여성의 농업 참여가 늘어났다. 단순노동 중심의 농업에서 경영능력이 중요한 농업으로 구

조가 변화하면서 여성농업인이 농업에서 수행하는 역할도 증가하였다. 따라서 농사보조자로서 위치를 벗어나 공동 농업경영주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며, 농작업 기계화와 농가소득 증대 방안 등을 논의해야 한다.

강혜정(2008)은 여성농업인의 경제 활동 실태와 특징을 분석하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여성농업인은 다양한 영농 활동에 대한 욕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영농과 가사의 조화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여성농업인이 경제 활동 참여를 촉진하려면 가사노동의 부담을 줄여주는 경제적·사회적 정책이 필요하다.

박대식·최경은(2008)은 주요 농업선진국의 여성농업인 지위 현황을 분석하고 여성농업인이 공동경영주로서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 기반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일본, 프랑스, 벨기에 등 농업선진국의 여성농업인 지위 현황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여성농업인의 지위와 비교하여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공동경영주의 개념과 인정 기준 설정,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 확립, 가족경영협약의 확산, 농가경영체 등록 및 농지원부제도의 개선 등 여성농업인 관련 각종 법령과 제도의 개선을 제안하였다.

오미란(2009)은 여성농업인의 노동과정 참여와 서비스 수혜의 지위평등성 문제에 대한 기존 논의를 검토하여 여성농업인의 지위평등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농업노동과정에 참여하는 여성들의 성불평등 현황을 ① 농지 소유 규모에 따른 법적 지위, ② 통장 기준 농작업 거래 내역, ③ 연간 투여된 농작업 시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여성농업인의 직업인으로서의 법적 지위는 매우 불안정하고 제도상에서 가해지는 불평등은 산재해 있으며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의 성불평등성은 각종 농업 정책 및 기타 복지정책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요소가 매우 크다.

여성농업인의 지위에 대한 법적 불평등성을 개선하는 것은 여성농업인의 성평등성 개선을 위한 차별시정에서 무엇보다도 우선적인 과제이다.

정은미 외(2012b, 2013)는 여성농업인이 경제·사회 활동, 경영자, 리더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여성농업인의 잠재능력을 끌어낼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여성

농업인의 경제사회 활동을 유도하고자 여성농업인이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관련 법·제도, 지원조직 등 여성농업인 지원체계를 검토하였다.

여성농업인은 가사와 노동을 병행하는 과중한 노동 부담 때문에 경제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과중한 노동 부담을 줄이고 경제사회 활동 참여를 촉진하려면 여성농업인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제안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반영하는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농가도우미 제도를 확대하고 농번기 마을급식사업 등 지역 단위 사업을 활용하여 여성농업인의 노동 부담을 줄이는 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여성농업인의 공동경영주 등록을 확대하여 경영 주체로서 법적 지위를 보장하여 농업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강혜정(2013)은 여성농업인의 농업경영 의사결정 참여 실태를 파악하고 의사결정 참여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여성농업인이 농업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기회는 매우 적다. 특히 농가자산이나 재무 관련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경우가 적어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전업 여성농업인이 남성과 함께 농업경영 주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공동경영주로서의 지위를 보장하고 여성농업인 명의의 재산 소유 비중을 늘리는 정책 등을 추진해야 한다.

안태윤 외(2014)는 경기도 농촌 여성의 농업 참여 실태, 가사분담 및 자녀양육 등의 가족 내 역할, 지역사회 활동 참여 실태를 조사하였다. 농촌 여성의 가족 및 지역사회 기여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사회경제적 지위와 권리를 인정받는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농촌 여성은 의사결정 부분에서 도시 여성과 비교하여 참여율이 낮아 자신들의 의사를 농업경영에 반영하기 어렵다. 농업종사 여성은 일반 여성과 비교하여 여가 시간이 부족하고 자기 계발 시간도 부족하여 충분한 휴식과 역량 향상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다. 농업소득도 도시와 비교해 낮아 안정적 소득도 기대하기 어렵다. 이 연구의 특징은 농촌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을 분석한 데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촌사회에서 여성이 지역사회 리더로 활동하는 데

대한 지역의 인식이 긍정적이지 않다. 농촌사회가 여성이 농업과 가사의 기여는 인정하는 수준까지 갔지만, 지역사회 리더로서 인정하지 못하고 여전히 남성 중심의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농촌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여성발전기금을 활용한 지원, 여성지원시설 확충, 여성농업인센터 활성화, 농촌 여성을 위한 교육 내용 제고, 여성농업인 관련 조례 제정 및 개정, 양성평등에 기반한 농업 관련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진혜민(2016)은 경북지역 여성농업인의 사회경제적 역할 및 지위 정도를 살펴보고 경북지역 여성농업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여성농업인의 사회경제적 역할 및 지위 현황으로 직업인으로서 지위, 자산보유 현황, 가사노동분담, 농사일 담당 비중, 전체소득 기여율, 농촌 여성으로서의 고충 순위, 여성농업인 분야별 스스로의 인식, 여성농업인 현재 및 향후 지위 결과를 조사하였다.

여성농업인은 가사와 농사일 부담 때문에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렵다고 응답했으며 경영주보다는 가족종사자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부녀회, 작목반, 영농조합, 농협 등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하려는 의향이 있지만 지역사회 활동에서 남녀 차별을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여성농업인 지위 향상을 위해서는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설치, 우선 정책 과제 추진, 조례 제·개정, 농촌 마을 공동급식시설 지원, 공동경영주 등록 확대, 양성평등의식 확산, 인식 개선 및 역량 교육 강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특히 여성농업인의 지역사회 지위 향상을 위해서는 각종 농정 위원회와 생산자 조직 참여 비율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어 주목할 만하다.

엄진영 외(2018)는 여성농업인의 영농 활동 실태를 분석하고 영농 활동에 있어 변화된 여성농업인의 역할과 위치, 정책 수요 등을 연구하였다.

여성농업인의 농사일, 특히 밭작물의 농사일 담당 비중이 증가하여 향후 농업 생산에서 여성농업인 역할은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여성농업인의 노동 부담을 완화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서 정책 인지도 개선, 여성친화형

농기계(임대) 사업 확대,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사업 개선과 확대, 세대별 맞춤형 교육 체계 마련, 인식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엄진영 외(2018)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영농집단별 영농활동 비중 차이와 변화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노동 경감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은미 외(2020)는 여성농업인 관련 법률 및 제도와 해외사례를 분석하여 공동경영주의 자격 기준과 이에 합당한 법적 지위를 제시하고 공동경영주 등록 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농업 관련 법률에서 공동경영주 자격은 경영주 외 농업인에 불과하여 경영주의 권리와 의무가 없다. 따라서 많은 여성농업인이 공동경영주가 아닌 별도의 경영체로 분리하여 경영주로 등록하고 있다.

공동경영주 등록이 곧 경영주가 되어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동경영주의 법적 지위를 법률에 명확하게 포함시켜야 한다.

정은미·민자혜(2013)에서도 여성농업인 관련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여성농업인 정책 추진체계의 한계점을 보여주었다.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 여성의 공동경영주 등록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하며, 여성농업인 육성법과 조례 제정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4.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기존 여성농업인 연구는 주로 여성농업인의 경제적·직업적 역할과 이에 따른 법적 지위 향상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지역사회에서의 여성농업인 역할과 지위 현황을 파악하고 지위 향상 정책을 제안한 연구는 부족했다.

여성농업인을 주로 농가의 경제활동 주체로 인식하고 영농 활동을 위한 농업경영 능력 육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대부분으로 여성농업인이 농업에 경영 주체로서 참여하도록 공동경영주 지위 보장 및 경영체 등록 제도 등의 법적 지위 향상과 여성농업인의 가사와 농업 활동 병행 때문에 발생하는 노동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 및 지원체계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일부 지방자치단체 연구에서 지역사회에서의 여성농업인 역할과 지위 현황을 분석하고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지만, 지역사회의 활동 영역별로 구체적인 역할과 지위 현황을 파악하거나 이에 대응한 정책을 제시한 연구는 없었다. 지역 차원의 조사와 정책 제시라는 점에서도 한계가 있다.

또한 마을 내 여성 및 농촌 여성 관련 연구도 풍부하지만 대부분 마을만들기 및 마을개발사업 등 마을 재구조화나 과중한 노동 관련 주제를 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농업·농촌의 환경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지위를 다루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 연구는 여성농업인의 지위에 관한 논의를 경제적·법적 지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 의사결정 및 대표성에서의 배제 문제, 재생산 노동에 대한 가치 평가와 성별 분업,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부터의 보호로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공간적으로 여성농업인의 삶의 현장인 지역사회, 즉 마을, 읍·면, 시·군 단위에 집중한다는 면에서 타 연구와는 다르다. 또한 여성농업인의 지위 실태 파악을 위해 질적·양적 분석을 적절히 혼합하여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제2장

이론적 배경

이론적 배경

1. 사회학 이론

1.1. 지위와 역할 이론

한 개인의 지위(地位, status)는 “어느 집단이나 사회 조직 내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위치(position)나 순위(rank)”로 정의되며 “집단 내의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자리(recognized position)”를 말한다(김선웅 2006: 127). 지위는 일반적으로 타인의 존경, 존중, 인정, 중요성, 위신(admiration and admiring respect by others) 등으로 정의한다(Anderson et al.; 2015, Fiske 2010; Gregg et al. 2018). 지위에 있는 개인이 존경할 만한 성품(perceived instrumental social value)(Leary et al. 2014)을 지녔고, 존경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발적으로 복종(voluntary deference)한다는 조건이 필요하다(Grosz et al. 2019). 지위는 사회적 의견(social opinion)이나 평판(reputation)을 통해서 측정할 수 있다(Koski et al. 2015; Gould 2002). 지위는 사회 위계(social hierarchy)에서 개인이 가지는 위치(position)를 의미한다(Swencionis & Fiske 2018; Sedikides & Guinote 2018). 따라서 상위 위계는 더 높은 지위를 의미한다(Fiske 2010).

사회적 지위를 이루고 있는 각각의 구성 요소 수준이 상대적으로 비슷한 수준에서 개인의 사회적 지위와 일치하지 못하는 경우를 지위불일치(地位不一致, status inconsistency) 또는 지위불균형(地位不均衡)이라고 한다(김선웅 2006). 지위불일치는 객관적인 척도에 따라 사회적으로 평가된 것이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도 적절한 지위를 갖지 못하면 지위불일치를 겪는 개인은 심리적 고통과 좌절을 겪는다.

예를 들어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에 변화가 있었지만 한국 여성이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열등한 부분이 지속되어 지위불균형 현상이 지속되었다. 교육의 양은 증대되고 사회참여도 양적 확대가 관찰되었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 진출이나 정치적 참여를 저해하는 사고는 여전히 존재한다(곽삼근 외 2012).

비슷한 개념으로 한 개인이 처해 있는 사회적 지위가 자신의 능력과 업적 또는 적성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주관적 지위와 거리가 있다고 느끼는 것을 지위불만족(地位不滿足, status discrepancy)이라고 한다(김선웅 2006).

역할 변화에도 사회적 지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지위와 역할의 불일치라고 한다(조판일 2006). 역할에 따라 사회적으로 평가한 지위와 현 지위와의 불일치를 의미한다고 보면 지위불일치와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1.2. 사회적 자본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은 “사회구성원의 공동문제해결을 위한 참여 조건 또는 특성” 또는 “공동이익을 위한 상호 조정과정과 협력을 촉진하는 사회적 조직의 특성”으로 정의된다.⁹⁾ 사회적 자본은 다면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학자들에 따라서 개념 정의와 핵심 구성 요소가 다양하다.

9) 한국행정학회 행정학전자사전(https://www.kapa21.or.kr/data/kapa_dictionary.php, 검색일: 2021. 2. 2.).

부르디외(Bourdieu 1986: 75)는 사회적 자본을 “특정한 집단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획득되는 실제적인 혹은 잠재적인 자원의 총합”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사회적 자본은 특정 집단에 소속됨으로써 획득할 수 있는 자원이나 이익을 의미하며, 네트워크를 사회적 자본의 핵심 구성 요소로 파악하였다.

콜만(Coleman 1988: 93)은 사회적 자본을 “다수의 행위자 간의 관계 구조 안에 내재하는 특수한 형태의 자원”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사회적 자본이란 사회적 관계에 참여하여 타인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콜만(Coleman 1988)은 사회적 자본을 신뢰와 의무(trustworthiness and obligations), 정보채널(information channels), 그리고 규범과 제재(norm and effective sanctions)로 구분하였다. 신뢰와 의무는 상호교환적인 특성을 가진다. 정보채널은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정보를 획득하는 능력을 말한다. 또한, 규범과 제재가 효과적으로 작동함으로써 범죄행위가 억제되고 강력한 사회적 자본이 형성된다.

퍼트남(Putnam 1993: 126)은 사회적 자본을 “연결망, 규범, 신뢰와 같이 상호 이익을 위한 협력과 조정을 쉽게 하는 사회조직의 특성”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퍼트남(Putnam)은 사회적 자본의 구성 요소로 연결망(네트워크), 호혜적 규범, 그리고 신뢰를 강조하였다. 퍼트남(Putnam 2000)은 사회적 자본을 결속형 사회적 자본(bonding social capital)과 연계형 사회적 자본(bridging social capital)으로 구분하였다. 결속형 사회적 자본은 배타적이고, 폐쇄적이며, 내부지향적인 경향이 있다. 따라서 결속형 사회적 자본은 집단 구성원들의 동질성과 충성심을 강화한다. 그러나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결속형 사회적 자본은 서로 다른 집단 구성원들에 대한 사회적 배제를 초래할 수 있다. 연계형 사회적 자본은 다양한 사회계층의 사람들을 포용하는 개방성과 외부지향적인 특성을 가진다. 연계형 사회적 자본은 구성원들 간의 연계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서로 다른 집단이나 더 큰 공동체에 연결되면서 외부 자산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외부에 대하여 포용적이다.

포르테스(Portes 1998)는 사회적 자본이란 사회 네트워크 또는 사회구조 안에서 구성원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았다.

사회적 자본은 개인적 수준과 집단적 수준으로 구분하여 접근할 수 있다. 개인적 수준으로 접근을 하는 경우, 사회적 자본은 사회 네트워크나 사회적 지지와 같은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파악하였다(Ferlander 2007; Nyqvist et al. 2006; 박대식 외(재인용) 2017). 집단적 수준으로 접근하는 경우, 사회적 자본은 지역사회 신뢰 정도, 집단의 응집력, 규범, 사회참여 등을 의미한다(Almedom 2005; Bjornstrom et al. 2013; Whitley & McKenzie 2005; 박대식 외(재인용) 2017).

국내 학자들의 경우에는, 한상미(2007)는 사회적 자본의 영역을 네트워크, 호혜성, 신뢰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최종혁 외(2010)는 사회적 자본의 구성 요인을 신뢰, 규범, 네트워크로 구분하였다. 김경화·신동호(2017)는 사회적 자본을 참여, 신뢰, 호혜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박대식 외(2017)는 사회적 자본을 신뢰, 네트워크, 규범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김혜연(2020)은 사회적 자본을 신뢰와 네트워크 참여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박선영·배광빈(2020)은 사회적 자본을 신뢰, 참여, 네트워크 나누어 측정하였다.

사회적 자본에 관한 국내외의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사회적 자본의 구성 요소로는 주로 신뢰, 네트워크, 규범 등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여성학 이론

2.1. 시민권(citizenship)과 가부장제(patriarchy)

시민권은 개인 또는 시민에게 구성원의 권리와 의미를 갖도록 하는 일종의 지위로서 공동체 구성원에게 차별 없이 부여되고, 동등한 지위를 공유한 시민은 공동체를 구성하고 운영한다.

마샬(Marshall 1992)은 시민권을 공민권(civil rights), 정치권(political rights),

사회권(social rights)의 세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공민권은 개인의 자유 보장, 정치권은 정치에 참여할 권리, 사회권은 사회보험 등의 국가에 의한 소득 보장 등을 의미한다. 이 중 사회권은 소득 보장과 함께 공적 영역에의 참여, 타인으로부터의 존중과 인정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회적 유산을 충분히 공유하고 당시의 지배적 기준에 따른 문명화된 삶의 수준을 누릴 수 있는 권리”로 발전하였다(황정미 2007: 14).

젠더와 시민권 논의는 주로 여성의 시민권 배제에 초점을 맞추어 시민권이 성별에 따라 다른 지위를 갖는다는 것을 드러내어 시민권의 성별화(gendered)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본다. 여성은 정치 영역에서 배제되는데 여성은 사적 영역, 남성은 공적 영역이라는 고정관념이 자리 잡으면서 남성은 공적 영역에서 정치권력을 행사하고 여성은 가사담당자로서 사적 영역에 제한되어 남성의 지배를 받는다. 따라서 성 중립성을 전제하는 사회 정책은 실제로 물성적(gender-blind)이라고 말한다.

동등한 기회와 권리와 함께 여성의 삶과 경험에 기반한 젠더 차별화된 시민권을 가져야 한다. 시민권 자체가 남성의 삶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남성의 삶을 표준으로 한 기준에 여성이 도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성의 가사·돌봄 노동은 의무로 규정되고 남성 노동을 표준으로 한 시장에서 여성은 표준을 채울 수 없다.

가부장제는 “가족의 대표자인 아버지가 가족 성원에 행사하는 일방적인 권위 혹은 지배”를 의미한다(조옥라 1986: 10). 가족 안에서 아버지의 지배라는 의미를 넘어서 남성이 우월한 위치에서 여성을 지배하고 여성은 종속적 의존 상태에 놓여 있는 체계를 말한다. 가족 내 ‘사적 가부장제’를 넘어 정치, 사회, 경제 전반의 성불평등을 생산하는 ‘공적 가부장제’로 확장되어 사회체계화되고 있다. 가정과 사회 전반에 남녀 간 불균형한 관계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

2.2. 재생산, 정상가족, 성별 분업

재생산 노동은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노동, 곧 가사·돌봄 노동 등을 의미한다. 상품을 만드는 노동이 생산 노동이라면 생산 노동은 가사·돌봄 노동으로 재생산된다. 재생산의 범위는 가사·돌봄 노동에서부터 문화, 제도의 영역까지 넓으나, 일반적으로 청소와 빨래, 밥 짓기 등의 가사활동 전반, 노인과 병자, 아이를 기르고 보살피는 돌봄과 양육, 자녀의 출산을 의미한다. 현재 재생산 단위로서 가족 제도는 점차 약화되었다. 재생산 영역이 서비스 경제에 편입되고 외주화되어 이미 화폐적 교환관계에 있는 상황이다.

‘정상가족’ 개념에는 핵가족이 보편적 가족이며, 미혼·이혼·한부모 가구 등은 보편성이 결여된 비정상 혹은 결손가족이라는 관점이 포함된다. 성별 노동 분업을 수행하려면 현대 핵가족이 바람직하고 합법적인 유일한 가족 형태라는 정상가족 개념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정상가족이라는 관점은 가족이 여성의 고유의 장소라는 개념을 주입시켜 특정 유형의 가족만 인정하도록 한다. 핵가족 내 성인 여성은 부양할 남편, 어머니 역할을 강조하여 경제적 종속을 야기한다.

노동 시장에서 여성의 노동은 남성의 노동과 비교해 부차적이라는 가정을 정당화한다. 여성만이 재생산에 적합하다는 성별 직업분리를 강화하고 재생산 관련 노동에 여성을 국한한다.

2.3. 여성정책과 차별 철폐 조치(Affirmative Actions)

정책은 어떠한 사회를 어떻게 만들겠다고 하는 것을 권위 있게 결정해 놓은 것이라고 정의한다(노화준 2003). 젠더 관점에서 그동안 성 중립적 정책이 실제로 중립적이지 않음을 주장한다. 정책 영역에서 배제된 여성 이슈를 정책에 반영하고 국가의 역할을 변화시키고자 하였다. 여성정책은 여성의 다양한 차이를 인정하고 ‘권력관계’와 ‘성별관계’에 주목하여 정책 개입을 통해 성 평등한 사회를 지

향하는 것이다.

여성정책은 여성의 경험의 사적이거나 개인적인 것이 아닌 정치적인 것임을 드러내고 기존 정책이 이를 배제하였음을 지적한다. 이를 해결하고자 ‘현실적 젠더 요구(practical gender needs)’와 ‘전략적 젠더 요구(strategical gender needs)’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정책을 요구할 수 있다. 현실적 젠더 요구는 성별분업에 기반한 여성의 역할을 수용하고, 여성의 현실을 개선하려는 요구다. 그러나 성별 권력관계와 여성의 종속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전략적 젠더 요구는 여성의 종속적 지위에 따른 성별불평등을 타파하고 성별분업과 여성의 종속적 지위를 변화시키기 위한 요구이다. 여성의 보육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현실적 젠더 요구, 남성의 육아휴직은 전략적 젠더 요구의 사례다.

여성은 정치적, 시민적 권리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여성에게 평등은 동등한 기회와 권리로 인식되었다. 사회는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제공하고자 다양한 수단을 이용하여 교육, 정치 참여, 재산 소유 등의 기본 권리를 남성과 동등하게 받을 수 있게 하였다. 동등한 법과 제도적 기회 보장이 여성에게 실질적 평등인 것은 아니다. 남성의 관점에서 만든 기준에 여성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회에서 일과 가정의 이중부담을 진 여성에게 남성과 같은 기준하에서 평등을 실현하는 것은 어렵다.

차별 철폐 조치는 실질적 평등을 이루고자 동등한 기회라는 형식을 넘어 조건과 결과의 평등을 포함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구조적 차별’을 인식하고 차별의 결과인 ‘여성의 과소대표성(under-representation)’, ‘통계적 불균형’을 적극적으로 교정하여 결과적 평등을 실현하는 제도다.

구조적 차별은 여성 차별이 누적되면서 제도와 관념이 성차별 관행으로 구조화된 것을 의미한다. 특정 직종을 여성 또는 남성에게 적합한 직업으로 인식하는 노동시장 내 성별직종 분리가 구조적 차별의 사례 중 하나다. 과소대표성은 특정 조직과 직종을 대표하는 자리에 여성의 비율이 지나치게 낮은 상황을 의미한다. 과소대표성은 통계적 불균형으로 나타나고 구조적 차별로 나타나는 결과로서 이해된다.

결과의 평등은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없는 조건을 고려한 평등이다. 여성에게 일정 비율을 할당하는 할당제나 목표 비율을 설정하는 목표제 등이 차별 철폐 조치의 일환으로, 서구에서 시작하여 우리나라에도 적용되고 있다.

2.4. 성 주류화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는 모든 영역과 모든 수준에서 정책의 준비, 설계, 실행, 감시, 평가에 성별 관점을 통합하여 반영하는 과정으로 성평등을 촉진하고 성차별을 퇴치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혜택을 받고 불평등이 지속되지 않도록 정치, 경제, 사회 영역 정책과 프로그램 설계, 실행, 모니터링, 평가에 여성과 여성의 관심과 경험을 반영하도록 하려는 전략이다.¹⁰⁾ 이는 모든 정책에서 여성과 남성의 상황, 우선순위, 요구를 체계적으로 통합하여, 계획 단계에서 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모든 일반 정책 및 조치를 동원하는 전략이다.¹¹⁾

성 주류화를 반영하여 정책을 계획·실행하려면 ‘여성의 주류화’, ‘젠더 관점의 주류화’, ‘주류의 전환’ 과정이 필요하다. ‘여성의 주류화’는 모든 분야에서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며, 참여뿐만 아니라

10)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ILO)은 성주류화를 “Mainstreaming a gender perspective is the process of assessing the implications for women and men of any planned action, including legislation, policies or programmes, in any area and at all levels. It is a strategy for making the concerns and experiences of women as well as of men an integral part of the design, implementation, monitoring and evaluation of policies and programmes in all political, economic and societal spheres, so that women and men benefit equally, and inequality is not perpetuated. The ultimate goal of mainstreaming is to achieve gender equality.”로 정의하였다(<https://www.ilo.org/public/english/bureau/gender/newsite2002/about/defin.htm>, 검색일: 2021. 9. 10.).

11)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1996. “Incorporating Equal Opportunities For Women And Men Into All Community Policies And Activities.”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권리를 강조한다. ‘젠더 관점의 주류화’는 여성과 남성의 요구와 경험의 차이를 인식하고 성별이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젠더 관점을 통합하는 전략이다. 여성의 주류화와 젠더 관점의 주류화를 통해 ‘주류의 전환’을 가져오는 것으로 이는 기존 사회의 패러다임을 근본부터 변화시키는 전략이다.

2.5. 페미니즘(Feminism)

페미니즘은 남녀평등을 추구하는 실천적 이념이지만 이론적 시각에 따라서 주장하는 내용이 다양하다.

페미니즘은 자유주의 페미니즘(liberal feminism),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Marxist feminism), 급진 페미니즘(radical feminism), 사회주의 페미니즘(socialist feminism), 그리고 에코페미니즘(eco-feminism)으로 구분할 수 있다(Park 1996; 김보명 2018; 공미혜 2019; 조남수 2020; 최형미 2020).

자유주의 페미니즘(liberal feminism)은 자유주의 정치사상에 근거하고 있으며 성별 중립주의를 표방한다(공미혜 2019).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성별 고정관념을 배척하고 양성적인 인간이 되도록 교육하는데 주력”한다(공미혜 2019: 7).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제도적인 평등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평등을 성취하고자 한다(유수진 외 2020).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Marxist feminism)은 계급(class)이 여성의 지위와 기능을 설명한다고 본다.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에 따르면, 성 불평등(gender inequality)의 원인은 자본주의 체제 자체에 있다. 성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급 억압(class oppression)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Park 1996; 공미혜 2019).

급진 페미니즘(radical feminism)은 남성들의 여성들에 대한 지배에 초점을 둔다. 급진 페미니즘은 남성에 의한 여성의 종속 및 억압의 근본적인 구조가 가부장제라고 주장한다(김보명 2018).

사회주의 페미니즘(socialist feminism)은 “성 억압과 계급 억압을 서로 분리시키지 않고 통합하여 양자 모두에 대하여 투쟁해야 한다”(조남수 2020: 114)고 주장한다. 즉, 사회주의 페미니즘은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체제가 상호 연관되어 여성을 차별·억압한다고 본다. 사회주의 페미니즘은 분석전략으로 역사적 유물론(historical materialism)을 사용한다(Park 1996; 공미혜 2019; 조남수 2020).

에코페미니즘(eco-feminism)은 자연과 여성의 관계에 초점을 둔다. 즉, 에코페미니즘은 자연과 여성의 억압 간에는 중요한 연관성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에코페미니즘은 페미니즘 이론과 실천에는 생태학적 관점이 포함되어야 하고, 생태학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페미니즘 관점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공미혜 2019; 최형미 2020).

2.6. 권한강화(Empowerment)¹²⁾

권한강화(empowerment)는 학자들에 따라서 개념 정의나 핵심 구성 요인이 다양하다. 여성주의 문헌에서 권한강화는 참여(participation), 의식화(conscientization), 연대(solidarity)에 주목한다(Solbakken 1996; Pettersen and Solbakken 1998).

나라얀(Narayan 2005: 4)은 권한강화를 “자신의 생활을 만들어감에 있어서 선택과 행동의 자유를 확장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카비어(Kabeer 1999: 437)는 권한강화를 “전략적인 생애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라이트와 아네스(Wright & Annes 2016)는 부가가치 농업(value-added agriculture)이 여성의 권한강화에 복잡하고 다면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골드만 외(Goldman et al. 2016)는 여성의 권한강화를 토지에 대한 소유권뿐만 아니라 토지, 지식, 사회적 관계, 정치적 과정에 대한 접근성 측면에서 파악하였다.

12) ‘empowerment’라는 용어는 ‘역량강화’(이혜정 2010)라고 번역하기도 한다. 그러나 지역개발 분야에서 많이 사용하는 ‘역량강화’는 ‘capacity building’을 의미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empowerment’를 ‘권한강화’라고 번역한다.

시모어(Seymour 2017)는 여성의 권한강화는 농촌개발의 중요 목표이며 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았다. 시모어(Seymour)는 여성의 권한강화 점수(empowerment score)를 생산(생산에서의 의사결정과 자율성), 자원(자산의 소유권, 자산의 구입·판매·이전, 신용에 대한 접근성이나 의사결정), 소득(소득 사용 관련 통제력), 리더십(집단 멤버십, 대중 앞에서 연설), 시간(작업 부하, 여가)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남성의 권한강화 점수는 여성의 권한강화 점수보다 평균적으로 41.9%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리가리그 외(Maligalig et al. 2019)는 농촌 여성이 농외 부문에 고용되어 있을수록 다소 권한강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쇼탈(Shortall 2017)은 여성의 비농업 부문 노동 참여는 농가 생존전략의 일환인 경우가 많다고 보았다.

크룸비겔 외(Krumbiegel et al. 2020)는 여성의 권한강화를 4개 영역으로 측정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① 여성 배우자의 가구소득에 대한 전반적인 기여 및 몫, ② 자산 소유권 및 자산 판매 능력, ③ 재생산 작업 부하(reproductive workload), ④ 가구 단위 결정에 있어서 의사결정력.

정영·김남현(2021: 6)은 지역사회 권한강화(임파워먼트)를 “지역주민 삶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 내·외부의 결정요인에 대하여 주민 스스로 통제력을 발휘하고 획득하는 과정”으로 정의하였으며, 지역주민의 권한강화(임파워먼트)는 사회적, 심리적, 정치적 측면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마조케니와 몰나르(Majokweni and Molnar 2021)는 지역사회 집단(community groups)은 여성의 권한강화를 위한 하나의 메커니즘으로 파악하였다.

2.7. 분배·인정 이론

분배·인정 이론은 사회정의의 두 가지 차원인 분배(redistribution)와 인정(recognition) 간에 성립할 수 있는 관계를 해명하려 한다. 분배·인정 이론은 프레이저(N. Fraser)의 분배-인정 이원론과 호네프(A. Honneth)의 분배-인정 일원론으

로 구분할 수 있다(문성훈 2016).

프레이저(N. Fraser)는 분배와 인정의 문제가 각기 독립된 차원이라고 보는 분배-인정 이원론을 주장하였다. 분배-인정 이원론에 따르면, “경제적 불평등이 문화적 무시로 환원될 수 없는 경우와 문화적 무시가 경제적 불평등으로 환원될 수 없는 사례들”(문성훈 2016: 230)이 있다. 분배가 인정의 결과가 아니라, 분배는 인정으로 환원할 수 없는 독립된 차원이라는 것이다. 분배는 착취, 저임금, 실업, 빈곤과 같은 사회경제적 불의에 관한 것이며, 인정은 사회적 묘사나 해석과 관련된 문화적 불의에 관한 것이다(문성훈 2016; 이충한 2017). 프레이저(N. Fraser)는 “인정과 분배의 문제를 사회정의의 기본조건으로 파악한다. 때문에 인정과 분배상의 불의가 시정되지 않는다면 사회정의의 실현은 요원”(이충한 2017: 550)하다는 것이다. 프레이저(N. Fraser)에 따르면, 여성은 “사회경제적으로 잘못된 분배와 문화적 무시 모두에 시달리고 있다”(장지연·오선영 2017: 182).

호네프트(A. Honneth)는 분배를 인정의 결과로 보는 분배-인정 일원론을 주장하였다. 분배-인정 일원론에 따르면, 모든 사회에는 개인에 대한 인정을 규정하는 세 가지 도덕적 원칙(사랑, 존중, 존경)이 있다(이문수 2012). 호네프트(A. Honneth)는 “개인의 정체성은 인정의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상호주관적으로만 형성된다”(이문수 2012: 31)고 주장하였다. 즉, 분배-인정 일원론은 “부의 배분 문제와 같은 경제적, 사회구조적 문제도 인정이라는 문화적 관점으로 환원시켜 해석”(이문수 2012: 36)하려 한다. 분배-인정 일원론에 의하면, “사회적 박탈, 모욕, 굴욕, 무시 등과 관련된 모든 인정 유보 현상들이 사회적 불의를 규정할 수 있다”(조나영 2018: 147). 호네프트(A. Honneth)는 “우리가 갖는 사회적 불만과 갈등의 근본적인 출발은 인정의 문제에서 시작한다”(이충한 2017: 560)고 주장하였다.

3. 본 연구의 이론 활용

이 연구는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관련하여 사회학, 여성학 등 여러 영역에서 논의되는 개념과 용어를 차용하고 있다. 예컨대, 재생산이나 정상가족, 가부장제, 성별 분업 등 성평등과 관련된 다양한 개념들을 현장조사를 통해 발견한 내용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전체적인 연구의 방향성은 성평등의 관점에서 여성농업인의 지위가 높아져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는 페미니즘, 분배·인정 이론에서 지향하고 있는 바와 같다. 또한 시민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성평등 문제는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본 연구는 여성 인권 보호 문제를 다룬다.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경우에는 남녀 간의 사회적 자본의 차이와 불평등에 주목하였다. 여성농업인의 지위에 관한 인식에서도 개인에 대한 존중과 존경, 인정, 중요성, 위신으로 지위를 확인한다는 논의를 감안할 때 여성농업인의 비공식적 노동에 대한 인정을 다룸으로써 위의 논의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여성의 권한강화(empowerment) 관련 논의에서 강조가 되는 참여, 의식화, 연대의 측면을 본 연구의 정책 과제 도출에 감안하였다.

다만, 대응 방안을 제시함에 있어서 본 연구는 현실 적용 가능성을 감안하여 급진적인 입장의 페미니즘보다는 더욱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형태, 예컨대 의식 개선이나 여성 지위 향상의 인센티브 제공 등의 방식으로 접근하였다.

제3장

농촌 지역사회에서 여성농업인의 지위

농촌 지역사회에서 여성농업인의 지위

1. 여성농업인의 지위에 관한 주관적 인식

여성 및 남성 농업인에게 각각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농촌 지역사회에서 농업인들이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의 지위는 대체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¹³⁾

마을에서 여성의 지위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묻는 질문에 여성농업인의 지위에 대하여 긍정 평가를 한 응답(대체로 높다, 매우 높다)이 전체 응답자의 20.4%를 차지하였으나 부정 평가(대체로 낮다, 매우 낮다)를 한 응답이 21.8%를 차지하여 부정평가가 근소한 차이로 긍정 평가를 앞질렀다.

여성농업인의 지위에 대한 긍정 평가는 여성 응답자에 비해 남성에게서 더 많이 나왔는데, 여성농업인의 지위가 대체로 높거나 매우 높다고 응답한 남성은 29.0%에 이르고 있으나 여성은 16.5%만이 여성농업인의 지위를 높게 평가하였다.

13) 설문조사 응답자의 일반 현황과 본문에 제시되지 않은 응답 결과는 〈부록 1〉 참고.

〈표 3-1〉 마을(행정리)에서 주관적 여성의 지위

구분	남성		여성		전체	
	응답 수	비율(%)	응답 수	비율(%)	응답 수	비율(%)
매우 낮다	12	3.3	44	5.5	56	4.8
대체로 낮다	47	12.9	150	18.8	197	17.0
중간	200	54.8	471	59.2	671	57.8
대체로 높다	87	23.8	112	14.1	199	17.1
매우 높다	19	5.2	19	2.4	38	3.3
합계	365	100.0	796	100.0	1,161	100.0

주: 모름/무응답은 제외함.

자료: 자체 설문조사 결과.

여성농업인의 지위를 낮게 평가하는 이유는 크게 가부장적 사고, 여성농업인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로 나타났다.

여성농업인에게 자신의 지위를 낮게 평가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문한 결과, 전통적인 성 인식 때문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으며(35.6%) 그다음으로는 교육 수준이 낮거나(12.9%) 여성 소유 재산이 별로 없어서(12.4%)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표 3-2〉 마을 내 여성의 지위가 낮다고 생각하는 주된 이유(여성 대상 설문)

구분	응답 수	비율(%)
한국의 전통적인 성 인식 때문에	69	35.6
가정 일 외 직업을 갖지 못해서	21	10.8
중요한 직책을 못 맡았기에	20	10.3
여성 소유 재산이 별로 없어서	24	12.4
교육 수준이 낮아서	25	12.9
중요한 일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이 부족해서	22	11.3
기타	6	3.1
모름/무응답	7	3.6
합계	194	100.0

자료: 자체 설문조사 결과.

여성의 지위에 대한 인식과 유사하게 마을 내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대우받는지를 질문한 결과, 대우가 전혀 평등하지 않거나 대체로 평등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여성 응답자의 14.5%인 데 비해 남성 응답자는 8.5%로 나타났다. 반대로 대체로 평등한 대우가 이루어지고 있거나 매우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남성의 경우 54.8%이며 여성은 40.1%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마을 내에서 성평등한 대우가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남성이 여성보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3-3〉 마을 내 성별 간 평등 대우 여부

구분	남성		여성		전체	
	응답 수	비율(%)	응답 수	비율(%)	응답 수	비율(%)
전혀 아니다	7	1.9	12	1.4	19	1.6
대체로 아니다	25	6.6	111	13.1	136	11.1
보통	138	36.7	365	43.0	503	41.1
대체로 그렇다	174	46.3	307	36.2	481	39.3
매우 그렇다	32	8.5	33	3.9	65	5.3
모름/무응답	0	0.0	20	2.4	20	1.6
합계	376	100.0	848	100.0	1,224	100.0

주: 응답 결과를 5점 척도로 계산하였음(1점= 전혀 아니다~5점=매우 그렇다).

자료: 자체 설문조사 결과.

개인의 주관적 인식 외에도 여성농업인의 지위를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는 교육과 재산 상황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본인 명의의 재산과 최종 학력을 설문하였다.¹⁴⁾

설문 결과에 따르면 여성농업인 명의의 재산은 모두 남성과 비교하여 적었다. 500만 원 이상 현금이나 예금을 가진 여성농업인은 전체 응답자의 57.7%로 남성농업인의 74.5%보다 적었으며, 농지와 농지를 제외한 토지, 주택 등의 부동산을 가진 여성농업인은 각각 31.4%, 13.7%, 28.5%로 남성농업인의 80.1%, 43.4%, 78.7%와 비교하여 적었다. 최소한 하나의 부동산을 소유한 여성농업인은 45.3%

14) 사회경제적 지위는 일반적으로 소득과 학력으로 측정하지만, 농가에서 여성과 남성의 소득을 구분할 수 없어 '본인 명의의 재산'을 이용하였다.

로 남성농업인(89.4%)의 절반에 불과하였다. 자동차와 농기계도 여성농업인은 각각 26.5%, 14.2%로 남성농업인의 76.9%, 69.1%보다 매우 적다. 본인 명의 재산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도 남성농업인은 3.2%에 불과한 반면 여성농업인은 23.2%에 이르러 재산 소유 측면에서 여성이 좀 더 열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육 수준도 여성농업인이 남성과 비교하여 낮다. 학력이 고졸 이상인 여성농업인은 전체 응답자의 53.7%로 남성농업인의 70.5%보다 16.8%p 이상 적다. 초졸 이하 학력을 가진 여성농업인은 27.7%로 남성농업인의 18.4%보다 높다.

〈표 3-4〉 남성과 여성의 본인 명의 재산 비교

구분	남성		여성	
		비율(%)		비율(%)
현금 및 예금	280	74.5	489	57.7
농지	301	80.1	266	31.4
농지 제외 토지	163	43.4	116	13.7
주택	296	78.7	242	28.5
자동차	289	76.9	225	26.5
농기계	260	69.1	120	14.2
기타	0	0.0	1	0.1
없음	12	3.2	197	23.2
합계	376	100.0	848	100.0

주: 중복 응답 가능.

자료: 자체 설문조사 결과.

〈표 3-5〉 남성과 여성의 교육 수준 비교

구분	남성		여성	
		비율(%)		비율(%)
초졸 이하	69	18.4	235	27.7
중졸	42	11.2	148	17.5
고졸	154	41.0	337	39.7
대졸 이상	111	29.5	119	14.0
모름/무응답	0	0.0	9	1.1
합계	376	100.0	848	100.0

자료: 자체 설문조사 결과.

경제적 위치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서도 남성보다 여성이 낮게 평가하고 있었는데, 경제 계층에 대한 본인의 위치를 질문한 결과 여성 응답자의 46.3%가 하층 또는 최하층이라고 응답한 반면 남성 응답자의 39.9%가 하층 또는 최하층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3-6〉 본인의 주관적 계층 인식

구분	남성		여성		전체	
	응답 수	비율(%)	응답 수	비율(%)	응답 수	비율(%)
최상층	0	0.0	1	0.1	1	0.1
상층	18	4.8	26	3.1	44	3.6
중간층	205	54.5	405	47.8	610	49.8
하층	126	33.5	339	40.0	465	38.0
최하층	24	6.4	53	6.3	77	6.3
모름/무응답	3	0.8	24	2.8	27	2.2
응답자 합계	376	100.0	848	100.0	1,224	100.0

자료: 자체 설문조사 결과.

마을 등 지역사회에서 여성의 지위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성평등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농촌 주민의 성평등 교육 경험은 매우 부족하다. 이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3.7%가 성평등 교육 경험이 없어 대부분의 농촌 주민이 성평등 교육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남성에 비해 여성의 성평등 교육 경험이 부족하였는데 여성 응답자의 86.0%, 남성 응답자의 78.5%가 성평등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표 3-7〉 성평등 교육 이수 경험

구분	여성		남성		전체	
	응답 수	비율(%)	응답 수	비율(%)	응답 수	비율(%)
경험 없음	729	86.0	295	78.5	1,024	83.7
경험 있음	119	14.0	81	21.5	200	16.3
합계	848	100.0	376	100.0	1,224	100.0

자료: 자체 설문조사 결과.

2. 영역별 여성농업인의 지위 실태

2.1. 여성농업인 지위 관련 논의의 네 가지 관점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지표는 경제 영역뿐만 아니라, 의사결정과정에서의 대표성, 건강과 교육, 안전, 일·가정 양립의 영역까지 넓게 구성되어 있다. 주재선 외(2015)는 국내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었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표 3-8>에 제시된 지표들을 선정하였다. 이 지표들은 주로 국내외 성평등 지표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으며 여성의 지위 향상을 점검하기 위한 기본 지표와 정부의 정책 추진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점검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지표들은 국내 전체를 포괄하고 있어 농촌과 여성농업인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데 이를 보완한 것이 김홍주 외(2021)가 제시한 농촌형 성평등 지표이다. 이들이 제시한 농촌형 성평등 지수는 크게 사회 참여, 인권 및 복지, 성평등 의식 및 문화로 구분되며 정치, 경제, 교육, 복지 등 삶의 전 영역을 아우르고 있다. 제시된 농촌형 성평등 지표는 다시 말하면 농촌에서 여성의 지위를 보여주는 자료가 되는데 이 연구에서는 연구 범위를 농촌 지역사회로 한정하고 있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이 연구에서 가지고 있는 물음 중 하나는 ‘지역사회에서의 여성농업인의 기여가 구성원들로부터 합당한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는가’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지역사회의 범위를 마을로 한정했을 때의 마을 내 여성과 남성 간의 역할 분담이나 그에 따른 보상 문제는 국가 전체에 평균적으로 적용되는 성평등 지표로 다루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지표들이 가지고 있는 틀을 일부 차용하되 연구 주제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인 검토사항들은 자체적으로 고안하였다.

〈표 3-8〉 여성의 사회적 지위 관련 영역별 점검 지표

영역	지표
경제활동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여성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
	성별 임금 격차(남성 대비 여성 임금비율)
	성별 월평균 근로시간
	성별 청년층 고용률
	기혼취업여성의 경력단절 경험률
	여성비정규직 사회보험가입률
	전문직 여성비율
	추정소득에 대한 성비(US \$)
의사결정	관리직 여성비율
	국회의원 여성비율
	지방의회 여성비율
	장·차관급 여성비율
	5급 이상 공무원 여성비율
	여성 사업체 대표자 비율
	고위공무원단 여성비율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비율
	민간기관 여성관리자 비율
안전	정부위원회 여성비율
	성별 범죄위험에 대한 사회안전인식 비율
	강력범죄(살인, 강도, 방화, 강간)피해자 여성비율
	성폭력(강간)발생건수(여성피해자 비율)
	가정폭력 처리인원
	아동대상 성폭력 피해자(강간과 성추행 피해자)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률
	가정폭력 재범률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수(상담소+지원보호시설)
일·가정 양립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수(상담소+지원보호시설)
	설립주체별 보육시설 및 보육 대상 아동 대비 시설 아동비율
	성별 가사노동시간(*20세 이상)
	여성의 출산휴가 사용자 수
	남녀 육아휴직 사용자 수
	육아휴직 사용률
	직장보육시설 의무 설치 사업체의 보육시설 설치 비율
	성별 육아휴직 종료 후 직장 유지율(*육아휴직 종료 1년 후 동일 사업장에 있을 비율)
건강과 교육	GDP 대비 보육재정비율
	평균수명 성비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모성사망비
	청소년 출산율
	셋째아 이상 출생성비
	고등교육 졸업자의 여성비율
	초중고 교장·교감 여성비율

자료: 주재선 외(2015: 17-18). 『2015년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 점검지표 분석』.

〈표 3-9〉 농촌형 성평등 지표

영역	분야	세부지표
성평등한 사회참여	경제활동	경제활동참가율
		농업경영체 경영주 농업인 비율
	의사결정·대표성	농협 이감사 및 대의원 비율
		이장 비율
		주민자치회 위원 비율
		광역 및 기초의회 여성의원 비율
	교육	평균 교육연수
		농업기계분야 자격증 취득자 비율
여성의 인권·복지	복지	국민연금 가입자 비율
		농지연금 가입자 비율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보건	건강관련 삶의 질(EQ-5D)
		건강검진 수진율
성평등 인식·문화	안전	사회안전에 대한 전반적 안전의식
	가족	가사노동시간
		가족관계 만족도
	문화·정보	여가시간
		여가만족도
		인터넷 이용률

자료: 김홍주 외(2021: 22). 『농업분야 주요사업 성인지통계』.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검토는 여러 가지 영역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데 면접조사 결과,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의 대표성, 재생산 노동에 대한 가치 인정, 지역사회 내 성 역할, 여성 인권 보호의 네 가지 영역으로 논의가 귀결되었다.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의 대표성’은 “주요 의사결정 구조의 여성 참여뿐만 아니라 다양한 화자와 다양한 말하기 양식을 포함하는 의사소통적 평등화”를 의미한다(Young 2000; 이순미(재인용) 2019). 여성의 대표성 확보는 의사소통에 있어 여성에 대한 내·외부적 배제가 없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서 여성 정당한 참여 권리와 의견에 대한 존중이 해당 지역사회에 있는가를 보여준다.

‘재생산 노동에 대한 가치 인정’은 무급으로 진행되는 공동체 내 재생산 노동의 사회적 가치의 인정과 보상에 관한 것이다.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여성농업인의 재생산 노동이 가치 있는 것이며 이에 따른 보상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룬다. 돌봄과 마을 관리 등 여성농업인의 지역사회 재생산 노동의 가치 인정은 여성농업인이 해당 지역사회에서 당당한 인적자원으로서 인식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지역사회 내 성 역할’은 공동체를 유지하는 일에 성별 분업과 성차별을 강요하지 않고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가를 다루고 있다. 가정 내 전통적인 성 역할 인식이 공동체로 전이되어 공동체 내 재생산 활동을 여성 개인이나 여성 조직에만 전가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통적 성 역할에서 벗어나, 보다 유연한 성 역할 인식을 가지는 것이 성평등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여성 인권 보호’는 농촌 지역사회에서 성별 위계를 기반으로 여성에게 가해지는 육체적·정서적·언어적 성폭력과 강요로부터 안전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인권의 문제로 이해될 수 있다. 성폭력은 성을 매개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개인 혹은 집단에 대해 신체적·심리적·사회적 고통을 야기하는 폭력행위를 말한다. 남성 중심적인 농촌 지역사회 문화에서 주로 권력을 가진 남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게 가하는 성적 강요를 성희롱으로 정의한다. 특히 성희롱은 성적인 농담,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평가 등의 언어적 성희롱을 포함한다. 부부와 아이로 구성된 가족 이외의 가족을 비정상적으로 정의하고 청년 여성농업인에게 정상 가족을 강요하는 것도 정서적 폭력으로 인식된다.

2.2.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의 대표성

2.2.1. 실태

여성농업인이 지역사회에서 대표성을 가지거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례는 증가하였다. 2000년대 중반부터 여성 이장이 등장하기 시작하여 2020년 기준 전체 3만 7,510명의 이장 중 여성 이장은 9.4%인 3,530명이다.

〈표 3-10〉 2020년 여성 이·통장 현황

성별	이장	비율(%)	통장	비율(%)
여성	3,530	9.4	44,752	74.9
남성	33,980	90.6	15,021	25.1

자료: 행정안전부(2021). 자치분권지원과 내부자료.

지역사회에서 여성농업인의 대표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인 지역농협의 여성 조합원 수는 1994년부터 복수조합원 제도가 도입된 후 꾸준히 증가하였다.

지역농협의 여성 조합원은 2015년에 전체 조합원의 30.8%를 차지하였으며 여성 임원의 비율은 4.5%였다(정은미 외 2020: 14). 그러나 2020년 6월 기준 전국 지역농협의 조합원은 211만 686명이며, 이 중에서 여성 조합원은 70만 3,710명으로 전체의 33.3%를 차지하였다. 또한 여성 임원 비율은 9.0%를 차지하였다.

설문 결과에서는 지역농협 조합원으로 가입한 비율이 50%를 넘어선 51.8%로 나타났다.

〈표 3-11〉 지역농협 여성 조합원 및 임원 현황(2021년 6월 기준)

단위: 명, (%)

성별	임원				대의원	조합원
	이사	감사	조합장	합계		
여성	1,162	31	8	1,201	14,932	703,710
	(11.5)	(1.4)	(0.7)	(9.0)	(20.8)	(33.3)
남성	8,918	2,166	1,110	12,194	56,694	1,406,976
	(88.5)	(98.6)	(99.3)	(91.0)	(79.2)	(66.7)
합계	10,080	2,197	1,118	13,395	71,626	2,110,68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김홍주 외(2021: 113). 『농업분야 주요사업 성인지통계』. 〈표 5-4-1〉을 이용하여 저자가 재구성하였음.

〈표 3-12〉 여성의 지역 농·축협 가입 여부

구분	응답 수	비율(%)
조합원으로 가입함	439	51.8
조합원으로 가입하지 않음	409	48.2
합계	848	100.0

자료: 자체 설문조사 결과.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의 생산자 조직에 참여하는 여성경영주도 과거와 비교하여 많아졌다. 생산자 조직 참여 농가 중 여성 경영주 비율은 2005년에 8.1%였으나 2015년에는 10.4%로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동안 여성 경영주 중 생산자 조직 참여 비율은 8.4%에서 13.4%로 증가하였다(통계청 2020).

설문조사에서는 작목반에 참여하는 여성농업인이 전체의 25.2%로 나타나 최근 생산자 조직 참여율이 더욱 증가하였을 가능성을 보여준다.¹⁵⁾

15) 통계청 공표 결과에 비해 높은 작목반 참여율은 설문조사 대상의 편이(bias) 때문일 가능성도 크지만 여성농업인의 작목반 가입률이 상승하는 추세와 조사 시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추론은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표 3-13〉 작목반 가입 여부

구분	남성		여성	
		비율(%)		비율(%)
가입함	147	39.1	214	25.2
배우자와 함께 가입	64	17.0	165	19.5
배우자가 가입조건이 되지만 나만 가입	70	18.6	25	2.9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자격이 되지 않아 나만 가입	13	3.5	24	2.8
가입하지 않음	229	60.9	634	74.8
합계	376	100.0	848	100.0

자료: 자체 설문조사 결과.

통계자료의 수치는 과거에 비해 여성의 대표성이 강화되었다는 인상을 주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성의 의견이 수용되는 데 있어 여전히 한계가 존재한다. 설문에 따르면 이장 선거나 개발 사업 등 마을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회의에 남성만 참여한다는 응답이 30.5%에 이른다. 이는 여성에 대한 배제가 농촌 지역 사회에서 여전히 존재함을 의미한다.

마을 단위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읍·면 단위 조직 내에서도 여성에 대한 외부적 배제는 존재한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시·군 단위 각종 위원회 임원 활동 여부를 묻는 질문에 여성농업인의 15.6%만이 농업 관련 위원회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남성농업인의 29.8%보다 14.2%p 낮은 수준이다.

주민자치회(위원회)에서도 여성에 비해 남성의 참여 비율이 높는데 이는 도시 지역에서 여성위원의 비율이 남성보다 높은 것과 대비된다.

〈표 3-14〉 시·군 단위 위원회 위원 활동 경험 여부

구분	남성		여성	
		비율(%)		비율(%)
농업 관련 위원회에서 활동	112	29.8	132	15.6
비농업 관련 위원회에서 활동	24	6.4	70	8.3
활동하지 않음	240	63.8	646	76.2
합계	376	100.0	848	100.0

자료: 자체 설문조사 결과.

〈표 3-15〉 읍·면 동 기준 주민자치회(위원회) 위원 성별 현황('20. 12. 31. 기준)

단위: 명, (%)

지역 구분	남성	여성	계
읍·면 (농촌)	2,773	1,908	4,681
	(59.2)	(40.8)	(100.0)
동 (도시)	8,496	9,203	17,699
	(48.0)	(52.0)	(100.0)

자료: 행정안전부(2021).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현황』.

지역 내 대표적 생산자 조직인 농·축협에서 여성의 대표성은 여전히 낮다. 과거에 비해 여성의 참여율은 높아졌지만 지역농협 여성 임원의 비율은 9.0%에 불과하여 전체 여성농업인과 여성 조합원을 대표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지역농협 외에 다른 조합의 여성 조합원 비율은 더 낮다. 지역축협은 17.5%, 원예농협은 15.4%, 인삼농협은 18.0%에 불과하다(정은미 외 2020).

여성 조합원이 지역농협이나 축협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기회가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기회가 있다고 하였으나 여성 조합원의 21.9%는 기회가 없다고 답하여 조합원임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16〉 여성 조합원의 지역농협 또는 축협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 기회 여부

구분	응답 수	비율(%)
있으며 참여함	169	38.5
있지만 참여하지 않음	174	39.6
없음	96	21.9
합계	439	100.0

자료: 자체 설문조사 결과.

농업인을 대표하는 농업회의소나 마을만들기·공동체 지원 센터에서도 여성농업인은 대표성을 가지지 못한다. 농업회의소 회장이나 사무국장에 여성농업인은 전무하며, 농촌 지역 공동체 지원 센터의 센터장이 여성인 경우도 없다.

여성농업인이 주로 활동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에서도 대표성은 대부분 남성에게 있다. 사회적 기업 종사자 중 남성은 34.4%인 693명, 여성은 64.3%인 1,297명으로 여성이 더 많았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 대표는 남성이 61.2%로 339명, 여성은 37.9%인 210명으로 남성이 더 많았다(이인재 외 2013).

부산지역 사회적 기업의 경우, 남성 종사자는 평균 5.46명인데 여성 종사자는 평균 17.42명이다. 그러나 남성 대표자가 68.0%로 여성 대표자 32.0%보다 많으며 임원급 여성 종사자가 없는 사회적 기업도 58.0%를 차지하였다(정현주 2017).

일반협동조합에서도 임금근로자는 남성이 46.7%, 여성이 53.3%로 비슷하지만 임원은 남성이 66.3%, 여성이 33.7%로 남성이 많다. 특히 농업, 어업 및 임업 업종 협동조합의 경우 전체 임금근로자의 38.1%가 남성, 61.9%가 여성이지만, 전체 임원 중 74.4%가 남성으로 여성 임원은 25.6%에 불과하다(이철선 외 2018).¹⁶⁾

〈표 3-17〉 성별 일반협동조합 및 농업·어업·임업 협동조합 취업자 수 현황

단위: 명, (%)

구분	임원		임금근로자		자원봉사자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일반협동조합	4,441	2,257	5,202	5,943	733	769
	(66.3)	(33.7)	(46.7)	(53.3)	(48.8)	(51.2)
농업·어업·임업	476	164	378	613	40	93
	(74.4)	(25.6)	(38.1)	(61.9)	(30.1)	(69.9)

주: 괄호 안은 비율.

자료: 이철선 외(2018). 『2017년 협동조합실태조사』.

또한 제시된 통계가 성평등성 확보의 결과라기보다는 농업 환경 변화로 인한 자연적 변화를 반영하는 것일 뿐이기도 하다<표 3-18>. 예를 들면, 여성 이장이 과거보다 증가한 이유는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의 결과라기보다는 농촌 지역사회에서 고령화·과소화에 따른 인력 부족 현상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역농협 내 여성 조합원 수가 증가한 것도 여성농업인이 농협에서 활동할 환

16) 협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성별로 분리하여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임금근로자 수를 성별로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경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남편이 사망한 후 조합원 자격을 승계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영농승계에 따른 조합원 자격 승계는 설문조사 응답자 중 15.9%를 차지).

〈표 3-18〉 지역농협 및 축협 조합원 가입 방식(여성 대상 설문)

가입 유형		응답 수	비율(%)
배우자와 함께 복수 조합원으로 가입		276	62.9
단독 가입	배우자도 조합원 자격이 되지만 본인 혼자 조합원으로 가입	77	17.5
	배우자가 조합원 자격이 되지 않아 본인 혼자 조합원으로 가입	10	2.3
	배우자가 사망하여 본인 혼자 조합원으로 가입	70	15.9
모름/무응답		6	1.4
합계		439	100.0

자료: 자체 설문조사 결과.

〈글상자 1〉 이장 및 조합원 관련 면접 내용

구분	면접 내용
여성 이장	(여성 이장이신 분들은 사람이) 없어서 그렇죠. 너무 없어서 하는 거예요. (중략) 그 여성분이 정말 뭔가 하려고 의욕이 있어서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거의 사람이 없어서 하는 경우가 많죠. -참여자9(생산자 단체, 40대)
	(그게 무슨 여성의 지위가 올라간 거냐. 그냥 사람이 없어서 그러는 거다 말씀을 하시는데 동의하시나요?) 완전동의. 저희 회원들 막 이장님 뵈을 때 되면 이장님이 이장 하라고. 제 마을에서 하는 분들은 일부러 도망 다니더라고요. -참여자17(개인 농업인, 30대)
여성 조합 활동	(조합원도 30% 정도 되는 걸로 나오는데 승계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다.) 맞아요. 남편 돌아가시고. -참여자6(생산자 단체, 50대)
	여성들이 조합의 대의원이나 임원으로 하기가 쉽지가 않죠. 우리같이 아예 농촌 지역에 있는 조합은 그나마 여성 조합원들이 많아. 그 이유는 혼자 사는 여성들이 많다 보니까 아저씨 앞으로 돼 있던 조합 승계를 받아서 그나마 여성 조합원 사람들이 많은데. -참여자8(생산자 단체, 60대)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할머니들이 승계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높아졌다라는 얘gie요. 그게 맞나요?) 네. (실제로 여성농업인이 활동이 활발해져서 그것 때문에 올라갔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건 아니지. -참여자10(생산자 단체, 60대)
	이게 점점 남성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여성의 숫자가 훨씬 많아요. 실제적으로 그러면 조합원 수가 많아지는 게 당연한 거겠죠. 그렇게 이어지는 것이지, 스스로 조합원 가입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참여자11(현장 활동가, 50대)

자료: 자체 면접조사 결과.

차별 철폐 조치 등으로 외부적 배제는 명목상 해소했지만, 의견 개선 기회가 부족하고 의견을 무시하는 내부적 배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지역농협의 경우 할당제 등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지역 농협에 여성농업인이 대의원이나 이사로 진출하였으나 이들의 의견이 조합 의사결정에 제대로 반영되는지는 불분명하다.

면접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조합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역량보다는 사적 네트워크에 의해 임원이 되는 경우가 있다. 특정 조직 출신이 돌아가면서 하거나 남성 임원의 배우자가 맡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조합 내 여성농업인의 역량이 부족하고 이해관계에 얽혀 있다 보니 남성 임원 사이에서 제대로 된 의견 개선이 어려워 의사결정과정에서 내부적 배제를 당한다.

여성농업인 대표는 ‘여성’뿐만 아니라 ‘농업인’을 대표하지만 회의에서는 ‘여성’ 관련 의견만 제시해야 하는 환경에 있다.

〈글상자 2〉 여성농업인 면접 내용

사실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반적인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여성 정책 위원들은 여성 관련된 이야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저는 되게 모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중략) 사실 저 이제는 제가 항상 가서 말하는 게 여성에 관련된 것 그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오히려 남성분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정책을 얘기해 주시고 저희도 남성분들이나 아니면 그냥 전반적인 정책에 대한 제안을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 보니까 맨날 여성 관련된 여성농업인 복지가 뭐 어떻다, 여성농민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어렵다 이런 말만 하게 되고 전반적인 청년농업인들 전반적인 그냥 농업인으로서의 제안은 항상 남성분들이 하게 되는. -참여자17(개인 농업인, 30대)

자료: 자체 면접조사 결과.

2.2.2. 여성농업인이 지역사회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되는 이유

여성농업인이 지역사회 의사결정에서 배제되는 이유는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가부장적 문화가 지역사회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가부장적 문화로 인해 남성 중심의 의사소통 방식이 강요되는 분위기 속에서 여성의 의견이 무시된다. 예컨대, 공식적인 회의가 끝나고 술자리를 가져야 하는 분위기라든가, 자신의

공격적으로 주장하는 태도가 용인되는 것들이 여성농업인의 참여를 어렵게 만드는 문화적 요인이다.

〈글상자 3〉 여성농업인 면접 내용

지금은 그런 문화가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이사회 끝나면 2차 가는 게 당연시됐어요. (중략) 여성 이사가 누군가가 한 사람이 되면 항상 그 사람이 그 자리에 못 가면 그렇게 주눅들어서 자기랑 왕따 아닌 왕따를 당해야 되는 거예요. -참여자6(생산자 단체, 50대)
회의에 대한 훈련도 못 받고 목소리가 크거나 주장이 가능하면 되는 우리 문화 있잖아요. 그래서 남의 말을 좀 잘 듣고 경청하고 부드럽게 말하고 이런 것들이 훈련이 우리가 좀 안 된 거죠. -참여자14(현장 활동가, 50대)
여성도 들어가고 남성도 들어가고 그리고 내용들은 바뀌고 다같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힘 있는 사람이 더 와야 하잖아요? 싸우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여성들은 싸우는 것보다는 조화롭게 사는 걸 더 많이 원하는. -참여자14(현장 활동가, 50대)
작목반 같은 경우도 가면 회의하죠. 회의하고 점심 드시면서 당연히 술 한잔씩 하세요. 술을 권하시고 여성농업인 특히 청년 여성농업인들이 그런 자리를 좋아하지 않잖아요. 누가 아버지 친구와 같이 술잔을 기울이며 낫술을 먹고 싶겠어요. -참여자17(개인 농업인, 30대)

자료: 자체 면접조사 결과.

가정 내 성별 분업이 여성농업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제한하여 여성농업인의 과소대표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가사와 돌봄을 여성의 일로 인식하는 고정관념은 여성이 사회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글상자 4〉 여성농업인 면접 내용

회의가 있거나 뭐 어디를 가거나 그러면 꼭 참석을 해야 되다 보니 그게 너무 시간적으로 빠듯했고. 제가 한여농을 15년하고 그만뒀거든요. 정말 애들은 뒷전이었어. 집은 뒷전이었고. -참여자5(개인 농업인, 30대)
이런 활동을 하면 남자들 눈치를 많이 봐요. 남편분들이 이렇게 같이 일을 하면 저희가 뭐 그렇게 자주 나가는 그런 건 아니지만 이거 남편한테 허락받고 나오고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본인 할 일 하고 다음 내일 무슨 약속이 있다 하면 오늘 그 일 다 해놓고 이렇게 나오면 되잖아요. 그냥 당당하게 나오면 되잖아요. 남편 허락을 받는다는 게 저는 또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거죠. -참여자9(생산자 단체, 40대)

(계속)

나갈 수 있을까요? 못 나가요. 일단 윤허를 받아야 돼요. 일단 자기는 윤허를 안 받고 나가. (중략) 여자가 나와서 활동하는 건 2차적이라는 스스로의 이 생각이 문제인 거예요. -참여자11(현장 활동가, 50대)

여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제한이 돼 있어요. 맘 놓고 남자분들이야 뭐 한 달씩, 일주일씩 뭐 체험한다고 제주도까지 가서 하고 와도 아무 탈이 없죠. 여자들은 일주일만 나가도 집이 엉망이 되지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제한을 받죠. -참여자21(마을 리더, 70대)

자료: 자체 면접조사 결과.

둘째, 여성농업인은 정보 획득이나 훈련 등에서 소외되어 사회적 자본을 축적할 기회를 거의 얻지 못했다. 지역사회 의사결정에 참여하거나 대표성을 가지려면 의사결정과 대표성 획득에 필요한 정보를 얻거나 지속해서 훈련을 받아야 하지만 가사와 경제활동, 지역사회 내 활동 등으로 교육 및 훈련을 받을 여력이 없다.

〈글상자 5〉 여성농업인 면접 내용

스스로도 이젠 성인지 관념을 떠나서 우리가 훈련받지 못한 거예요. 교육받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내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 -참여자11(현장 활동가, 50대)

실제로 저희 회원들이나 아니면 저희 어머니 세대분들 보면은 정말 말할 발언의 기회나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험해보고 접해보지 못해서 그런 경험의 부재가 좀 큰 것 같아요. 아직은. -참여자17(개인 농업인, 30대)

왜냐하면 남자들은 다 차를 운전하는데 여자는 차 운전을 못 한 사람이 없거든요. 여자들은 운전 못 한 사람이 많아. 그리고 또 아무래도 남자들은 제가 봤을 때 이제 학벌도 또 남자들은 다 고등학교 나왔어. 그런데 여자들은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없다든지 여자들은 기껏해봐야 중학교 그런 수준이니까. -참여자22(마을 리더, 60대)

자료: 자체 면접조사 결과.

셋째, 여성의 역량이 남성과 비교하여 떨어진다는 편견이 작용한다. 똑같은 발언이라도 남성의 의견을 더 무게 있게 받아들이거나 여성은 마을 사업을 할 때 행정기관과 조율할 능력이 없다는 편견이 작용한다. 여성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이유를 남성에게 질문한 결과, 여성은 전문성이 낮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응답자의 28.0%를 차지하였다<표 3-19>. 같은 실수라도 남성의 실수는 관대

하게 보지만, 여성의 실수는 봐주지 않는다. 성차별적·선택적 비난에 여성농업인의 지역사회 활동이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

〈표 3-19〉 마을에서 여성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이유(남성 대상 설문)

구분	응답 수	비율(%)
여성이 의견을 이야기할 기회나 방법이 없어서	11	22.0
여성이 의견을 제시해도 무시해서	0	0.0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도 여성 스스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서	19	38.0
여성은 전문성이 낮다고 생각해서	14	28.0
여성이 나서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문화 때문에	5	10.0
기타	1	2.0
모름/무응답	0	0.0
합계	50	100.0

자료: 자체 설문조사 결과.

넷째, 여성농업인이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농업 외 소득 활동에 집중하면서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농촌 지역사회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외되기도 한다.

〈글상자 6〉 여성농업인 면접 내용

한 10년 전서부터는 시골에 엄마들이 농사들이 100% 주업을 하시는 경우가 없어요. 아침저녁으로만 일 갔다 와서만 도와주고 그러면 동네에 행사가 있거나 뭐가 있어서 가도 도와주는 역할, 주도적으로 하는 데는 뭐 있기도 하지만은 대부분은 그런 봉사로서 주도적으로 하지 발언권이나 이런 거는 거의 없어요. -참여자7(생산자 단체, 40대)

자료: 자체 면접조사 결과.

다섯째, 제도적 장애요인이 존재한다. 농·축협에서 여성농업인의 참여율이 낮은 것은 조합 가입 시 출자금 부담과 경제사업 실적에 대한 요구 때문이다. 안상돈(2021)에 따르면 조합원 1인당 평균 납입출자금은 560만 원으로 정관에 명시된 출자금보다 높은 수준이다.¹⁷⁾ 제도적으로는 여성의 조합 가입의 부담을 낮추어놓았

17) 조합정관례 제18조에서 조합원 출자좌수는 농·축협의 경우 20~200좌, 품목별·업종별 농협은 20~500좌(1좌는 5,000원)로 명시되어 있다.

으나 실제로는 출자금 부담이 작지 않기 때문에 부부가 동시에 가입할 유인이 떨어진다.

본 연구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도 응답자의 17.8%가 출자금 부담 때문에, 응답자의 24.4%가 출자금을 내고 가입해도 혜택이 부족하기 때문에 농·축협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표 3-20〉 지역 농협 또는 축협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여성 대상 설문)

구분	응답 수	비율(%)
출자금 너무 많다	73	17.8
조합원이 되더라도 혜택이 부족하다	100	24.4
다른 방식으로 농산물을 판매하여 가입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52	12.7
지역 농협의 운영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6	1.5
지역농협에서는 여성의 의견 반영이 안 된다	12	2.9
기타	141	34.5
모름/무응답	25	6.1
합계	409	100.0

자료: 자체 설문조사 결과.

농·축협 등 생산자 조직에서 여성의 참여도와 대표성이 낮은 것은 정관이나 농협 내부의 구조적 문제도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여성농업인이 독립된 생산주체로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성이 경영주로 등록된 경영체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남성에 비해서는 여성의 경영주 비율이 매우 낮다.¹⁸⁾ 여성이 경영주인 농업경영체는 2020년 기준 49만 개로서 전체 여성농업인 중 43.4%가 경영주이다. 여성 경영주의 수는 2015년에 약 40만 명이었으나 5년 동안 약 9만 5천 명이 증가하였으며 여성농업인 중 경영주 비율도 32.3%에서 11.1%p 증가한 것이다. 남성이 경영주인 경영체는 약 124만 개로서 전체 남성농업인 135만 명 중 92.1%가 경영주로 등록되어 있다. 남성 경영주는 여성 경영주의 2.5배에 달하여 전체 경영체 중 71.6%가 남성 경영주에 의해 운영된다(2020년 기준).

18) 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사업정보시스템(<https://uni.agrix.go.kr>, 검색일: 2021. 9. 12.).

그뿐만 아니라 고령 여성이 남편의 사망으로 경영주 지위를 승계한 경우를 포함한다면 실질적으로 여성이 생산주체로서 경영주의 지위를 확보한 비율은 더욱 낮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3. 재생산 노동에 대한 가치 인정

여성농업인은 농촌 마을 행사를 위한 음식 준비, 마을 청소, 어르신 돌봄 등 다양한 재생산 노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재생산 노동은 대부분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여성이 주로 참여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 여성 응답자의 55.8%이며 그중 무료 봉사를 한다는 응답은 48.6%를 차지하고 있다. 남녀 관계없이 전체가 참여한다는 응답도 36.4%에 달하고 있으나 이 또한 경제적 보상을 전제로 하고 있지는 않다.

〈표 3-21〉 거주하는 마을의 봉사 활동 주 참여 주체(여성 대상 설문)

구분	응답 수	비율(%)
여성이 주로 무료 봉사	412	48.6
여성이 주로 참여하며 대가 지급	61	7.2
외부 위탁	13	1.5
남녀 관계없이 전체 참여	309	36.4
모름/무응답	53	6.3
합계	848	100.0

자료: 자체 설문조사 결과.

마을 내 재생산 노동이 부녀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부녀회장에 게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것도 여성농업인의 노동 가치에 대한 인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방증하는 사례이다.

이장과 부녀회장의 역할은 공동체 유지 측면에서 유사하지만 이장의 보수는 부

녀회장보다 많고 공식적이다. 이장의 보수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의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에 따라 기본수당 월 30만 원 이내, 상여금 연 200%, 회의참석수당 1회당 2만 원(월 2회)이다. 반면 부녀회장의 보수는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이를 명시한 경우에만 지급할 수 있으며 농협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무보수이다.¹⁹⁾

〈글상자 7〉 여성농업인 면접 내용

(마을 이장보다 일을 훨씬 많이 하는데 부녀회장은 돈 받는 것도 많이 없고) 반의 반도 안 되지. 그 이장들은 한 30만~40만 원 받으면 (이번에 40만 원 올라가지고) 올라서 부녀회장들은 7만 5,000원? (어디서 받나요? 농협에서 받나요?) 농협에서 줘요. -참여자10(생산자 단체, 60대)

농민회 활동을 해도 조직이 전여농하고 결국 여성농민회하고는 틀리고 그런디. 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남자들도 많이 챙겨주고 뭐 작은 것들도. 그런 데는 또 차별이 있더라고요. (중략) 활동비 같은 거 (중략) 차별이 좀 있어. -참여자10(생산자 단체, 60대)

자료: 자체 면접조사 결과.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가정 내 재생산 활동이 가사활동으로 불리며 노동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생산 노동 또한 노동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여성농업인의 지위와 관련된 문제이다. 여성농업인의 비공식적 노동에 대한 가치 인정은 곧 해당 노동을 수행한 사람의 시간과 에너지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성농업인의 비공식 노동에 대한 가치 인정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의견이 갈린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음식 장만, 마을 청소, 어르신 돌봄 등의 마을 봉사 활동에 대가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한 여성농업인은 응답자의 64.7%, 금전적 대가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25.2%를 차지하였다. 남성의 경우에는 대가 지급이 필요 없다는 응답이 근소한 차이로 여성보다 더 많았다. 또한 대가를

19) 2020년 현재 서삼석 의원이 부녀회장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에 추가하여 발의하였다.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은 여성과 비슷한 비율로 응답하였으나 금전적 대가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재생산 노동의 보상에 대해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부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22〉 마을 봉사 활동 대가 지급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여성		남성		전체	
	응답 수	비율	응답 수	비율	응답 수	비율
대가 지급 필요 없음	549	64.7	255	67.8	804	65.7
대가 지급해야 함	214	25.2	92	24.5	306	25.0
금전적 대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지급해야 함	23	2.7	14	3.7	37	3.0
모름/무응답	62	7.3	15	4.0	77	6.3
합계	848	100.0	376	100.0	1,224	100.0

자료: 자체 설문조사 결과.

여성농업인의 비공식 노동을 금전적으로 보상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은 여성의 재생산 노동을 마을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봉사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경제적 보상과 연결했을 때 오히려 순수한 의미의 봉사가 상품화될 우려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2.4. 지역사회 내 성 역할

2.4.1. 실태

성별 분업에 기반한 성차별의 원천은 사회적 재생산 활동을 공동체 전체가 아닌 여성에게만 책임을 강요하는 사회 체계다. 사회적 재생산 노동은 여성에게만 강요할 수 없지만, 실제로는 여성에게만 책임과 희생을 부여하고 통제한다.

〈글상자 8〉 여성농업인 면접 내용

집단공동체라는 아주 훌륭한 전통적인 그런 게 있다고 치더라도 여성들의 어떤 노동을 수반하지 않는 어떠한 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 노동을 인정해주는 건 좋은 것이긴 해. 그런데 그게 마치 여성들 역할의 전부인 것처럼. -참여자11(현장 활동가, 50대)
사실 거의 똑같거든요. 양육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자꾸 얘기해서 그렇지 농사짓는 부분 다 똑같은데 처음 시작할 때 평등하다고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여성이니까 더 힘들 거야 그런 생각들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참여자17(개인 농업인, 30대)

자료: 자체 면접조사 결과.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는 농촌 지역사회 재생산 노동 중 하나인 음식 장만, 마을 청소, 어르신 돌봄 등의 마을 봉사 활동의 책임이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있다고 인식한다.

여성농업인의 77.2%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재생산 노동의 책임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여성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한 경우는 18.0%다. 남성농업인도 82.4%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여성에게만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13.6%다.

〈표 3-23〉 마을 봉사 활동의 책임 주체

단위: 명, %

구분	여성	비율	남성	비율
여성	153	18.0	51	13.6
남성	15	1.8	6	1.6
모두	655	77.2	310	82.4
모름/무응답	25	2.9	9	2.4
합계	848	100.0	376	100.0

자료: 자체 설문조사 결과.

그러나 실제 재생산 노동을 담당하는 역할은 주로 여성에게 맡겨진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여성농업인의 48.6%가 마을 봉사 활동에 여성이 주로 무료 봉사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여성이 주로 참여하며 대가가 지급된다는 비율은 7.2%다. 반면에 남녀 관계없이 마을 전체가 참여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36.4%에 불과하다<표 3-21>.

성별 분업이 확고한 지역사회가 안정적이라고 인식하는 문화가 성별 분업에 기반한 성차별을 깨뜨리려는 시도를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동안 농촌 지역사회에서 성별 분업이 고착화되면서 이를 깨뜨리려는 시도는 지역사회 안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취급되기도 한다. 지금까지 문제없이 지속해온 문화를 굳이 왜 깨뜨려 혼란을 만드냐는 비난이 쏟아진다.

〈글상자 9〉 여성농업인 면접 내용

문제 제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당혹스러워하고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중략). 우리도 한번 바꿔볼까? 근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지. 어느 것처럼 덮어버리고 그런 것들이 거의 관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 참여자2(생산자 단체, 50대)

동네 돌아가는 거 거의 이장님 혼자 결정하고 혼자 처리하시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냥 조용히 처리가 되는 거예요. -참여자16(개인 농업인, 30대)

자료: 자체 면접조사 결과.

성별 분업을 여성과 남성의 근본적 차이에 기반하여 정당화하려는 인식이 남성 농업인뿐만 아니라 여성농업인 사이에서도 다수 존재한다.

여성과 남성의 생물학적 차이로 인해 성별 분업이 오히려 효율적이라는 견해가 성별 분업을 정당화하여 여성농업인 지위에 관한 논의 자체를 무력화하기도 한다.

〈글상자 10〉 여성농업인 면접 내용

여성농민회도 존재감이 있고 왜냐하면 또 남성이 잘할 수 있는 게 있고 여성이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섬세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같이 이렇게 융화를 하면 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참여자8(생산자 단체, 60대)

동네에서 부녀회장을 한다면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 그런 걸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다보니까. (중략) 대소사에 대한 의사결정이 아니라 이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단지 음식만 전담으로 하고 여성-음식, 여성-행사 그리고 음식으로 인해서 인정받는 걸 대단히 좋게 좀 생각하는 분위기. 스스로도 그렇고, 남성도 그렇고. 당연하고 여성이 그것으로 자긍심을 갖는 분위기 난 이거 문제라고 보거든요. -참여자11(현장 활동가, 50대)

능력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남자와 여자의 능력 차이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여성은 일단 나서는 거 자체를 별로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나서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나 서면 되시죠. -참여자16(개인 농업인, 30대)

자료: 자체 면접조사 결과.

2.5. 여성 인권 보호

여성농업인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다양한 성폭력을 경험하지만 이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농촌 지역사회에서는 나이와 관계없이 여성농업인에 대한 언어적 성희롱이 일상적으로 발생한다. 오랫동안 일상적으로 일어나다 보니 가해자도 이를 성희롱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글상자 11〉 여성농업인 면접 내용

친구들이 놀러 왔다 그랬는데 자빠뜨려야 된다고 막 이러시고. 지금 요즘 자빠뜨리면 이거 경찰서 간다고 그런 농담 많이 하시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중략) 저 아는 애들이랑 얘기할 때 그냥 막 나는 뭐 세컨드가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저나 제 친구들은 그냥 웃음으로 넘기거든요. -참여자5(개인 농업인, 30대)
옆집 아저씨가 그렇게 욕을 하고 삿대질을 하고 막말을 하고 이상한 말도 하고 성적인 조롱을 하는 거죠. 옛날에 어른들이 말하시면은 나쁜 말 하듯이 그런 것도 하시는 것도 있으세요. -참여자7(생산자 단체, 40대)
성희롱인 줄도 모르고 하는 것들은 왜 그러냐면 자기는 분위기를 좋게 하려고 하는 거야. 왜냐하면 성적인 말을 하면 반응이 금방 오거든. 그리고 분위기가 막 화기애애해지거든. 자기들도 수차례 경험을 했어. 자기는 억울한 거야. 그게 왜 성희롱이냐 이거야. 분위기 좋게 했는데. (중략) 진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 문제의식을 못 느껴요. -참여자11(현장 활동가, 50대)
쉽게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조금 만져보는 거, 건드려 보는 거,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 잘못이라고 생각 안 하고 하는 것 같아요. -참여자14(현장 활동가, 50대)
그냥 남성분이 그냥 이 교재를 보면서 (중략) 이걸 준비되는 분도 아니고 그런데 거기서 하는 얘기가 그 좋은 교재를 들고서 이제 남성들이 요즘에는 범죄자로 낙인 찍히기가 쉬우니까 이렇게 조심해야 된다, 저렇게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한여농 봐라, 평소에는 이제 우리가 거들떠도 안 보던 앤데 얼마나 지금 잘 컸냐 그러니까 너네도 그런 그런 애들 혼혈아들 보면 머리 한번 쓰다듬어주고 얘기를 잘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참여자15(개인 농업인, 30대)

자료: 자체 면접조사 결과.

고령화·과소화된 마을에서 인적이 드문 곳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은 안전에 대한 염려에서 자유롭지 않다. 특히 귀농한 청년 여성농업인과 같이 안전한 거주지를 선택하기 어려운 경우 안전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진다. 도시와 달리 방법

CCTV나 경찰 순찰이 적은 농촌에서는 이러한 위협이 배가된다.

〈글상자 12〉 여성농업인 면접 내용

여성들의 그 공간은 엄청 달라요. 뭐냐 하면 우리 아들도 모르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얘기 하는데 안전한 집이 필요해. 그게 왜 필요해 이런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평소에 일상적으로 위협을 느끼며 이렇게 살아가는데 오늘 밤 내가 여기서 잘 때 혹시 누가 오지 않나 저도 그래요. -참여자14(현장 활동가, 50대)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살고 싶은 집을 선택할 수 없거든요. (중략) 그런 누군가 침입할까 봐, 그리고 침입 가능성도 높고. 실제로 있었고 그런 안전 문제가 좀 그게 큰 것 같아요. -참여자15(개인 농업인, 30대)
도시에서 있는 청년여성이 살다가 저렇게 막 CCTV가 가득한 곳에서 살다가 이곳에 와서 혼자 뭔가 바깥에 밤에 바깥에 나가는 건 무서워서 상상도 할 수 없고. (중략) 얼마 전에 저희 여기 지역에 있는 청년농업인들이랑 저희 가게에서 같이 밥을 먹는데 술 지나하게 취하신 분이 들어오셔서가지고 가게를 해집고 다니시는데 제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참여자17(개인 농업인, 30대)

자료: 자체 면접조사 결과.

아래의 <표 3-24>에서도 나타나듯이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안전문제에 대해서 더욱 우려하고 있다. 야간보행 시 두려운 곳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남성의 경우 17.7%에 불과하였으나 여성은 42.8%로 높게 나타났다(2020년 기준).

〈표 3-24〉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도

단위: %

구분		두려운 곳 없음	두려운 곳 있음	계
2016		66.3	33.7	100.0
	여성	59.8	40.2	100.0
	남성	73.9	26.1	100.0
2018		68.7	31.3	100.0
	여성	62.7	37.3	100.0
	남성	75.4	24.6	100.0
2020		69.2	30.8	100.0
	여성	57.2	42.8	100.0
	남성	82.3	17.7	100.0

주: 행정구역상 읍면부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인구.

자료: 통계청(각 연도). 「사회조사」, 김홍주 외(2021: 162) 표5-8-4에서 재인용.

농촌 지역사회는 가부장적 정상가족에 대한 강요도 많다. 성폭력과 같이 눈에 보이는 폭력은 아니지만, 청년 여성농업인에게 정서적·정신적 폭력으로 인식될 수 있다. 특히 비혼의 여성농업인에게 결혼을 강요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인식되는 문화가 강하게 존재한다.

〈글상자 13〉 여성농업인 면접 내용

저는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하지 왜 안 하나, 머슴을 하나 데리고 와라, 남의 집 머슴을 왜 데리고 오냐부터 시작을 해서 떠들어 재끼는데. (중략) 왜 시집이나 가지 왜 그러냐, 남편 데리고 들어와라 이런 얘기도 있고. (중략) 남자들한테도 어디 가서 와이프를 하나 색시를 이쁜 애 데리고 와라 이러듯이 젊은 청년들한테는 똑같이 그러는 거 같애. 어디서 힘 좋은 머슴을 데리고 와야 된다고 그러고. (중략) 정상을 딱 남자 여자 결혼하고 그리고 또 아이가 있어야 한다라고 딱 그게 박혀 있기 때문에. -참여자5(개인 농업인, 30대)
지금도 제 후배가 굉장히 의식이 진보적이고 굉장히 사랑스러운 후배가 있는데 제 친구 중에 하나가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데 우리 여성들은 결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데 남성들은 정말로 결혼 안 한 거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 아니 결혼을 해야 살맛이 나지 그냥 결혼 안 해도 맛이 나는데 왜 결혼을 하라고 하는지. -참여자12(사회적경제조직, 50대)
막 공무원분들이 전화가 오세요. 너 신청해놨다고 오라고. 그분들이 약간 내가 숙원사업처럼 결혼 안 하고 있는데 숙원사업이 된 건가? -참여자17(개인 농업인, 30대)

자료: 자체 면접조사 결과.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인권 보호에 대한 세대 간 인식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난다.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인권 보호 여부에 대해 설문한 결과, 인권이 보호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81.6%에 달해 인권 보호 여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 평가는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20~30대의 경우 인권이 보호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75.0%로 전체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3-25〉 여성의 인권에 대한 보호 여부(여성 대상 설문)

연령	예		아니오		합계	
	응답 수	비율(%)	응답 수	비율(%)	응답 수	비율(%)
20~30대	93	75.0	31	25.0	124	100
40대	94	77.7	27	22.3	121	100
50대	135	77.6	39	22.4	174	100
60대	180	82.2	39	17.8	219	100
70대 이상	190	90.5	20	9.5	210	100
합계	692	81.6	156	18.4	848	100

자료: 자체 설문조사 결과.

농촌 지역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인권 보호는 성폭력으로부터의 보호만 있는 것은 아니다. 성적 농담, 여성 비하 발언, 여성이기 때문에 받는 차별과 편견, 사생활 침해 등 다양하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여성농업인 응답자 중 18.4%가 마을에서 여성이 성적 농담이나 여성 비하 발언, 여성이기 때문에 받는 차별과 편견, 사생활 침해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보호받는다고 응답한 여성농업인이 81.6%로 높지만, 여전히 많은 수의 여성농업인이 인권을 보호받지 못한다. 이들이 경험한 인권 침해 유형은 대부분 여성이기 때문에 받는 편견과 차별이지만 성적 농담이나 음담패설과 사생활 침해도 이루어지고 있다.

〈표 3-26〉 여성 인권 침해 유형(여성 대상 설문)

구분		응답 수		비율(%)	
인권 침해 행위 경험 없음		692		81.6	
인권 침해 행위 경험 있음	성적 농담, 음담 패설 등	156	38	18.4	4.5
	편견과 차별		127		15.0
	사생활 침해		23		2.7
	기타		18		2.1
합계		848		100.0	

주: 중복 응답 허용.

자료: 자체 설문조사 결과.

성폭력을 행사하는 남성이 이를 성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성폭력을 개인화하여 여성농업인의 탓으로 돌리는 사례도 많다.

무엇보다도 농촌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은 지역사회의 폐쇄성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공론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이 어렵다. 이는 가해자, 피해자, 마을 주민이 모두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계속 마을에 거주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려면 성폭력을 숨겨야 하기 때문이다.

〈글상자 14〉 여성농업인 면접 내용

밤에 고등학생들 이렇게 등하고 시켜주는 일을 방법대에서 해요. 근데 자기 친구의 딸을 태워다 주면서 성폭행을 한 거예요. 장애를 보였다고. (중략) 근데 그 사람이 감옥을 갔는데 합의를.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탄원서를 쓰러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 구제하려고 마을에서. -참여자2(생산자 단체, 50대)
남편이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시골 일을 도와준다는 핑계로 알게 모르게 이렇게 표출되지는 않지만 그런 폭력은 많을 것 같아요 성폭력.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자기가 또 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니까 그냥 받아들여지는 것도 있고 아마 그런 게 많을 거 같애. -참여자6(생산자 단체, 50대)
거의 저희도 잘 몰라요. 모르는데 그래도 주변에 이렇게 한두 개 나오는 거 보면 여전하구나. (중략) 드러내지 않고 옆집도 몰라요 모르고. (중략) 그리고 여자가 자기 그런 것도 보장을 못 받으니까 말을 다 못해요. -참여자14(현장 활동가, 50대)

자료: 자체 면접조사 결과.

여성인권 보호의 차원에서, 여성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쉬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만 농촌에서 그러한 공간은 많지 않다.

주민들의 모임과 휴식, 여가활동 등을 위한 마을회관 등은 남녀 분리가 되지 않아 여성이 편하게 휴식을 취하기 어렵고, 해당 시설을 관리하고 이용 주민들(주로 남성이나 고령 여성)을 돌보는 역할도 감당하게 되어 여성농업인에게 마을회관은 휴식의 공간이 아니라 추가적인 부담의 장소가 되기도 한다.

여성과 남성의 공간분리의 필요성은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나는데, 여성과 남성 응답자 모두 높은 비율로 남녀의 공간 분리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여성은 별도로 독립된 공간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남성보다 높았다.

〈표 3-27〉 마을 및 면 단위 여성 쉼터나 문화 공간 필요 여부

구분	여성		남성	
	응답 수	비율(%)	응답 수	비율(%)
별도로 독립된 공간이 필요함	275	32.4	112	29.8
마을회관 등 기존 건물에서 남녀 분리 공간이 필요함	401	47.3	191	50.8
여성만을 위한 공간은 필요하지 않음	122	14.4	53	14.1
기타	12	1.4	9	2.4
모름/무응답	38	4.5	11	2.9
합계	848	100.0	376	100.0

자료: 자체 설문조사 결과.

3. 소결

면접조사와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지역사회에서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가부장적 문화가 농촌 마을, 읍·면, 시·군 등 지역사회의 모든 곳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여성농업인의 지위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설문조사 결과상 대체로 중간 수준이라고 평가되고 있으나 여성의 대표성, 비공식 노동에 대한 인정, 성별 분업, 여성에 대한 폭력의 네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때 여성농업인의 지위가 지역사회에서 결코 높다고 할 수 없다.

마을 등 지역사회에서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도가 높지 않고 영향력 있는 자리일수록 여성보다는 남성이 차지하는 경우가 많아 여성은 주변부적 역할에 머무르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여성의 능력에 대한 편견이나 여성을 참여시키려는 공적 기제의 부족, 자격요건을 갖춘 여성의 부족, 건전한 토론문화의 부족, 여성의 노동 부담으로 인한 물리적·시간적 제약 등 제도적·문화적 요인들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인의 결과로서 여성에 대한 외부적 배제뿐만 아니라 내부적 배제도 존재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정책이나 마을 운영에 반영되기 어렵다.

여성농업인이 마을 내에서 주변부적 구성원으로 남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는 여성농업인이 수행하는 비공식 노동-돌봄, 마을 사업, 마을 행사, 마을 관리-에 대한 정당한 인정과 보상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여성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재생산 활동이 봉사의 개념으로 치환되면서 해당 노동을 수행한 여성의 노력과 수고는 공식적으로는 무가치한 것이 되었다.

또한 마을 유지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업무 중 돌봄 및 가사노동에 해당하는 것은 여성이, 보다 공적인 업무는 남성이 맡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성별 분업에 대한 고정관념은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에게도 고착화되어 있어서 농촌에서의 성 역할 인식이 달라지고 있는 시대상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성농업인의 지위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는 여성인권에 대한 보호의식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하지만 여성에 대한 다양한 폭력은 농촌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성폭력 및 성희롱과 같은 성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상가족에 대한 강요 등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농촌 지역주민의 성평등 교육 경험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폭력에 대한 인지가 잘 되지 않아 오히려 피해자의 탓으로 돌려버리는 일도 발생하고 있었다.

여성농업인의 지위가 남성과 동등한 것으로 평가되지 않기에 농촌 지역사회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적으로는 마을뿐만 아니라 읍·면, 시·군에 걸쳐 제도 개선이나 문화 및 인식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영역별로는 정치·사회·경제적 관점에서 폭넓게 접근해야 한다.

제4장

여성농업인 지위 관련 정책

여성농업인 지위 관련 정책

1. 중앙정부 부처별 여성농업인 지위 향상 정책

1.1. 농림축산식품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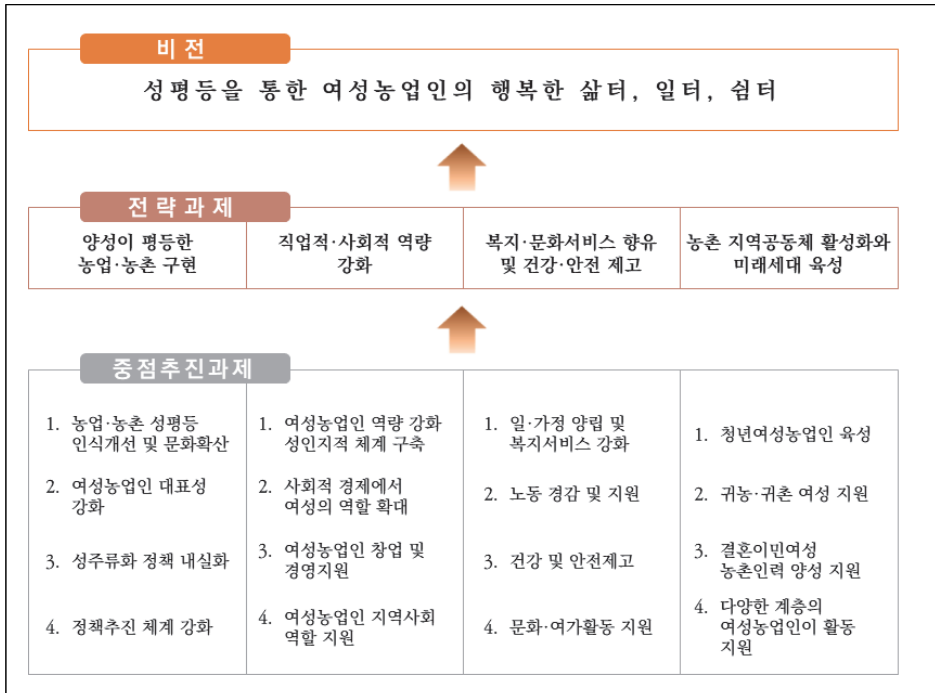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은 여성농업인 대상 정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여성농업인 정책의 근간이 되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조는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명시적으로 정책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²⁰⁾

동법에 근거하여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데 제5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에서 양성평등은 기본계획이 지향하는 비전이며 동시에 추진 전략으로 제시되고 있다.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중점 추진 과제로서 농업·농촌의 성평등 인식 개선 및 문화 확산, 여성농업인 대표성 강화, 성주류화 정책 내실화, 정책 추진 인프라 강화가 제시되었다. 중점 추진 과제는 구체적으로 양성평등

20)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조는 “이 법은 여성농업인과 여성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제고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농어촌가정 구현과 농어업의 발전 및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이다.

교육을 확대하고 농촌형 성평등 전문강사 양성, 여성농업인의 정부위원회 참여와 농협 임원 비율 제고, 성별영향평가 내실화, 성별분리통계 생산, 성평등 지표 개발·보급, 지자체의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설치 요구, 지자체 및 여성농업인 단체의 협력 강화 등을 포함한다.

〈그림 4-1〉 제5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체계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20). 『제5차(‘21~’25년)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안)』.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의 대표성과 관련된 대표적 사례는 여성의 경영주 등록을 장려하는 것이며 농협 등 생산자 조합에서 구성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여성으로 정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여성농업인에게도 남성경영주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기 위하여 공동경영주 제도를 도입하였다. 공동경영주 제도는 양적인 면에서 성장이 이루어졌다. 공동경영주 등록 인원은 2016년에 13,362명이었으며 그중 92.3%인 12,000명가량이 여성이었으나 2020년에는 47,176명 중 87.6%인

41,315명으로 증가하였다. 여성농업인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남편의 동의 없이도)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게 제도가 정비되면서 여성의 공동경영주 등록이 더욱 활발해졌다.²¹⁾

그러나 등록 대상인 여성농업인 수에 비해 공동경영주 등록 비율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이는 공동경영주 제도의 실익에 대한 현장 인식이 낮고 홍보도 부족한 탓이다. 근본적으로는 공동경영주의 법적 의미가 정의되지 않아 공동경영주의 권한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수단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어업경영체법」)에서는 농업인의 정의를 명시하고 있는데 시행령에서 농업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다섯 가지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공동경영주의 역할이나 정의, 자격요건은 찾을 수 없다. 다만 공동경영주가 나타나 있는 법률이나 서식은 농업경영체 등록 서식이 전부이다.

〈표 4-1〉 공동경영주 현황

단위: 천 명, %

공동경영주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13	23	27	36	47
여성	12	20	24	32	41
여성 비율	92.3	87.0	88.9	88.9	87.6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21). 『여성농업인 정책자료집 모아모아 한눈에』.

정부는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농협 등 생산자 조직에서 여성의 참여율 확대를 정책 과제로 추진해왔다. 제1차 여성농업인 육성 계획(2001~2005)부터 제5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2021~2025)에 이르기까지 여성농업인의 조합 참여를 확대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정책 과제로 제시되었다. 「농협법」이 1994년 12월에 개정되면서 복수조합원제도 실시되었고, 농협 내 여성위

21) 최윤지. 2020.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 문제와 개선방안 관련 토론회.” 『제2차 희망을 만드는 농어촌 여성정책 포럼: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및 권리 향상 자료집』. p. 19.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원회가 2007년에 설치되었으며,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 제8항에 따라 여성 조합원이 30% 이상인 조합은 여성 이사를 1명 이상 선출해야 한다.

그 결과, 농협 조합원 중 여성 비율은 33.3%로 증가하였고 여성 이사의 비율도 11.5%에 달하는 등 농협 내 여성의 대표성은 과거에 비해 확대되었다. 그러나 전체 여성농업인의 수를 고려할 때 농협 내에서 여성의 발언권은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사를 비롯한 임원의 91%가 남성으로 구성되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를 거의 남성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수조합원 제도가 실시되었으나 이는 가구 내 복수의 조합원이 허용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여성과 남성이 경영체를 쪼개지 않고서 공동경영주로서 조합 가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위치에서 생산자로 인정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부는 여성농업인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과정이 다양한 기관에서 운영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교육에 참여하는 여성농업인에게 영농도우미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표 4-2>. 영농도우미 지원은 최대 10일간의 교육일수에 대해 이루어지며 영농도우미 일당의 70%까지 국고에서 지원한다.^{22), 23)}

또한 농식품부는 농촌 지역의 성평등 의식 제고를 위해서 농촌형 성평등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있다. 2020년 기준 40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21명의 전문강사를 양성하였으며, 2021년에는 선발된 21명에 대한 보수과정과 41명의 신규 교육생을 대상으로 신규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2021).

22) 영농도우미 지원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가나 영농교육참여 여성농업인에게 영농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여성농업인의 교육을 간접적으로 지원하여 여성농업인의 역량 강화에 기여하므로 대표성 확대를 위한 정책으로 분류하였다.

23) 전북의 경우, 일당의 15%를 지방비로 지원하며 나머지 15%는 자부담이다(전라북도 2020).

〈표 4-2〉 여성농업인 특화 교육과정

기관	교육명	교육내용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여성농업인 리더십 아카데미	농업인 리더로서 갖춰야 할 소양교육 및 농정시책에 대한 이해
유통교육원	여성농식품 유통 리더십양성	여성농업인 리더 육성과 여성의 역할, 기획, 마케팅, 여성리더와의 대화 등
귀농귀촌종합센터	기본공통(여성)교육	'농촌여성 삶의 이해'와 여성농업인으로서 알아야 할 '필수 정보' 교육
	소그룹(여성)강의	여성농업인을 위한 '경영설계' 이론 및 '우수사례' 특강
농촌진흥청	여성친화형 농업기계교육	여성농업인의 농업기계운전 및 안전사고 예방기술 등
농협	농축협여성리더과정	여성대의원·조직장 역량 제고, 여성리더십 고취를 통한 경영 참여 활성화 등
	농축협여성리더과정단위형	여성리더십 역량 강화, 여성농업인 화합 및 상생 발전 등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21). 『여성농업인 정책자료집 모아모아 한눈에』.

여성농업인의 지역개발 참여도와 역할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서 여성농업인 마을리더 및 사무장 육성을 위한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그 사례로서 농촌 지역개발 리더의 여성 수료생 비율은 2018년에 26%였으며 사무장 및 신규지구 여성수료자 비율 2018년 26%, 2019년 27%였다. 여성농업인 대상 리더십교육의 절반 이상이 여전히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어 여성 대상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1.2. 여성가족부

한편 여성가족부에서 여성농업인의 인권보호와 지위 향상을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들도 있다. 대표적인 사업이 여성친화도시이다.

여성가족부는 지역 정책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뜻하는 여성친화도시를 지정하고 있다. 여성친화도시의 개념은 공간 사용과 계획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지역발전정책의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여 여성의 성장과 안정을 구현하는 행정단위를 뜻한다(신승춘·권자경 2013: 309).

여성친화도시 지정은 해당 지자체가 지역개발 정책 수립 시 성평등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가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된 지자체에 성평등 교육과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농촌 지역 중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지역은 도농복합시 31개, 군 21개에 이른다(2021년 1월 기준).

〈표 4-3〉 여성친화도시 현황('21년 1월 기준)

지역	피지정 지자체 수	지정도시		
		일반 시·구	도농복합시	군지역
서울	13	도봉구, 서대문구, 마포구, 강 동구,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관악구, 금천구, 동 대문구, 동작구, 종로구	-	-
부산	6	사상구, 연제구, 남구, 금정구, 사하구, 동구	-	-
대구	2	수성구	-	달성군
인천	4	부평구, 연수구, 미추홀구, 남 동구	-	-
광주	5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	-
대전	4	서구, 대덕구, 유성구, 중구	-	-
울산	1	중구	-	-
경기	14	안산시, 안양시, 의정부시, 광 명시, 고양시, 부천시, 성남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화성시, 양주시, 이 천시, 파주시	-
강원	7	동해시	원주시, 삼척시, 춘천시	영월군, 횡성군, 정선군
충북	6	-	제천시, 충주시	증평군, 음성군, 괴산군, 진 천군
충남	11	-	아산시, 당진시, 보령시, 서 산시, 공주시, 천안시	홍성군, 금산군, 부여군, 서 천군, 예산군
전북	3	-	김제시, 남원시	고창군
전남	8	-	순천시, 광양시, 나주시	장흥군, 강진군, 장성군, 영 암군, 화순군
경북	5	-	포항시, 구미시, 경산시, 김 천시	칠곡군
경남	5	-	양산시, 김해시, 창원시, 진 주시	고성군
제주	1	-	제주특별자치도	-
세종	1	-	세종특별자치시	-
합계	96	44	31	21

자료: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검색일: 2021. 10. 1.).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인권침해에 개인이 대응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정부에서는 성폭력·가정폭력 등 폭력 피해자에 대한 긴급상담 및 안내·보호조치를 수행하는 여성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센터, 다누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여성긴급전화 1366은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초기 지원을 수행하고 있으며 상담 및 긴급피난처 지원, 전문상담소 및 관련 행정기관과 연계하여 피해 여성을 지원한다.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로서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하여 상담, 의료, 법률, 수사, 심리치료 서비스를 지원한다. 다누리콜센터는 다문화가족 및 이주여성에게 한국 생활정보부터 부부 상담, 폭력피해 긴급 지원을 원스톱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서비스는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공급되고 있어 농촌 지역의 상황에 맞는 대응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이 한계이다. 여성긴급전화 1366은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1개소씩 운영하고 있으며 해바라기센터는 서울과 광역시, 도 단위에서 1개소 이상 최대 6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주로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 소재하고 있다.

〈표 4-4〉 지역별 해바라기센터 현황

지역	개수	지역	개수
서울	6	경기	6
부산	2	강원	3
대구	2	충북	2
인천	3	충남	1
대전	1	전북	3
광주	2	전남	2
울산	1	경북	3
제주	1	경남	2
합계			40

주: 모든 유형(위기지원형, 아동, 통합형)의 합.

자료: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검색일: 2021. 10. 1.).

2. 지자체의 여성농업인 지위 관련 정책

지자체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권익보호, 복지 향상 및 전문인력화를 위해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다.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120개 시·군이다(2020년 7월 기준).

〈표 4-5〉 여성농업인 육성 조례 제정 현황

시·도	통합시·군 수 (전체 시·군 수)	조례 제정	해당 시·군(제정 연도)
부산	1(16)	-	
대구	1(8)	1	달성군(20.7)
인천	2(10)	1	강화군(17)
광주	1(4)	4	광주광역시(17), 광산군(18), 서구(19), 북구(19)
울산	1(5)	3	동구, 북구, 울주군(17)
세종	1(1)	1	세종시
경기	15(31)	9	경기도, 안성시, 남양주시, 가평군, 양평군, 포천시, 연천군(17), 평택시(17), 여주시(18)
강원	15(18)	13	강원도, 원주시, 강릉시, 양양군, 양구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속초시, 횡성군(17), 철원군(17), 화천군(18), 평창군(19)
충북	11(11)	12	충북도, 청주시, 음성군, 제천시, 괴산군, 옥천군, 영동군, 보은군, 증평군, 진천군, 단양군(17), 충주시(18)
충남	15(15)	16	충남도, 공주시, 서산시, 서천군, 아산시, 예산군, 홍성군, 천안시, 청양군, 부여군, 논산시, 보령시, 계룡시(17), 금산군(17), 태안군(17), 당진시(19)
전북	13(14)	10	전북도, 남원시, 익산시, 정읍시, 김제시, 임실군, 고창군, 군산시, 부안군(20.7), 진안군(20.8)
전남	21(22)	23	전남도, 순천시, 광양시, 나주시, 담양군, 영광군, 강진군, 곡성군, 장흥군, 무안군, 진도군, 보성군, 신안군, 해남군, 구례군(17), 함평군(17), 화순군(17), 장성군(17), 영암군(17), 목포시(17), 고흥군(17), 여수시(18), 완도군(18)
경북	23(23)	16	경북도, 문경시, 상주시, 영주시, 울진군, 성주군, 칠곡군, 청송군, 봉화군, 의성군(17), 영양군(17), 포항시(18), 영덕군(18), 예천군(18), 김천시(18), 경주시(19)
경남	18(18)	10	경남도, 진주시, 거창군, 함안군, 함천군, 밀양시, 남해군, 사천시(17), 산청군(18), 의령군(19)
제주	1(1)	1	제주도
합계	139	120	-

주: 통합시군은 도농복합도시 및 군지역을 의미함.

자료: 농식품부 내부자료; 임소영 외(2020) 재인용.

지자체의 여성농업인 육성 조례는 조례의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지자체장과 여성농업인의 책무, 여성농업인 대상 정책 및 지원 내용을 나열하고 있다. 또한 여성농업인 육성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칙이 포함되어 있다. 조례의 구성과 내용은 지자체별로 다르지만 주로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조 및 융자사업의 시행, 복지정책, 교육 지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지자체에서 제정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는 성평등 관점이 부족하고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누락되어 있다. 여성농업의 지위 향상 또는 성평등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경우가 드물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부 조항에서 잠깐 언급되는 수준이다. 예를 들면, 서천군의 조례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하의 조문에서는 지위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즉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여성의 참여 확대라던가 성 주류화 정책, 성평등 교육에 관한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평창군의 경우에는 성평등 증진을 위한 정책 지원이 복지 향상에 관한 제8조의 5항으로서 잠깐 언급되고 있으며 그 외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 또는 성평등 관련 조항이 별도로 들어 있거나 타 조항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

이처럼 대다수의 지자체가 여성농업인 육성 조례를 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례는 여성농업인을 단순히 농산물 생산자와 복지 및 교육 대상으로만 인식하고 있어 지역사회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이나 그에 대한 인정의 요소는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지자체의 여성농업인 육성 조례가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양성평등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 정책의 수립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여성농업인 정책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려면 여성농업인 전담인력의 확보가 중요한 과제이지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여성농업인 전담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도에서는 여성농업인정책팀이 별도로 구성되기도 하였으나 타 업무와 여성농업인 대응 업무를 겸하여 담당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특히 시·군 단위에서 여성농업인 전담팀이 구성된 사례는 드물며 1명의 공무원이 여성농업인, 청년, 복지 등의 업무를 병행 추진하는 것이 다반사이다.

〈표 4-6〉 지자체별 여성농업인 전담 인력 현황

지자체		팀 명칭	팀 인원			여성 전담 인력 인원		
			계	팀장	직원	계	팀장	직원
광역시	경기	농업인육성팀	5	1	4	1	0	1
	강원	농업인력팀	4	1	3	1	0	1
	충북	농업경영팀	4	1	3	1	0	1
	충남	농촌복지여성팀	4	1	3	2	1	1
	전북	여성권익팀	5	1	4	5	1	4
	전남	여성농업인지원팀	4	1	3	2	1	1
	경북	농촌인력복지팀	4	1	3	1	0	1
	경남	여성청년농업인팀	4	1	3	2	1	1
	제주	여성농업인지원팀	3	1	2	3	1	2
기초	영월군	여성정책팀	4	1	3	3	1	2
	부여군	농정기획팀	7	1	6	2	1	1
	아산시	여성정책팀	5	1	4	5	1	4
	나주시	여성농업인지원팀	2	1	1	2	1	1

주: 2021년 10월 기준.

자료: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저자 직접 작성(검색일: 2021. 10. 1.).

일부 지자체에서는 여성농업인 전담팀이 설치되기도 하였는데 나주시의 여성농업인지원팀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나주시 여성농업인지원팀은 농업경영 코디네이터 및 여성농업인 성평등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이들을 농업인 대상 교육에 투입하였다. 성평등한 농촌 만들기 프로그램은 600개의 마을에 성평등 강사단을 파견하여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성평등 강사는 여성농업인 중에서 기본소양 등 서류전형을 통과하고 기본과정, 심화과정, 전문과정의 교육을 수료한 뒤 최종 심사를 통과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선발된 성평등 강사는 농업인 대상 영농교육과 마을좌담회에서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며 활동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다. 2020년 10~12월에는 12명의 성평등 강사가 농업경영코디네이터와 함께 31개소에서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였다.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여성의 비공식 재생산 노동이 공식화되는 사례도 있다. 농번기 공동급식 사업이 바로 그러한 예이다.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은 공동

급식 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15인 이상 공동급식 참여자가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는 공동급식 조리원의 인건비 및 부식료를 지원한다(김진용 2020: 9). 동 사업은 2019년에 2,646개 마을, 2020년에 3,164개 마을에서 실시되었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은 사업 인지도와 참여도가 높고 필요성도 인정되지만 여성농업인의 노동 부담을 추가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원 단가가 낮아서 충분한 보상이 되지 않거나 농업 노동이 가장 많이 필요한 때에 추가적으로 식사 준비를 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이다(임소영 외 2020: 164).

3. 일본의 여성농업인 정책 사례²⁴⁾

일본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으로 ‘가족경영협정 체결’, ‘인정농업인 제도’, ‘농업위원 등 지역정책 수립에 여성농업인의 참여’, ‘농업여자 프로젝트’, ‘여성농업사 제도’ 등이 있다.

3.1. 2020년 여성농업인이 빛나는 농업 창조를 위한 제언

농림수산성에서는 2020년 7월 ‘여성의 농업 활약 추진을 위한 검토회’를 구성하였다. 이 검토회에서 발표한 보고서 “여성 농업인이 빛나는 농업 창조를 위한 제언-발굴하기, 역할부여하기, 연계하기”에는 농어촌 여성 중장기 비전 책정 이후의 진행 사항을 총괄하고, 향후 여성농업인 관련 정책에 있어 과제 및 대안을 제시하였다.

24) 해당 절은 한울사회과학연구소 이영자 박사에게 위탁한 원고에서 발췌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 2> 참조.

여성농업인이 빛나는 농업 창조를 위한 제언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① 농촌의 의식 개혁, ② 여성농업인의 서로 배우기 및 여성 그룹 활동 활성화, ③
 지역을 선도하는 여성농업인 육성·지역 농업 방침 수립에 여성의 참여, ④ 여성농
 업인 관련 플랫폼 기능의 강화 등이다.

〈표 4-7〉 2020년 여성농업인이 빛나는 농업 창조를 위한 제언 개요

농촌의 의식 개혁
▪ 연수·모임 안내 수신처에 부부 모두의 이름이나 자녀의 이름 기재, 여성농업인을 위한 모임 등에서 보육서비스 제공,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쉽도록 조기에 안내장 발송 ▪ 농업고등학교 학생이나 경영 계승자 등에게 가족경영협정에 대해 알림,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협정 내용 재검토 등을 추진
여성농업인의 서로 배우기 및 여성 그룹 활동 활성화
▪ 도도부현이나 시정촌에 여성농업인을 위한 일원적 상담창구 설치 ▪ 여성그룹의 활동 발굴, 그룹을 이어주는 횡단적 네트워크 구축 추진 ▪ 육아, 돌봄 지원과 관련한 정보 제공
지역을 선도하는 여성농업인 육성, 지역 농업 방침 수립에 여성의 참여
▪ 여성리더 육성 연수, 여성의 횡단적 교류 추진 ▪ 농업위원이나 JA 임원 중 여성 임용 관련 목표 지표 설정, 도도부현·시정촌의 구체적인 목표 지표 설정 ▪ 여성 임용과 조직의 수익 향상 관련 상관관계 객관적 조사 실시 ▪ 시정촌·농업위원회 등 지역 내 협의에 여성의 참여 목표 설정
여성농업인 관련 플랫폼 기능의 강화
▪ 농림수산성 여성활약추진실이 플랫폼 역할을 담당하여 타 정부 부처, 도도부현, 시정촌, JA, 농업위원 회, 전국농업회의소 등과 연계 강화 ▪ 10년을 기준으로 재평가 진행

자료: 농림수산성(2021: 146).

3.2. 가족경영협정 체결

농림수산성에서는 농촌 여성의 경영 참여 및 역할 분담, 의사결정, 경영 이양 등
 농업경영과 생활에 관해 가족이 서로 협의하여 수행하도록 1995년부터 ‘가족경
 영협정’을 추진해 왔다.

가족경영협정의 체결 수는 1996년 5,335건을 시작으로 계속 증가해 왔다. 이는

2002년부터 가족경영협정 체결을 조건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배우자, 후계자에 대한 농업인 연금 보험료를 국고로 조성하는 사업이 개시된 점, 2003년에는 가족경영협정 체결을 조건으로 부부 등에 의한 인정 농업인의 공동 신청이 가능해진 점 등이 체결 수의 증가를 뒷받침했던 요인으로 판단된다.

〈그림 4-2〉 가족경영협정의 체결 수 추이



주 1) 매년 3월 31일 현재.

2) 동일본대지진의 영향으로 2011년 미야기현 및 후쿠시마현 등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체결 농가 수는 2010년 3월 31일 기준 데이터를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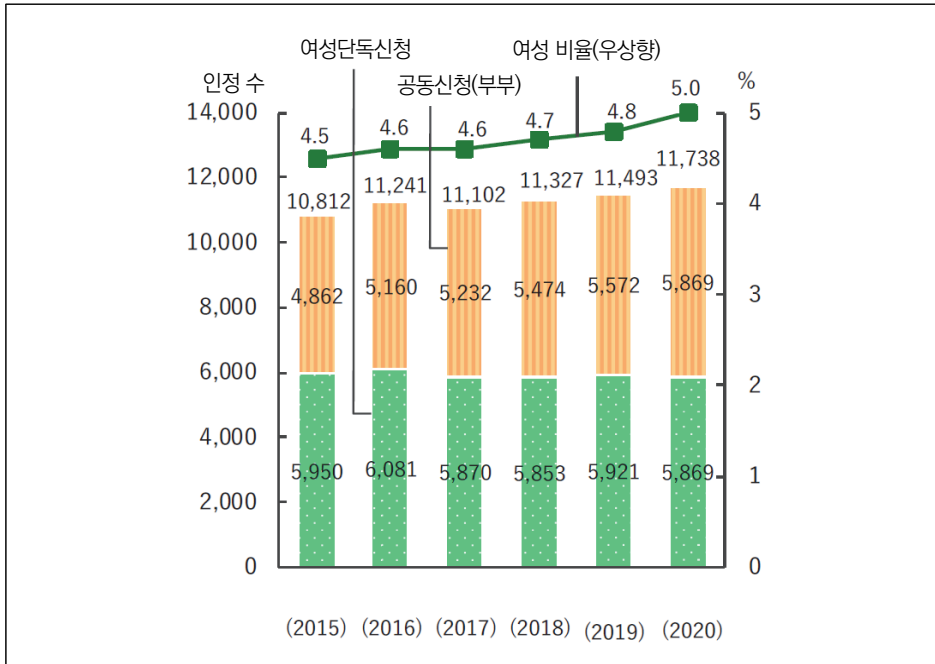
자료: 여성의 농업 활약 추진을 위한 검토회(2020: 10).

3.3. 인정농업인 제도

‘인정농업인’ 제도는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에 의거하여 농업경영 규모 확대에 초점을 맞춘 리더 육성제도로 시정촌(市町村)이 인정하는 제도이다.

여성 인정농업인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8.6% 증가한 11,738명으로 전체 인정농업인 수 대비 점유율은 0.5% 증가하여 5.0%가 되었다. 이는 2003년부터 허용된 부부 공동신청의 증가가 하나의 요인으로 판단된다(농림수산성 2021: 143).

〈그림 4-3〉 여성 인정농업인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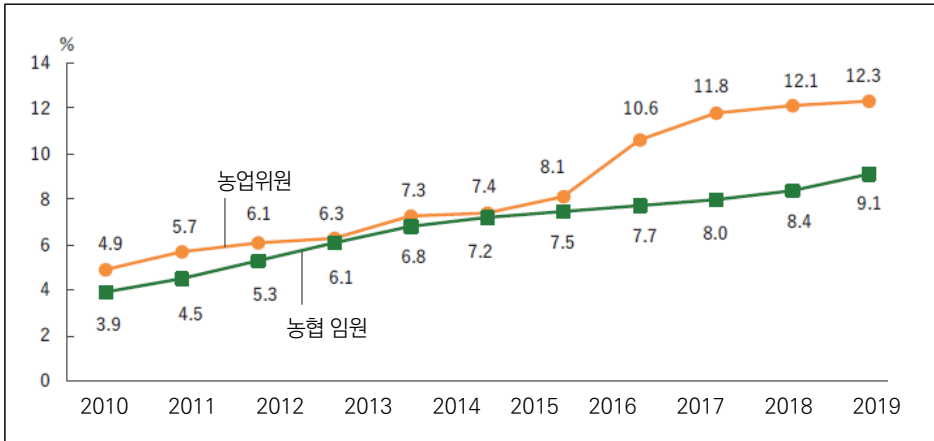
자료: 농림수산성(2021: 143).

3.4. 농업 위원 등 지역정책 수립에 여성농업인의 참여

일본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사회적 활동을 위해 남성 중심적인 농업위원회와 지역농협에서 여성 임원 비율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역정책 수립에 여성농업인이 참여하도록 ‘남녀공동참여 기본계획’에서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여성 농업위원의 전국 조직인 전국농업위원회 여성협의회나 농협전국대회 결의에서도 별도의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농림수산성에서는 농업위원이나 농협 임원에 여성 참여를 추진하기 위한 연수회 등도 실시하고 있다(여성의 농업 활약 추진을 위한 검토회 2020: 7). 지역의 농업정책을 수립하는 농업위원 또는 농협 임원 중 여성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으나 2019년 기준 농업위원은 12.3%, 농협 임원은 9.1%로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림 4-4〉 농업위원 및 농협 임원 중 여성 비율



자료: 농림수산성(2021: 145).

이에 제5차 남녀공동참여기본계획(2020년 12월 각의결정)에서는 제4차 계획의 성과목표에 더해 토지개량구(토지개량구 연합 포함) 이사직의 여성 비율과 인정농업인 중 여성 비율을 목표 지표로 추가했다.

〈표 4-8〉 제5차 남녀공동참여기본계획의 성과목표

항목		성과목표 (2025년)	현황 (기준 연도)
농업위원 중 여성 비율	여성위원이 등용되지 않은 조직 수	0	273/1,703 (2019년)
	농업위원 중 여성 비율	20%(조기 달성), 30% 목표 지향	12.1% (2019년)
농업협동조합 임원 중 여성 비율	여성 임원이 등용되지 않은 조직 수	0	107/639 (2019년)
	임원 중 여성 비율	10%(조기 달성) 15% 목표 지향	9.1% (2020년)
토지개량구 이사 중 여성 비율	여성 이사가 등용되지 않은 조직 수	0	3,737/3,900 (2017년)
	이사 중 여성 비율	10%	0.6% (2017년)
인정농업인 중 여성 비율		5.5%	5.0% (2020년)
가족경영협정 체결 수		70,000건	58,799건 (2020년)

자료: 농림수산성 경영국 취농·여성과 여성활약추진실(2020: 5).

3.5. 농업여자 프로젝트

농업여자 프로젝트는 다양한 기업, 교육기관 등과 연계하여 여성농업인의 지혜를 살린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 개발, 미래의 여성농업인을 육성하는 활동, 여성농업과 관련한 정보 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농림수산성 경영국 취농·여성과 여성활약추진실 2020: 8).

농업여자 프로젝트의 목표는 사회 전체에서 여성농업인의 존재감을 높이고 여성농업인 스스로의 의식 개혁, 경영 능력 발전을 촉진하여 직업으로 농업을 선택하는 젊은 여성들의 증가이다.

〈표 4-9〉 농업여자 프로젝트의 사업 내용

사업	내용
기업 프로젝트	기업과 농업여자멤버가 협동으로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 등을 개발, 여성농업인의 활약과 매력을 홍보(각 기업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
팀 육성	고등학교, 대학 등의 교육기관과 활발하게 활동하는 농업여자멤버가 연계하여 농업을 꿈꾸는 학생 발굴, 동기 부여, 의식 향상을 위한 사업 실시
SDGs 활동 홍보	농업여자멤버의 SDGs 활동을 적극 홍보
농업여자 LAB 활동	멤버 개개인이 관심 있는 주제로 자주적 스터디 그룹 활동을 지원
SNS나 이벤트 등을 활용한 여성농업인의 매력 홍보	

자료: 농림수산성 경영국 취농·여성과 여성활약추진실(2020: 8).

2021년 2월 현재 농업여자 프로젝트의 멤버는 840명이며, 농업기계 제조업체 등 37개사, 교육기관 7개교가 참여하고 있다.

농업여자 프로젝트는 기업 프로젝트와 조직 육성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기업 프로젝트는 기업과 여성농업인의 협력을 통해 신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목표가 있다. 이와 관련한 성과로 (주)시마무라의 기능성 좋은 여성용 작업복 개발, 몽벨의 소재와 디자인을 겸비한 여성 작업복 개발, 가네코소교의 여성이 사용하기 편리한 농기구, 이세키농기의 여성농업인용 예초기 개발 등을 사

례로 들 수 있다. 둘째, 2016년부터 교육기관이 참여한 조직 육성은 고등학교, 대학과 여성농업인이 연계하여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학생 발굴, 동기 부여, 의식 향상 등을 실시하는 활동이다.

농업여자 프로젝트는 여성농업인들의 목소리를 담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상품 개발 및 여성농업인의 노동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여성농업인의 권익과 위상을 높이고 여성농업인이 겪는 문제를 직접 해결한다는 점에 큰 특징이 있다.

3.6. 여성농업사 제도

농업사 제도는 지역에 크게 공헌한 농업인을 도도부현이 농촌 지역의 리더로서 인정하는 제도이다. 지역에서 여성 집단이나 조직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거나 경영조직을 발전시킨 여성, 즉 지역 내의 여성모임에서 리더로 활동하는 여성은 여성농업사로 인정된다(정은미 외 2012a: 89).

일본의 지역 농업에서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지역의 의사결정에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여성농업사 인정제도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여성을 지역리더로 인정함으로써 지위 향상은 물론 공식적인 리더로 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정은미 외 2012a: 89).

여성농업사 제도는 여성의 활동을 장려함으로써 능력발휘 기회를 주고 지역주민에게는 그 능력을 인식시켜 사회적 평가를 높이는 효과도 있다. 여성농업사는 아직 소수이지만 여성농업사로 인정되는 것이 지역의 정치적 의사결정 기회에 참여하는 통로가 되어 여성 농업위원 수가 특히 많아지는 현(県)도 등장하고 있다(정은미 외 2012a: 90).

또한 여성 개인적으로도 여성농업사로 활동하며 유용한 정보를 얻는 기회가 될 뿐 아니라 농업 기술과 능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글상자 15〉 히로시마시의 여성농업사 인정 사업

○ 목적

- 히로시마시는 뛰어난 여성농업인에게 ‘히로시마시 여성농업사’라는 칭호를 줌으로써 지역의 여성 리더로서, 일반 여성 농업자나 신규 참가자에게 지도·육성 또는 그룹 활동의 기업화 등, 폭넓은 활동을 전개시켜 여성 농업자의 능력 개발과 지위 향상을 도모하여 히로시마시의 농업을 진행해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또한 ‘여성농업사’라고 하는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행정의 각종 심의회나 지역사회 단체에 여성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으며 여성의 사회 참여의 발판이 되어 사회적 지위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

○ 전체 계획

- 2년마다 3명을 선발한다.

연도	1995~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인증 수	9명	3명	3명	3명	3명	3명	3명	3명	30명

○ 사업(연수) 내용

구분		1년차	2년차
교육	여성문제파악	- 여성농업사의 마음가짐 (선배 농업사와의 간담회) - 농업과 여성의 자립에 대해서 (강연회)	여성 농업자의 문제 (강연회)
	리더연수	표현력 향상 연수, 기업 사례 연수	사람의 마음을 파악하는 방법 연수
	시내(市内) 농업의 이해	시내 농가 견학	시내 농가 견학
	우수 사례 견학	전국 여성 활성화 사례 견학	전국 여성 활성화 사례 견학
	농업 지식 등	농약의 사용법 등 관련 교육	- 상품 개발 연수 - 농약의 사용법 등 관련 교육
기타		공인식	수료식

자료: 히로시마시 농림수산진흥센터(<http://www.haff.city.hiroshima.jp/hp-josei/jigyo/josei-jigyo.htm>, 검색일: 2021. 10. 29.).

4. 한계와 개선 과제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여성농업인 정책은 할당제나 목표제 등의 차별 철폐 조치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정부의 차별 철폐 조치는 외부적 배제를 줄이는 측면에서 일부 효과가 있었지만 남성에 비해 여성의 대표성은 여전히 부족하다.

여성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더라도 여성의 의견이 남성의 그것과 동등한 비율로 반영되지는 않는다. 예컨대, 위원회에 여성이 들어갈 수는 있으나 위원장 등 보다 핵심적 역할을 맡는 지위에는 여성이 들어가기 어렵다. 또한 여성의 의견은 여성과 관련된 영역으로만 국한되거나 전체 제도나 사업에 대한 여성의 의견은 다소 경시되는 경향이 있다. 즉, 겉으로 보기에는 여성이 논의에 참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적 배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외부적 배제를 없애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되 내부적 배제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여성농업인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은 중앙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지역사회에서 여성농업인의 지위가 향상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성평등 의식 개선이나 대표성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성 주류화 정책이 주로 중앙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자체 수준에서 해당 정책이 재생산되고 실행에 옮겨지지 않고 있다. 이는 여성농업인 관련 정책의 거버넌스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기 때문으로, 중앙과 지방 간의 유기적인 관계가 부족하여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지 않고 정책의 성과와 한계의 환류체계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앙-지방 간의 유기적 협조체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의 전담조직 및 인력이 필요하지만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여성농업인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지자체 전담기구 및 인력이 부족하다.

또한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지자체의 조례가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제정되었으나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 실현을 위한 지자체의 업무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본적으로는 지자체 여성농업인 담당자의 성평등 인식이나

여성농업인 정책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것이 문제이기도 하다.

또한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경제·사회·복지 등 전 영역에 걸쳐 있으나 현재의 정부조직은 기능별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정책 수요에 통합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점이 한계이다. 대표적 사례로 들 수 있는 것이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상담 관련 정책인데 농촌 지역에서 발생하는 성 관련 피해에 대해서 여성가족부가 관할하는 상담센터 등은 농촌현실에 대한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세심한 대응이 어려운 한편, 농식품부의 업무 범위는 여성에 대한 폭력 대응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또한 적절한 대응이 어렵다.

부처 간 기능의 분리를 극복하고 각 지역사회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지자체가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 여성농업인의 정치 참여, 정책 환류, 경제적 자립, 인권보호 등 다양한 영역에서 통합 지원하는 것이 정책 성과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이는 지자체가 여성농업인 전담팀을 설치함으로써 실현 가능하다.

한편 일본의 사례는 여성의 경제적 기회 및 역량 확대가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에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본의 여성농업인 정책은 지위 향상을 넘어 농업경영조직 내에서 여성의 능력 발휘나 평가, 다른 산업과의 연계와 같은 방향으로 중심이 옮겨지고 있다. 그동안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이 인권 측면에서 논의되어 왔다면, 6차 산업화를 계기로 여성 인력의 활용을 위한 ‘인재’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생산자로서 여성의 지위를 인정하고 사회적 재생산 노동을 공식화하는 것이 곧 여성의 대표성 확대나 인권 보호로 연결된다는 인식이 확대된 결과로 판단된다.

일본 사례 중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은 지자체에서 여자농업사를 선정하여 지도자를 양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 내에서 경제·사회적으로 선도하는 위치에 있는 여성에게 별도로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지역 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여자농업사의 선발은 여성농업인이 지도자급 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계기가 될 수 있으며 대외적으로도 여성농업인의 위상이 높아지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면에서 국내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제5장

민간분야 대응 사례와 시사점

민간분야 대응 사례와 시사점

1. 제주여민회의 성평등마을규약

1.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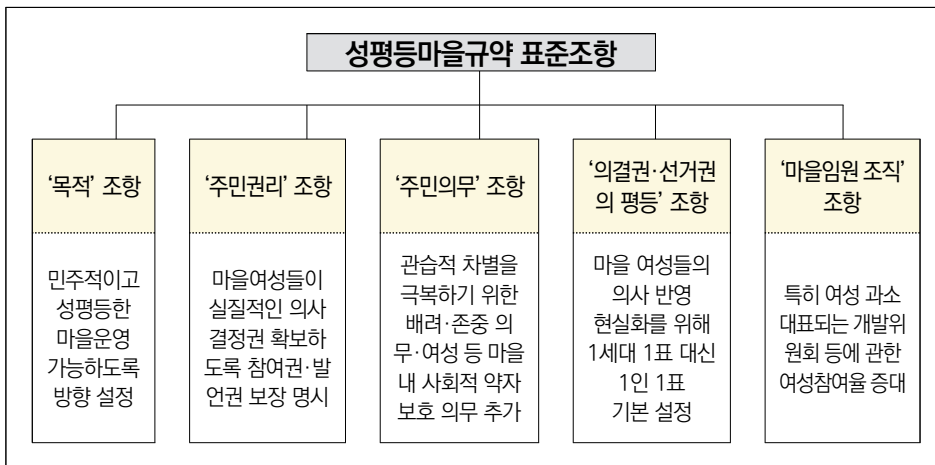
제주는 여성의 경제참여율은 높으나 지역사회에서 여성의 대표성은 약하다. 특히 마을 단위 공동체에서 여성은 의사결정과정에서 구조적으로 배제되고 주민으로서 정당한 권리 행사가 제한되었다. 이를 해결하고자 성평등마을규약 표준안 마련 사업이 시작되었다.

성평등마을규약 표준안 마련 사업은 2017년 제주여민회²⁵⁾의 주도로 시작되었다. 제주에서 여성대표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자 ‘제주지역 마을의 의사결정구조와 여성의 경험’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마을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에서 여성 대표성은 낮았고 이장이나 개발위원회 등 마을 내 주요 의사결정에서 여성은 체계적으로 배제되는 문제가 확인되었다.

25) 제주여민회는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활동하는 여성운동 단체다. 1987년 창립 이후 여성에 대한 가부장적 차별과 억압에 반대하여 성차별 제도 개선을 위한 운동을 해오고 있다. 제주여민회에는 사무국을 중심으로 제주여성영화제 집행위원회, 정책위원회, ‘4·3과여성’위원회, 문화위원회, 2020 위원회, 홍보출판위원회 등 6개의 위원회와 성평등 교육센터, 고용평등상담실로 구성되어 있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평등마을규약 표준조항 제정이 시작되었다. 제주 지역 행정리에서 여성이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였다. 개발위원회의 여성 참여 확대, 마을선거 1인1표제 실시, 지역사회 유지 노동에 대한 공동 책임을 표준조항에 담아 마을규약을 개정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주 지역 마을규약은 1972년 정부에서 배포하였던 새마을운동 규약을 그대로 담은 오래된 규약으로 새로운 시대상을 반영할 기회가 없었다. 1가구1표제로 다양한 배경의 주민이 마을 의사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마을개발위원회의 성별 불균형을 해소할 장치도 없었다. 마을 의사결정에서 여성이 배제되면서 지역사회 내 여성의 역할을 평가절하하고 음식 준비와 같은 사적 영역으로 여성의 지위를 제한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여성의 의사결정 참여를 확대하고자 성평등마을규약 표준조항을 제정하여 마을운영에 여성이 참여하도록 제안한 것이다.

〈그림 5-1〉 성평등마을규약 표준조항 구분 및 조항별 선정 이유



자료: 제주여민회(2019). 『성평등마을규약표준조항 마련 및 공론화 사업 결과 자료집』.

〈표 5-1〉 제주도 성평등 마을규약 표준조항

구분	성평등마을규약 표준조항(안)
목적	제○조(목적) 본 향약(규약)은 주민 스스로가 민주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합리적으로 마을을 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녀노소 마을 주민 모두가 평등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민권리	제○조(주민회원의 권리) 모든 주민회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 마을의 모든 의사결정에서 배제되지 않고, 발언기회를 균등하게 가질 권리
주민의무	제○조(주민회원의 의무) 모든 주민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 연령·성별 등에 따라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배려하고 존중할 의무 ○. 마을 내 인권문제(가정폭력, 아동학대, 노인학대, 성폭력 등) 발생 시 주민회원 누구나 적극적으로 피해자 보호조치 시행 의무
의결권·선거권의 평등	제○조(의결권·선거권의 평등) 마을 내 의결권·선거권은 1인 1표를 기본으로 한다.
마을임원조직	제○조(마을임원조직) ○. 개발위원회 구성 시 남녀 평등한 참여를 위해 위촉직 개발 위원 중 40%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구성한다. ○. 그 외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성별·연령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21). 『여성농업인 정책자료집 모아모아 한눈에』.

성평등마을규약 표준조항을 마을규약에 실제 반영하도록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시범사업 대상은 외부 제안 수용 측면에서 작은 마을, 사업에 호의적인 이장이 재직 중인 마을, 역량 있는 부녀회 회원이 있는 마을을 고려하여 신도3리, 한림3리, 신산리를 선정하였다. 시범사업은 마을별 TF팀을 구성하면서 시작하였다. 마을별 특수성을 고려한 성평등마을규약(안)을 제정하고 모의회의를 통해 마을총회 안건으로 발의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였다. 현재 시범사업 마을 중 신도3리가 마을총회를 거쳐 성평등마을규약을 실현하였다.

1.2. 사업 추진 전략

해당 사업은 마을 여성과 연대함으로써 시작하였다. 외부기관이나 도청과 같은 관 주도로 표준조항을 만들어 마을에 배포하는 방식은 실제 마을규약에 반영될 여

지가 적기 때문이다. 반영된다고 해도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변화에 대한 내적 동기가 부족함이 명백하므로 여성 스스로가 변화에 대한 인식과 동기 부여가 되도록 하였다. 특히 부녀회가 마을규약 개정안을 직접 검토하고 마을 총회에서 상정하도록 하여, 여성의 주체성을 확보하였다.

사업 대상 행정리가 농촌인 점을 고려하여 제주여민회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특별자치도연합(이하 전여농제주연합)과 연대하여 사업 추진단을 구성한 것도 특징이다. 외부인이 개입하기 어려운 환경을 고려하여 마을에서 이미 활동 중인 부녀회와 전여농제주연합과 연대함으로써 마을 여성이 직접 마을규약을 제정하고 성평등한 마을을 만드는 전략을 사용하였다.

마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평등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전략도 사용하였다. 일반적인 성인지 교육과 함께, 적합한 강사를 매칭하여 마을규약 제정을 위한 교육을 기획하고 실시하였다. 활동가와 주민과의 접점을 늘려 마을에 대한 외부인의 평가에 대한 수용성을 높일 수 있었다.

2.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4리 먹빵이 인형극단

충청남도 보령시에 위치한 성주4리는 주민 대부분이 광업에 종사하던 탄광 지역으로서, 폐광이 되면서 해당 지역이 활력을 잃었다. 그러나 2003년 피서객에게 평상을 빌려주는 ‘들마루사업’을 시작으로 공동작목반과 영농조합법인을 세워 표고버섯과 같은 농산물을 공동생산하여 소득을 늘려나감으로써 마을이 활력을 다시 찾기 시작했다. 마을이 활기를 찾아가면서 폐광으로 힘들었던 과거를 치유하고자 다양한 문화활동을 시작했다.

성주4리는 탄광촌이라는 특수성과 농촌 마을의 가부장적 환경으로 인해 여성에 대한 성차별과 폭력이 일상화된 곳이었다. 광부에게 광산이라는 곳은 위험한 곳이다. 막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항상 신경이 곤두서는 곳이다. 작업 중에 작은 것

이라도 떨어지지 않나 걱정해야 한다. 긴장 속에서 일하다 보니 집에 오면 짜증이 나고 그럴 때면 아내에게 그 불뚝이 튀었다. 긴장 속에서 움츠렸던 감정이 가족, 특히 아내에 대한 화풀이로 이어졌다. 이유 없는 가정폭력과 무시는 기본이고, 여성이 탄광에서 하는 노동에 대한 가치도 인정받지 못했다. 광산촌에서 광물을 선별하고 차량에 싣는 중요한 일을 도맡아 했지만, 광부가 출근할 때는 숨어 있어야 하는 그림자 존재였다. 문제는 마을 여성이 남성의 이러한 행동이 잘못된 줄 몰랐다는 것이다. 비난을 들으면서도 자기 잘못이라고 자책했다. 남편에게 폭행 당해도 당연히 내가 맞아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억압적 상황에서 여성은 대표성을 가질 수 없었고 마을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했다.

성주4리에서 나타난 성차별의 대표적 사례는 산신제(山神祭)에서 나타난다. 여성은 산신제에서도 철저히 배제되었다. 여성은 음식을 장만하거나 제사를 준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지만 제사 자체에는 참여가 제한되었다.

성주4리의 성평등은 산신제의 성차별적 구조를 바꾸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마을 이장과 보령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주도로 마을 여성들과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산신제에 여성이 참여하도록 하였다.

산신제에서 성차별 문제를 제거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마을회의에서 당주로 여성을 세우는 것에 대해 마을 주민의 반대가 심했다. 탄광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모두 없어졌지만, 탄광의 안전을 위해 지내던 산신제에 여성이 참여하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했다. 그러나 보령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강력한 요청과 끊임없는 설득으로 결국 마을 어르신들의 허락을 얻었다.

다음 문제는 당주를 하려는 여성 지원자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부녀회를 대상으로 성차별 철폐의 필요성을 설득한 끝에 지원자가 나왔고 산신제를 무사히 마치게 되었다. 여성 억압의 상징인 산신제가 양성평등한 문화를 보여주는 첫 사례가 되었다.

〈그림 5-2〉 떡뽕이 인형극단



자료: 뉴스스토리 인터넷 기사(<http://www.news-stor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282>,
검색일: 2021. 10. 28.).

성주4리의 성차별 극복 노력이 대외적으로 결실을 맺은 것은 2016년 충청남도 ‘양성평등혁신 시범마을’로 선정이 되면서 시작됐다. 시범마을로 선정되면서 양성평등 교육 전문가가 방문하여 교육을 진행했는데 농촌 주민이 듣고 이해하기에는 어려워 실제 광부의 어려운 생활과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상과 사건을 중심으로 연극을 기획했다. 추후 연극이 인형극으로 대체되었는데 이로 인해 성주4리의 ‘떡뽕이 인형극단’이 탄생하였다.

떡뽕이 인형극단은 양성평등을 주제로 주민이 직접 대본을 작성하고 직접 만든 대본으로 배우가 되어 공연한다. 이 과정에서 폭력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자책하던 여성이 스스로 문제점을 인식하고 삶을 바꿔나가고 있다.

떡뽕이 인형극단은 2017년부터 다른 지역 순회공연을 시작하여 2020년까지 181회에 걸친 공연을 했으나 현재는 공연이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이다.

3. 성폭력 근절을 위한 지리산 여성회의

성폭력 근절을 위한 지리산 여성회의(이하 지리산여성회의)는 마을 성폭력 사건 피해자 상담과 지원, 사건 해결을 위한 지원, 성평등 및 성폭력 예방 교육 등 마을 내 성폭력 및 성차별을 철폐하고자 활동하는 비상설 협의체이다.

지리산여성회의는 2017년 겨울, 실상사 어린이법회 순례 행사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시작되었다. 실상사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목격자, 마을에서 페미니즘을 공부하던 주민, 성폭력예방교육 전문가, 여성학자 등 10명 내외가 참여해 피해당사자와 실상사 간 중재 역할을 맡았다. 이후 마을에서 벌어진,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성폭력 사례를 공론화하고 논의를 진행시킬 공적 기구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그 결과 2주에 한 번 모여 성폭력 관련 사건 해결, 성차별 관련 주제를 논의하고 토론하자는 약속 아래 지리산여성회의가 탄생하였다.

지리산여성회의는 10명의 느슨한 활동가 연합에 불과했지만, 실상사 사건 피해자의 상담을 지원하고 젠더 감수성 교육을 실시하여 마을 내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였다. 지리산여성회의가 마을 내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는 방식은 크게 2가지로, 사법 절차를 밟거나 공동체적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다. 공동체적 해결은 농촌 마을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방법이다. 작은 마을에서 발생하는 사건 대부분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아는 사람이다. 그러다 보니 사건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묻히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도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힘들다. 지리산여성회의가 두 번째로 개입한 사건이 이러한 사건이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아는 사이고, 여성회의 회원들도 가해자를 모두 알았다. 피해자는 사건이 사법 절차로 확대되기를 원하지 않았다. 지리산여성회의는 피해자의 초기 요청 없이 사건에 개입하였다. 가해자를 만나 문제를 제기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 받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다.

지리산여성회의는 여성농업인으로 구성된 조직은 아니지만, 농촌 지역에서 자

발적으로 모인 자생적 조직이라는 측면에서 시사점이 있다. 지리산여성회의는 성폭력 방지에 초점을 맞추어 활동한다. 지역사회에서 여성농업인의 지위를 논할때 성폭력 관련 주제는 일부에 불과하지만, 지리산여성회의는 농촌 마을의 자발적 여성 모임이라는 점과 여성농업인 지위 향상 문제로 확장이 가능하다.

지역사회, 특히 마을과 같이 가부장적 문화와 성차별이 뿌리 깊은 곳에서 여성이 연대하여 조직을 만들어 활동하는 것은 중요하다. 농촌 지역사회의 성차별 틀을 깨는 일은 한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어렵지만 마을 내부자가 모여 조직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마을에서 쉽게 비난하기 어렵다. 여성의 조직화와 연대가 필요한 이유다. 지리산여성회의는 마을 내에서 공론화되지 않던 문제를 공동체적 관점에서 제기하면서 문제를 해결한 사례이다.

지리산여성회의가 활동하는 산내는 귀농·귀촌가구가 200가구를 넘어 다양한 배경의 활동가와 전문가가 모일 수 있는 곳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농촌 마을은 다양한 배경의 여성이 활동하기 어려운 곳이다.

그러나 지리산여성회의는 다른 조직이나 지역과의 연대를 통해 여성이 자발적으로 모이고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2019년에 지리산여성회의는 네트워킹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주변 지역에서 활동하는 여성주의 활동가를 중심으로 여성주의 활동가의 연대나 활동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리였다. 그러한 자리는 성평등한 마을만들기의 선진적 사례인 지리산여성회에 다른 단체가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되었고, 여성 3명이라도 모이면 마을에서 자생하는 조직으로서 활동이 가능하다는 데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자생 가능한 마을 내 작은 조직이 연대하고 교류한다면 민우회와 같이 전국적 조직이나 강력한 힘을 가진 조직은 아니지만 마을에서 효과적으로 성차별을 철폐하고 지역사회 내 여성의 지위 향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리산여성회의는 성폭력에 대응뿐만 아니라 마을 내 성차별 문제를 드러내고 고민해볼 기회를 제공하였다. 지리산여성회의의 성폭력에 대한 대응은 관련 사건이 있고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지원한다. 그러나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에만 대응해서는 마을 내 성차별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어렵다. 일상생활에

서 발생하는 성차별을 드러내고 이것이 문제라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었다.

지리산여성회의는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을 계기로 1인 시위를 기획하였다. 2020년 3월 24일부터 5월 23일까지 1인 시위를 진행했는데 총 27명이 참여했다. 1인 시위는 남원 시내가 아니라 산내라는 작은 마을에서 시작되었는데 이는 농촌 마을로서 가부장적 성차별 문화가 굳건한 지역에서 성차별적 문화에 균열을 내겠다는 의도였다. 예상보다 많은 사람이 참여했고 함께하는 사람들과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자연스러운 네트워킹이 진행되었다.

4. 시사점

제주의 성평등마을규약은 여성농업인의 대표성을 강화시키는 방안으로서 마을규약의 개선 필요성을 환기한다. 마을규약은 마을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마을 주민의 정의와 범위, 마을의 의사결정구조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치규정으로서 마을 총회 참여 자격, 선거권 및 피선거권 등 의사결정과정 참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담고 있다. 그러나 마을규약이 없는 마을도 상당수 존재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마을규약에서는 성인지적 관점이 결여되어 있다.

제주의 성평등 마을규약 제정 시도는 마을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마을 개발위원회 등의 마을 조직 구성에서 성별과 연령을 고르게 구성하고 1가구 1표제, 공동체 노동의 공동 책임 등을 명시함으로써 성평등성이 마을 운영 방식에 구현되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제주에서 논의된 성평등마을규약은 타 지역에서 성평등 마을규약을 제정할 때 참고할 만한 표준을 제시하였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해당 사례는 여성 리더들의 연대가 형성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은 개인이나 일개 단체가 대응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따

라서 제주여민회와 전여농제주연합, 부녀회가 연대한 것처럼 마을 내 여성뿐만 아니라 마을과 마을의 네트워크, 여성 단체 간 연대를 통해서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떡뽕이 인형극단의 사례는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한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측면에서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 번째는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한 노력이 내부적으로 촉발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해당 사례의 성과는 마을 주민이 주체가 되어 성평등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스스로 인식을 개선하였다는 점이다. 양성평등을 주제로, 주민이 직접 대본을 작성하고 배우가 되어 공연함으로써 스스로 성평등 교육 강사라는 자부심을 고양시켰다는 면에서 양성평등 의식의 확산 전략으로서 주효하였다.

두 번째, 떡뽕이 인형극단의 사례는 민간에서 성공한 성평등 관련 사업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 간의 연계, 공공의 지원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떡뽕이 인형극단의 활동은 코로나19라는 외부 환경 외에도 리더십의 한계로 인해 중단되었다. 소수의 리더가 극단 운영을 지속하기에는 여건이 좋지 않았던 탓이다. 거기다 떡뽕이 인형극단 참가자에 따르면 지역에서는 성평등 인식 제고를 위한 공적 지원체계나 문화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것이 현장에서의 의견이다. 성평등 인식 제고를 위한 문화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정도의 성인지 감수성과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례는 민간에서 시작된 성평등 노력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공적 부문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떡뽕이 인형극단이 단순 취미 모임 수준을 넘어서서 조직화될 필요가 있으며, 결성된 조직에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하여 공적 인 틀 속에서 성평등 확산 활동이 확대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해당 사례는 지자체 공무원의 성평등 인식 제고, 성평등 확산 노력을 위한 지자체 인센티브 제공 등 보다 지자체의 변화를 유도하도록 법령이나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세 번째 시사점은 농촌 지역 현실에 맞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농촌 지역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서는 급진적 방식보다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

하다. 도시에 적합한 양성평등 교육이나 운동 방식은 농촌에서 남성 기득권과 성차별에 익숙한 여성의 반발을 일으키기 쉽다. 따라서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성역할을 구분하고, 이를 기반으로 양성평등의 실현에 관한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농촌사회에 적합할 수 있다.

지리산여성회의는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마을 내에서, 여성이 주체가 되어 해결한 사례이다. 지리산여성회의는 공동체 내에서 소통과 자발성에 기초한 공동체적 대응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또한 지리산여성회의는 자생적 여성조직의 중요성과 지역과 세대를 아우르는 연대를 통해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준다.

제6장

지역사회에서 여성농업인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 과제

지역사회에서 여성농업인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 과제

1. 여성농업인 지위 현황과 문제점

이 연구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지위 실태에 대해서 지역사회의 범주에서 살펴보았다. 마을 이장, 농업인 단체 관계자, 개인 농업인, 활동가 등 다양한 주체와의 면접과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여성농업인이 지역사회에서 맡은 역할에 걸맞은 지위를 누리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며, 농촌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 및 여성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했던 사례들을 검토하고 일본에서의 여성농업인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한 노력의 방향성과 과제를 찾고자 하였다.

여성의 대표성과 관련된 지표를 보면 일견 여성농업인의 지위가 과거에 비해 나아진 것처럼 보인다. 경영주로 등록한 여성의 비율이 증가하였고 여성 조합원의 비율도 30%를 초과하였다. 농협 내 여성 임원 비율도 늘어났다. 그러나 농촌 지역에서 여성의 비중을 고려할 때 현재의 수준으로는 대표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수치상의 변화가 여성과 남성 간 동등성 확보의 결과라기보다는 남성 경영주의 사망에 따라 여성 가구원이 경영주 및 조합원 지위를 물려받

은 사례도 많아 일종의 착시현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성의 대표성을 제약하는 외부적 배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가 노력하였으나 여성에 대한 외부적 배제를 해결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으로 여성농업인의 지위에 변화를 가져오기 어려웠다. 여성 스스로가 전문적인 식견, 의견 개진 능력 부족을 느껴 의사 표시에 소극적인 경우도 있고 실제 여성의 능력과 상관없이 여성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편견이 작용하여 여성의 의견이 무시되는 분위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부적 배제는 남녀 모두 오랫동안 가부장적 사고방식에 길들여진 결과로 판단된다.

지역사회의 유지에 필요한 재생산 활동은 주로 돌봄, 가사노동과 유사한 형태를 가지는데 그러다 보니 남녀 모두 재생산 활동을 여성과 남성이 공동으로 담당해야 할 것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여성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짙었다. 마을과 관련된 여러 활동에서 여성의 비중이 작지 않지만 행정기관과의 대관 업무나 전체 행사의 기획은 남성의 역할이고 이를 실행에 옮기고 조력하는 역할은 여성의 역할로 인식되고 있다. 가정 내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여전히 농촌사회에서 지배적인 가운데, 지역사회로 확장된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성별 분업에 대한 인식이 고착화되어 있는 현실에서 여성의 재생산 노동에 대한 보상은 불필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여성농업인의 노동 부담이 과중함에도 불구하고 마을 공동밥상, 돌봄 활동은 여성농업인에게 돌아가고 있으나 마을에 대한 봉사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마을 유지를 위한 모든 활동을 경제적 가치로만 평가할 수는 없으나 여성농업인이 투입한 시간과 노력에 대한 인정을 공식화하는 방편으로서 보상 체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성농업인의 지위는 인권 보호와도 연결된다. 여성 인권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개별 인격체에 대한 존중을 의미하는 것이며, 여성농업인의 지위가 남성과 동등할 때에 여성에 대한 존중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농촌 지역사회에서 여성 인권에 대한 침해는 주로 성적 침해의 형태로 많이 나타난다. 여성에 대한 성폭력·성희롱과 사생활 침해, 정상가족 강요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특히 청년 여성농업인이 이러한 성적 침해 문제에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농촌 지역의 거주 공

간이 개방성이 높은 데다 원격지에 산재되어 있는 특성을 갖고 있어 도시에서 거주하다 농촌으로 이주한 청년 여성농업인이 성범죄를 우려하는 경우도 있다.

여성농업인의 인권 침해는 다만 여성에 대한 남성의 침해뿐만 아니라 여성 간 인권 침해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는 세대 간 가치관과 문화 차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고 이전 세대에서 답습되어 오던 성차별적인 시각이 젊은 세대에게도 계속해서 강요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이다.

농촌 마을, 읍·면, 시·군의 범주에서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는 때로는 공공의 역할이 때로는 민간의 역할이 필요하다.

정부는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해 성 주류화를 꾸준히 추진하고 대표성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과 여성 성폭력 피해 대응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현장에서의 정책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정부 정책은 하방식 개혁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에 여성농업인의 삶의 현장 곳곳에서 나타나는 성차별 관행까지 바꾸기는 어렵다. 또한 중앙 차원에서 추진하는 성 주류화 정책은 중앙과 지자체 간 거버넌스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으면 지역사회 현장까지 연결되기 어렵다. 반대로 현장에서의 피드백을 통해 정책을 수정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도 어렵다. 무엇보다도 정책을 집행하고 기획하는 공무원이 성평등 의식을 갖지 않으면 성 주류화 정책의 성공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중앙-지방-민간의 협조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지자체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도 높지 않다. 또한 지자체가 여성농업인 육성 조례를 제정하고는 있으나 형식적이고 선언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어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가부장적 문화가 있는 일본에서의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 정책 사례를 살펴보았다. 일본에서는 농촌에서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해 대표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 농촌의 의식 개혁, 여성농업인의 그룹 활동 활성화, 지역의 선도 여성농업인 육성, 여성농업인 관련 플랫폼 강화, 농업여자 프로젝트, 여성농업사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었다. 일본 내에서의 여성농업인 지위 향상 정책은 인권 측면에서의 정책 대응에서 인재 육성 관점으로 옮겨

가고 있는데 이는 여성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 역량이 강화될 때 지역사회에서 지위가 향상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정책을 통한 개선 방식은 하방식이기 때문에 아래에서 위로의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민간에서 농촌 지역의 성평등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이 자생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이 연구에서는 그러한 예로서 제주도의 성평등 마을규약과 지리산여성회의, 덕뽕이 인형극단의 태동 배경과 경과,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민간의 사례들은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해 여성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서 실천 과제들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점, 여성의 개인 및 단체 간 연대를 통해 집단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 민간에서 시작된 활동이 보다 조직화되어 공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지속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2.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 과제

2.1. 마을 단위 대응 방안

지역사회에서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한 우리의 대응은 다음과 같은 방향성하에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구성원 간 연대와 소통의 확대를 통해 공동체적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마을 내 민주적 절차가 보다 확산되고 정립되어야 한다. 지역사회 내 성차별은 근본적으로 여성의 문제만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문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농촌 지역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성숙해야만 여성농업인의 지위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공동체적 대응이 중요한 이유는 여성농업인의 성차별과 지위불일치는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오랫동안 뿌리박힌 사고방식과 사회 구조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농업인은 세대별로 지역사회 내 지위가 다르고 성차별에 대한 인식

수준도 다르다. 성차별에 대항하는 여성농업인을 고령 여성농업인이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못하고 오히려 성차별을 부추기는 경우도 있다. 여성농업인 사이의 간극을 줄이고 적극적 조치의 사각지대를 없애려면 여성농업인의 연대가 필요하다.

지리산여성회의 사례에서 보듯이 여성농업인이 지역사회에서 겪는 문제들을 공론화하고 피해자의 사과를 받는 노력 등 여성농업인이 겪는 피해를 은폐하기보다 공개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소통의 채널을 확대하고 이러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열린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마을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마을 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마을규약을 제정하여 주민의 권한과 의무, 운영 방식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민주적 절차를 통해 마을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행정기관이나 중간지원조직과의 협업도 필요하다.

마을규약을 만들되 성평등 관점이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마을규약은 규약의 목적, 주민 권리, 주민 의무, 의결권 및 선거권, 마을 임원 조직 조항에 성평등 및 여성의 참여 권리 보장,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개발위원회 등에서의 여성 참여율 확대, 1인1표제 실시 등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여성의 주체적 참여가 필요하다.

떡뽕이 인형극단이나 제주 성평등마을규약과 같은 사례에서 보듯이 이해당사자인 구성원 특히 여성이 주축이 되어서 남성 구성원을 설득하고 스스로를 계몽시켜 나가는 것은 변화의 동력을 내재화하여 성차별을 타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는 힘이 된다.

셋째, 민간에서 시작된 대응 노력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보다 조직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떡뽕이 인형극단의 사례는 일부 민간 리더십에 의지하여 양성평등 의식을 개선하는 것이 지속가능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민간에서의 시도를 행정기관이 인력·재정 측면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행정기관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과 같은 보다 공식화된 조직을 결성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2.2. 정책 대응 방안

2.2.1. 여성농업인의 대표성 강화

여성농업인의 지위가 향상되기 위해서는 여성이 자신의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농업인의 대표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동경영주 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동경영주의 권한과 자격요건에 대하여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농어업경영체법」에 공동 경영주가 경영주와 동일한 자격을 가지고 경영주로서 각종 정책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농어업경영체법」에는 정책 대상이 농업인으로만 언급되어 있어 종사상 지위를 구분하는 것이 사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선 농업인의 유형을 경영주와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구분하고 이후에 경영주의 범위 안에 공동경영주를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

농협 내에서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기 위해서는 여성의 대표성과 참여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특히 임원 중 여성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 실질적인 발언권 확보에 중요한 전략이라고 판단된다. 현재는 여성 조합원이 30% 이상을 차지하는 조합에서만 여성 이사를 의무적으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성 조합원 구성 기준을 지금보다 낮추어 보다 많은 조합에서 여성 이사가 선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컨대, 단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전체 조합원 중 여성 비율에 비례하여 여성 임원을 뽑도록 한다면 보다 여성 이사 선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면, 여성 조합원 비율이 30%인 조합에서는 전체 이사 수의 30%를 여성으로 선임해야 하므로 선임되는 이사의 수가 늘어날 것이며 여성 조합원 25%인 조합에서는 과거에 여성 이사가 선임 되지 않았으나 새로운 조합에서는 여성 임원 비율을 25%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 외에도 조합 평가항목에 여성의 참여도를 포함하도록 한다면 농협이 자발적으로 여성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더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그러나 여성 임원의 피선임 기회를 높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실제로 농협 등 조합의 운영과 관련된 논의와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관련 지식이나 경험, 의사소통 능력, 리더십 등의 역량이 요구된다. 따라서 여성농업인의 리더십 강화를 위한 교육의 양적·질적 확대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리더십 강화를 위한 커리큘럼 개발이 필요하다. 농기계 등 설비 작동법을 교육하거나 회계/마케팅 등 전문 경영인으로서 필요한 소양이나 기술 교육, 리더십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²⁶⁾

커리큘럼 확대와 함께 여성농업인의 교육 참여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여성농업인의 관점에서 교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안석 외(2019: 70)에 따르면 여성농업인은 교육을 받는 동안 농사나 가사를 도와줄 인력을 지원받거나 교육 장소의 접근성이 개선되고 농한기 및 저녁시간에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낮 시간 동안 가사노동과 경제활동을 하느라 교육에 참여할 시간이 부족한 여성농업인을 위하여 교육시간을 저녁시간대에 배치하고 현장교육뿐만 아니라 온라인 교육을 확대하여 가능한 한 많은 여성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이나 교육 방식도 여성친화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남성과 여성 간의 소통 방식의 차이나 성차별적 인식으로 인해 여성이 수동적으로 교육을 받는 형식이 아니라 여성이 조금 더 편하게 교육 내용이나 방식에 관해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교육의 주체로서 역할을 하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여성 강사를 배치하고 여성농업인끼리의 소그룹 활동을 장려하는 등 환경적 측면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다.

시·군 또는 읍·면 단위에서 여성의 정치 참여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각종 위원회에서 여성의 비율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 지자체에서 지도층의 역할을 할 수 있는

26) 안석 외(2019: 70)에 따르면 희망하는 비율이 높으나 교육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영역이 중대형 농기계 작동법, 시설자동화 설비 운전, 농산물 가공 기술, 농업 유통, 판매, 마케팅 교육, 농촌관광 사업 운영, 전문 농업 경영자 교육, 부기/회계 등 재무관리 기법, 부업/자격증 취득이었다.

여성을 양성하고자 한다면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성농업사 제도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에서 마을 내에서 농업·생활·문화 등의 영역에서 타 구성원보다 뛰어난 여성인력을 선발하여 여성 선도농업인(가칭)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지역 내에서의 위상을 높이고 각종 위원회 및 마을회의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2.2.2. 지역사회 비공식 노동의 공식화

앞서 실태조사에서 나타났듯이 여성농업인은 지역사회에서 돌봄, 마을 개발 등 다양한 사업에서 역할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당연시하거나 봉사의 개념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존재한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적 재생산 활동을 단지 봉사로 폄하하기에는 여성농업인의 노동 부담이 과중하고 변화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따라서 지역 내 재생산 활동에 대해서는 개인의 희생정신에 기대기보다 활동의 조직화와 제도화가 필요하다.

최근 관심이 쏠리고 있는 사회적 경제조직은 여성의 재생산 노동을 공식화하는 방편으로서 활용 가능성이 높다. 사회적 경제조직은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및 자활센터, 마을기업 등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농촌 사회적 경제 조직은 농축산물 생산, 농업 관련 산업, 돌봄·의료·교육·문화 서비스 등의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조직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 농촌에 위치한 사회적 기업은 2007년에 5개소에서 2020년에 708개로 늘었으며, 협동조합은 2012년 11개소에서 2020년 4,804개로 늘었다(김정섭 외 2021).

사회적 경제조직이 활동하는 영역 중 돌봄, 교육, 문화 서비스는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던 여성의 재생산 활동의 범위와 크게 다르지 않아 재생산 노동을 공식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기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여성농업인을 주축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활성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노(老)-노(老) 케어, 공동보육, 로컬푸드, 식생활 교육, 문화활동 등 비공식화되어 있는 활동 영역을 공식화하고, 사회적 경제조직을 결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사회적 경제조직을 통해 여성의 노동을 공식화하는 노력 중에서도 여전히 여성이 주변부적 역할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적 영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활동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여성농업인 출신의 활동가가 사회적 경제 조직의 대표나 기획자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경험을 축적하여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고 해당 조직에서도 보다 여성 친화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농번기 공동급식사업의 경우에는 지원 단가의 현실화와 마을 상황에 맞는 지원 방식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공동급식이 여성농업인의 추가적 부담이 되지 않도록 외부업체를 활용하거나 지역 내 사회적 경제조직과의 연계를 높이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2.3. 성평등 교육 확대

지역사회에서 뿌리 깊은 가부장적 사고방식으로부터 탈피하여 성평등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식의 개선과 성인지 감수성의 개발이 중요하다. 그러한 측면에서 성평등 교육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면접 및 설문조사 결과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농촌 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평등 교육은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마을 구성원에 대한 성평등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때 성평등 교육은 여성의 관점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구성하고 강사를 양성하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성평등 교육은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에게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남성에 비해 여성의 성평등 교육 이수 경험이 더 부족하고, 여성 간에도 성차별적 사고방식과 생활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평등 교육은 여성과 남성 모두를 대상으로 하되 과정에 따라 여성 또는 남성을 분리하여 진행하거나 여성과 남성에게 동시에 교육하는 식의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성평등 교육은 성별 간, 세대 간 소통의 확대에 주안점을 두어 교육 방식과 내용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강사가 일방적으로 교육 내용을 전달하기보다는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호 간의 토론을 유도함으로써 서로 간의 이해를 넓힐 수 있을 것이다.

성평등 교육이 효과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이장이나 정책 관련 의사결정과 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에게 성평등 교육을 의무화하거나 성평등 교육 수료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지자체 여성농업인 육성 심의위원은 의무적으로 성평등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현재 지자체 조례는 여성농업인 육성 심의위원의 자격을 여성농업인단체 추천인 또는 여성농업인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성평등 교육을 받은 자’라는 단서조항을 추가하도록 해야 한다.

2.2.4. 안전한 농촌 만들기

여성에게 이루어지는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CCTV를 설치하고 순찰을 강화하는 등의 공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일차적인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농촌으로 이주하는 여성농업인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임시 주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그러나 거주공간이 산재되어 있는 농촌 지역의 특성상 공적 개입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성폭력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마을 방범대를 조직하여 순찰을 돌거나 마을 내 성폭력·성희롱 고충 상담 창구를 설치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근본적으로는 성폭력·성희롱 성희롱과 성폭력의 유형과 유해성, 방지를 위한 의식 개선이 필요하며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성희롱 예방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농촌형 성평등 강사의 육성을 더욱 지원하고 마을, 읍·면 단위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폭력예방교육을 신청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²⁷⁾

2.2.5. 지자체의 여성농업인 정책 추진체계 개선

지역사회에서 여성농업인의 지위가 향상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중앙-지방 간의 유기적 협조관계 형성이 미비한 점, 전담팀 또는 전담인력 부족, 담당 공무원의 성평등 인식 부족 등 지자체의 상황은 여성농업인 정책이 힘있게 추진되기 어려운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자체의 여성농업인 정책 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개정되어야 한다. 현재의 조례는 여성농업인이 지역사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역할과 그에 따른 인정의 개념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성농업인의 정책 참여 확대, 정책활동에 대한 지원, 성평등 인식 개선을 정책 과제로서 제시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또한 전담팀 설치를 명문화하여 지자체가 여성농업인 전담인력 확충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는 전담인력을 확보하거나 전담팀을 구성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지자체의 인력 확보를 장려할 필요가 있으며 담당자에 대한 성평등 교육도 꾸준히 진행해야 한다.

지자체는 마을 내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 등 마을사업을 지원함에 있어 지원 대상 선정 및 평가체계 속에 여성의 참여율, 대표급의 여성 비율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읍·면 또는 시·군 단위에서 민간과 행정기관을 연결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한 활동의 장으로서 여성농업인센터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기존 여성농업인센터의 역할은 취미·교양강좌 운영, 영·유아 보육, 방과 후 아동학습으로 한정되어 있다. 그나마도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사업이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지자체의 사업인식도가 낮아 확대되지 않고 있다. 지자체는 여성농업인센터 설치와 운영을 적극 지원하여 여성농업인센

27)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은 10명 이상의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성폭력, 가정폭력, 성 인권에 관해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수강을 원하는 일반국민은 누구나 전화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5시간가량의 강의를 이루어진다(여성가족부 2021).

터가 가정폭력 및 성폭력 관련 상담, 여성농업인 정책 문의,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여성농업인센터는 문화·취미·학습·지역 내 네트워크 형성 등을 위한 휴식공간으로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과제

이 연구는 여성농업인의 지위 문제를 지역사회로 한정하여 보다 미시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주로 인터뷰와 설문조사에 의존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지위를 나타내는 정량적 지표보다는 주관적 인식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결론을 도출했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특히 마을 단위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과 위상을 나타내는 정량 지표 개발이 미흡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에서 여성의 참여율, 대표성, 기여에 대한 보상, 인권 보호 측면에서 다양한 지표를 개발하여 동 지표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정부와 민간 부문의 성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연구는 여성농업인이 점점 더 다양한 집단으로 분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청년 여성농업인, 도시 은퇴자, 다문화 여성, 기존 농촌 거주자 등 농촌 지역사회의 구성원이 다양해짐과 동시에 농촌 지역사회에서 여성농업인의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 각 집단은 성평등 문제에 있어서 정책적 요구 수준이나 내용이 다르지만 농촌 지역사회에서의 성평등은 여성농업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농촌 지역의 유지를 위해서는 각 집단의 공동 노력이 중요하며 지역사회에서의 여성의 역할이 여성농업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 통합적인 관점에서 연구 대상을 여성농업인뿐만 아니라 농촌 여성으로 확대하여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 연구의 또 다른 한계는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한 대안 모색에 있어서 민간-지자체-중앙정부의 역할과 개선 과제를 개별 주체별로 제시하는 데 그치고

있으며, 세 부문에 대한 통합적 정책 제안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후속연구에서는 여성농업인 정책의 거버넌스 구축 방안과 함께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이고도 통합적인 정책 패키지를 제안할 필요가 있다.

여성농업인 지위 관련 설문조사 결과

이 연구에서는 농촌 지역사회에서 여성농업인의 지위 실태를 파악하고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는 데 활용하고자 농업인 1,224명(여성농업인 848명, 남성농업인 37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²⁸⁾ 설문응답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부표 1-1〉 응답자 일반 특성

응답자 특성		여성		남성	
		응답 수	비율(%)	응답 수	비율(%)
전체		1,224			
		848	100.0	376	100.0
지역(시/도)	인천/경기	99	11.7	48	12.8
	강원	63	7.4	28	7.4
	충남/대전/세종	112	13.2	50	13.3
	충북	66	7.8	29	7.7
	전북	57	6.7	25	6.6
	전남	111	13.1	47	12.5
	경북/대구	156	18.4	66	17.6
	경남/부산/울산	165	19.5	74	19.7
	제주	19	2.2	9	2.4
	응답자 합계	848	100.0	376	100.0
지역(읍/면)	읍지역	255	30.1	98	26.1
	면지역	593	69.9	278	73.9
	응답자 합계	848	100.0	376	100.0
	응답자 합계	848	100.0	376	100.0
연령대	20~30대	124	14.6	72	19.1
	40대	121	14.3	59	15.7
	50대	174	20.5	82	21.8
	60대	219	25.8	81	21.5
	70대 이상	210	24.8	82	21.8
	응답자 합계	848	100.0	376	100.0

28) 이 설문조사에서는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나 규모에 관계 없이 실제로 영농을 하고 있는 사람을 모두 농업인으로 인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계속)

응답자 특성		여성		남성	
		응답 수	비율(%)	응답 수	비율(%)
학력	초졸 이하	235	27.7	69	18.4
	중졸	148	17.5	42	11.2
	고졸	337	39.7	154	41.0
	대졸 이상	119	14.0	111	29.5
	모름/무응답	9	1.1	0	0.0
	응답자 합계	848	100.0	376	100.0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694	81.8	326	86.7
	미혼	15	1.8	26	6.9
	사별/이혼	138	16.3	23	6.1
	모름/무응답	1	0.1	1	0.3
	응답자 합계	848	100.0	376	100.0
주작목	쌀	262	30.9	152	40.4
	채소	426	50.2	136	36.2
	과일	118	13.9	69	18.4
	축산	42	5.0	17	4.5
	기타	0	0.0	2	0.5
	응답자 합계	848	100.0	376	100.0
가구원	배우자	693	81.7	316	84.0
	부모	82	9.7	75	19.9
	시부모, 빙부모	30	3.5	5	1.3
	자녀	328	38.7	166	44.1
	기타	112	13.2	23	6.1
	응답자 합계	848	100.0	376	100.0
연평균 소득	500만 원 이하	168	19.8	65	17.3
	501만~1,000만 원	84	9.9	36	9.6
	1,001만~2,000만 원	93	11.0	32	8.5
	2,001만~3,000만 원	118	13.9	54	14.4
	3,001만~4,000만 원	109	12.9	68	18.1
	4,001만~5,000만 원	105	12.4	53	14.1
	5,000만 원 초과	105	12.4	47	12.5
	모름/무응답	66	7.8	21	5.6
	응답자 합계	848	100.0	376	100.0

자료: 자체 설문조사 결과.

〈부표 1-2〉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지위(여성 대상 설문)

구분	응답 수	비율(%)
경영주	144	17.0
공동경영주	138	16.3
경영주 외 농업인	327	38.6
미등록	239	28.2
응답자 합계	848	100.0

자료: 자체 설문조사 결과.

〈부표 1-3〉 마을 내 성평등 인식(여성 대상 설문)

구분	응답 수	비율(%)
전혀 아니다	12	1.4
대체로 아니다	111	13.1
보통	365	43.0
대체로 그렇다	307	36.2
매우 그렇다	33	3.9
모름/무응답	20	2.4
응답자 합계	848	100.0

자료: 자체 설문조사 결과.

〈부표 1-4〉 마을의 중요한 일 결정 시 회의 참여 주체(여성 대상 설문)

구분	응답 수	비율(%)
남성이 주로 참여	259	30.5
여성이 주로 참여	60	7.1
남성 여성 함께 참여	503	59.3
모름/무응답	26	3.1
합계	848	100.0

자료: 자체 설문조사 결과.

〈부표 1-5〉 마을의 중요한 일 결정 시 여성 의견 존중 여부(여성 대상 설문)

구분	응답 수	비율(%)
아니오	208	24.5
예	640	75.5
응답자 합계	848	100.0

자료: 자체 설문조사 결과.

〈부표 1-6〉 여성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주된 이유(여성 대상 설문)

구분	응답 수	비율(%)
여성이 의견을 이야기할 기회나 방법이 없어서	49	23.6
여성이 의견을 제시해도 무시해서	31	14.9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도 여성 스스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서	48	23.1
여성은 전문성이 낮다고 생각해서	35	16.8
여성이 나서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문화 때문에	21	10.1
기타	9	4.3
모름/무응답	15	7.2
합계	208	100.0

자료: 자체 설문조사 결과.

〈부표 1-7〉 가입한 지역농협 및 축협 여성 조합원 의견 제시 시 의사결정 반영 여부(여성 대상 설문)

구분	응답 수	비율(%)
대부분 반영됨	136	31.0
일부 반영됨	212	48.3
전혀 반영되지 않음	22	5.0
기타	2	0.5
모름/무응답	67	15.3
응답자 합계	439	100.0

자료: 자체 설문조사 결과.

〈부표 1-8〉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여성이 의견 제시 시 정책 반영 여부(여성 대상 설문)

구분	응답 수	비율(%)
대부분 반영됨	86	42.6
일부만 반영됨	101	50.0
전혀 반영되지 않음	4	2.0
기타	2	1.0
모름/무응답	9	4.5
응답자 합계	202	100.0

자료: 자체 설문조사 결과.

〈부표 1-9〉 현재 참여하고 있는 지역사회 단체(여성 대상 설문)

구분	응답 수	비율(%)
주민자치회, 마을개발위원회 등 주민 자치 조직	319	37.6
여성농업인 단체, 농업인단체	116	13.7
익용소방대, 이미용 봉사단체 등 봉사활동 단체	61	7.2
로컬 푸드, 협동조합, 마을 기업 등 사회적 경제 조직	69	8.1
기타	1	0.1
참여하지 않음	429	50.6
응답자 합계	848	100.0

주: 중복응답 허용.

자료: 자체 설문조사 결과.

〈부표 1-10〉 지역사회 단체 가입하지 않은 주된 이유(여성 대상 설문)

구분	응답 수	비율(%)
농업 등 생업으로 바빠 단체 활동을 할 시간이 없어서	128	29.8
가족 구성원의 눈치를 봐야 해서	13	3.0
지역사회 내에 단체 활동에 대한 편견이 있어서	15	3.5
지역사회 단체 자체가 별로 없어서	24	5.6
단체 활동에서 여성들은 차별을 받아서	8	1.9
단체 활동 자체에 관심이 없어서	69	16.1
나이 때문에 활발한 활동이 어려워서	115	26.8
단체 활동에 대한 불만이 많아서	1	0.2
기타	49	11.4
모름/무응답	7	1.6
응답자 합계	429	100.0

자료: 자체 설문조사 결과.

일본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 정책과 시사점²⁹⁾

1. 일본의 여성농업인 정책 현황

1.1. 일본 여성농업인의 역할과 위상의 시대적 변화

일본의 농업, 농촌에 있어 여성의 역할과 위상은 시대와 함께 크게 변화해 왔다. 아오야마 히로코(2017)는 제2차 세계대전 후부터 1991년까지를 ‘자립기’, 1992년부터 2009년까지를 ‘성장기’, 2010년부터 현재를 ‘전환기’로 규정하고 시대별 농촌 여성의 위상을 정리하였다.

자립기는 현재 여성농업인이 활약하는 기초를 닦은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초 조성에 큰 역할을 한 것이 ‘생활개선 실행그룹’이다. 「농업개량보급법」(1948년)의 시행에 따라 전국 각지에 생활개선 실행그룹이 형성되었고, ‘생활개량보급원’의 지도 및 지원을 받으면서 여성농업인은 농산물 가공이나 농산물 직매 등의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생활개량보급원이라는 명칭은 1991년에 폐지되어 ‘농업개량보급원’으로 통합되었다. 이는 생활개량 실행그룹의 활동이 정착되었고 여성의 자립이나 지위 향상이라는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하는 정부의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성장기에 본격화된 농촌 여성의 창업 활동은 여성 자신의 자립은 물론 지역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여성농업인의 창업 활동으로 농업은 생산뿐 아니라 가

29) 이 원고는 한울사회과학연구소 이영자 박사에게 위탁하여 작성되었다.

공, 유통, 판매, 소비자 교류 등 다방면에 걸친 다각적인 산업으로 인식되었다. 농업의 다각화는 ‘6차 산업화’라는 개념으로 정리되어 정부의 중요 정책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다. 농업의 개념을 크게 바꾸었다는 점에서 여성농업인이 꽃피운 이노베이션이라고 볼 수 있다.

2010년 이후를 전환기로 구분한 것은 농림수산성이 같은 해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림어업자 등에 의한 신사업창출 및 지역 농림수산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통칭 6차 산업화법)을 제정했기 때문이다. 농림수산성은 6차 산업화의 유형을 가공, 직매, 레스토랑, 수출 및 이들의 조합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자립기 시대부터 여성농업인이 주체적으로 이끌어 온 활동이 원점이 된 것이다. 여성농업인의 활동으로 발단이 된 6차 산업화가 중요 정책이 되었다는 것은 여성농업인의 활동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아오야마 히로코 2017: 23-25).

〈부표 2-1〉 여성농업인의 역할과 위상의 시대적 변화

구분	자립기	성장기	전환기
시대구분	제2차 세계대전~1991년	1992~2009년	2010년 이후
여성 활약 관련 움직임	- 생활개선 실행그룹에 의한 활동 - 창업 활동을 위한 기초 형성	- 농업 창업 건수 증가 - 여성농업인 조직 탄생 1994년 이나가 히로인즈 1995년 전국여성농업 경영자 회의 2005 야마토 린린 어그리넷	- 여성농업인과 기업 연계를 목적으로 한 조직 탄생 2013년 농업여자 프로젝트 2014년 여성 미래농업 창조 연구회 - 여성농업인에 의한 소셜 비즈니스 대두 - 농업의 다양성 도입
법적 정비 및 정책 지원	1948년 농업개량보급법 시행 1949년 개량보급 자격 시험 개시 1975년 국제부인 세계대회에서 '세계행동계획' 채택 1991년 생활개량보급원 명칭 폐지	1992년 농산어촌에 관한 중장기 비전 수립 1995년 가족경영협정 본격 추진 1997년 남녀공동참여 사회기본법 시행 1997년 농림수산성 '농촌여성에 의한 창업활동 실태조사' 시작	2010년 6차 산업화법 공포 2014년 여성활약추진법 시행 2015년 농업의 미래를 만드는 여성 활약 경영조직 100선 사업 시작

자료: 아오야마 히로코(2017: 24).

한편, 오우치 마사토시(2017)도 농업정책 내의 여성정책을 크게 세 시기로 구분했는데, 제1기는 생활원리의 시기(1948~1989년), 제2기는 인권원리의 시기(1990~2014년), 제3기는 인재원리의 시기(2015년 이후)로 나누었다. 제2기는 제1기의 생활개선을 위한 생활원리에서 여성의 지위 향상을 목표로 한 인권원리가 도입되었고 2015년 이후 제3기에는 여성 인재원리가 표면으로 부상했다고 주장한다.

일본에서 인권원리가 등장하기 이전에 여성의 농업 취업인구 비율은 매우 높았다. 여성은 겸업에 나선 남성의 틈새를 파고들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지위는 매우 낮았다. 그 간극을 메우는 것이 인권원리였다. 그러나 인권원리가 철저하게 시행되지 못한 탓에 젊은 세대의 취농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따라서 농촌에서 여성 취업자의 사회적 존재감을 높이고 인재를 조달하여 육성하는 일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떠올랐고, 자연스레 인재원리가 등장했다. 존재하는데도 보이지 않는 여성을 ‘가시화’하기 위한 인권원리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여성을 ‘가시화’하기 위한 인재원리, 이와 같은 정책의 차이가 생겨났다(오우치 마사토시 2017: 166).

이처럼 현재 일본의 여성농업인 정책은 생활개선과 지위 향상을 넘어 여성을 농촌과 농업에서 중요한 ‘인재’로 인식하는 방향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다.

1.2. 여성농업인 정책의 근거 법령

일본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목표로 다양한 법률에 여성농업인 관련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여성농업인 정책의 근거가 되는 기본 법령은 「식량, 농업, 농촌기본법」과 「남녀공동참여사회기본법」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각각의 법령에 의거한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정·보완하여 개정하고 있다. 이들 법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식료·농업·농촌기본법(1999년 7월)

일본의 여성농업인 정책의 기본이 되는 법령은 「식료·농업·농촌기본법」³⁰⁾이다. 이 법령의 제2장 기본 시책의 제3절 ‘농업의 지속적 발전에 관한 시책(여성참여 촉진)’ 제36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제36조

남녀가 사회의 대등한 구성원으로서 모든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점에 비추어, 국가는 농업경영에서 여성의 역할을 적정하게 평가하는 동시에 여성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농업경영 및 이와 관련된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환경정비를 추진한다.

②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

일본에서는 1999년 「식료·농업·농촌기본법」³¹⁾이 제정된 후, 약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정·보완하여 개정하고 있다. 2020년 3월에 각의에서 결정된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의 ‘제1 식료, 농업 및 농촌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방침’과 ‘제3 식료, 농업 및 농촌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강구해야 할 정책’ 부분에 농촌 여성 관련 내용이 등장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 식료, 농업 및 농촌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방침]

1. 지금까지의 정책 평가 및 식료·농업·농촌을 둘러싼 정세 변화와 과제

- (3) 농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인재 육성·확보와 생산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 전개 큰 폭의 농업인 감소 등으로 농업의 지속성이 위협받는 지역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 농업이 성장산업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중략) 신규 취농 촉진, 여성의 경영·사회 참가, 고령자·장애인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인재 확보, 새로

30) 일본정부 법령검색 홈페이지(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411AC0000000106_20181022_430AC00000000062, 검색일: 2021. 7. 25.).

31) 농림수산성 홈페이지(<https://www.maff.go.jp>, 검색일: 2021. 7. 25.).

운 농업지원 서비스의 정착 등을 추진하여 농업현장을 지탱하는 다양한 인재나 주체의 활약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3 식료, 농업 및 농촌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강구해야 할 정책]

2.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관한 정책

(1) 강력하고 지속가능한 농업구조 실현을 위한 인재 육성·확보

② 경영 계승 및 신규 취농, 인재 육성·확보 등

라. 여성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 정비

농업이나 지역에 인재를 유입하고 농업을 발전시키는 한편, 농업경영에 있어 여성 참가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인정농업인의 경영개선계획 신청 시 공동 신청이나 보조사업 등의 활용을 적극 추진한다. 또한, 지역농업 방침 수립에 여성 참여를 추진하기 위해 지역을 선도할 수 있는 여성농업인을 육성하고, 농업위원이나 농협 임원에 대한 여성 임용 등을 한층 더 추진하는 것은 물론 전국의 여성 그룹 간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한다. 그리고 ‘농업여자 프로젝트’와 기업 및 교육기관의 연계 강화, 지역 활동 추진으로 여성농업인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정비한다. 또한 이러한 활동을 홍보하여 젊은 여성 신규 취업자의 증가로 이어나간다.

(2) 농업 현장을 지탱하는 다양한 인재나 주체의 활약

③ 다양한 인재가 활약할 수 있는 농업의 ‘근로 방식 개혁’ 추진

(전략) 농업 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른 산업에 뒤처지지 않는 일 하기 쉬운 환경을 정비해, 취직 빙하기 세대를 포함한 젊은이, 여성, 다른 산업을 퇴직한 인재, 고령자, 장애인, 생활 곤궁자 등 다양한 인재를 확보하고, 각각이 지닌 지식, 경험, 능력 등의 강점을 활용하면서 농업경영조직이나 지역을 지탱할 수 있는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중략) 가족경영협정 체결에 의한 취업 조건 정비, 농업복지와 연계 추진 등 모두가 보람 있고 일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를 추진한다.

(3) 농업을 이끌어 나갈 인재 등에 농지의 집적·집약화를 통한 농지 확보

① 농업을 이끌어 나갈 인재에게 농지의 집적·집약 가속화

가. 사람·농지 플랜의 실질화 추진

농업 담당 인재에 농지를 집적·집약화(중략) 사람·농지 플랜의 실질화를 추진한다. 또한, 지역 방침 등 소통과정에 여성농업인의 참여를 촉진한다.

3. 농촌 진흥에 관한 정책

(3) 농촌을 지탱하는 새로운 움직임과 활력 창출

③ 다면적 기능에 관한 국민의 이해 촉진 등

농업의 다면적 기능에 관한 국민의 이해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중략) 지역의 젊은 이나 여성의 발상, 농업 이외의 분야의 새로운 시점을 통해 농촌의 매력을 발굴하고, 연마하고, 홍보를 촉진하고(중략) 국민에 대한 이해 촉진·보급 등을 도모한다(후략).

③ 제5차 남녀공동참여 기본계획

1999년 6월에 제정된 「남녀공동참여사회기본법」에서 말하는 남녀공동참여사회란 “남녀가 사회의 대등한 구성원으로서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사회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보하고, 이로써 남녀가 균등하게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이익을 향유할 수 있고, 함께 책임을 지는 사회”를 가리킨다. 이 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녀공동참여사회 형성 촉진에 관한 정책 수립과 실시의 책무를 지고, 국민은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남녀공동참여사회 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의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의해 2000년 12월 처음으로 ‘남녀공동참여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기본계획의 중점목표는 각 정책 및 방침 결정에 여성의 참여 확대, 남녀공동참여 시각에 입각한 사회제도 및 관행의 재검토와 의식개혁, 고용 등의 분야에서 남녀의 균등한 기회와 처우 확보, 농산어촌에서의 남녀공동참여 확립, 남녀의 직업생활과 가정 지역생활의 양립 지원, 고령자 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조건의 정비,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여성의 평생건강 지원, 대중매체에서 여성의 인권 존중, 교육학습의 충실 등의 실행 계획이 담겨 있다(박대식·최경은 2008: 32). 이후 약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정·보완해 왔으며 2020년 제5차 계획이 발표되었다.

2020년 12월에 각의에서 결정된 ‘제5차 남녀공동참여 기본계획³²⁾’에서는 농촌의 남녀공동참여를 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제1부 기본 방침’의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32) 내각부 홈페이지(https://www.gender.go.jp/about_danjo/basic_plans/5th/index.html, 검색일: 2021. 7. 25.).

[제1부 기본 방침]

일본의 경제사회 환경이나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그동안 주체적으로 참가해 온 성 평등 관련 다국간 합의를 착실하게 이행해 나간다는 관점에 입각하여 다음의 4가지를 새롭게 지향해야 할 사회의 모습으로 제시하고, 그 실현을 통해 「남녀공동 참여사회기본법」의 목표인 남녀공동참여 사회형성을 촉진한다.

- ① 남녀가 본인의 의사를 기반으로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공정하고 다양성이 풍부한 활력 넘치는 지속가능한 사회
- ② 남녀의 인권이 존중되고 존엄하게 개인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 ③ 일과 생활의 조화를 이루고 남녀가 함께하는 충실한 직업생활, 기타 사회생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
- ④ 모든 분야에서 남녀공동참여·여성 활약이라는 시점을 도입하고, SDGs에서 명시한 포섭적이고 지속가능한 세계 실현과 궤를 함께하는 대처 방안을 마련해 국제사회와 협조하는 사회

[제2부 정책편]

I. 모든 분야에 여성의 참여 확대

〈제3분야 지역에서 남녀공동참여 추진〉

2. 농림수산업의 남녀공동참여 추진

농림수산업의 발전, 농산어촌에 인재를 유입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일하기 쉽고 살기 좋은 농산어촌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여성이 지역의 방침 수립에 참가하여 여성의 목소리를 반영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전원회귀’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가운데 이주나 정주, 지역부흥협력대 등에서 농림수산업이나 농산어촌과의 관계를 지향하는 도시지역 여성이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부모의 농업에 함께 참여하거나 결혼으로 취농하는 것뿐 아니라 고용 취농이나 신규 참여도 나타나는 등 여성의 농림수산업에 대한 관련성이 다양해지고 있어 각각의 형태에 맞는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 등을 바탕으로 여성의 경영 참여를 추진하는 동시에 지역을 이끌어 나갈 여성 농림수산업인을 육성하고, 농산어촌에 관한 방침 수립에 여성의 참여를 추진한다. 또한,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 정비나 육아·돌봄 등의 부담 경감, 고정적인 성별 역할 분담 의식과 이러한 의식에 따른 행동 변화를 위한 대처를 추진한다.

1.3. 농림수산성의 여성농업인 정책 추진 현황

일본의 여성농업인 전담부서는 ‘농림수산성 경영국 취농여성과 여성활력추진실’이다. 2020년에 발표한 『농림수산성 연보』에 따르면, 2019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1년 동안 여성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에 약 79백만 엔의 예산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보에서는 “농업취업 인구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은 농업이나 지역 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6차 산업화의 담당자로서 활약이 크게 기대되므로 그들의 능력 발휘를 더욱 촉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하며, 그동안 추진한 대표 정책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들었다(농림수산성 2020: 168).

① 기획·입안 단계부터 여성의 참여 촉진

지역농업에 관한 방침을 기획하거나 입안하는 단계부터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농업위원 등에 여성 임용을 적극 추진했다. 또한 지역농업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나 확보해야 할 경영조직의 모습을 결정하는 ‘사람·농지 플랜’을 심사하거나 검토하는 시정촌(市町村)의 검토회에 여성농업인이 30% 이상 참여하도록 노력하였다.

② 지역농업 활성화에 도전하는 여성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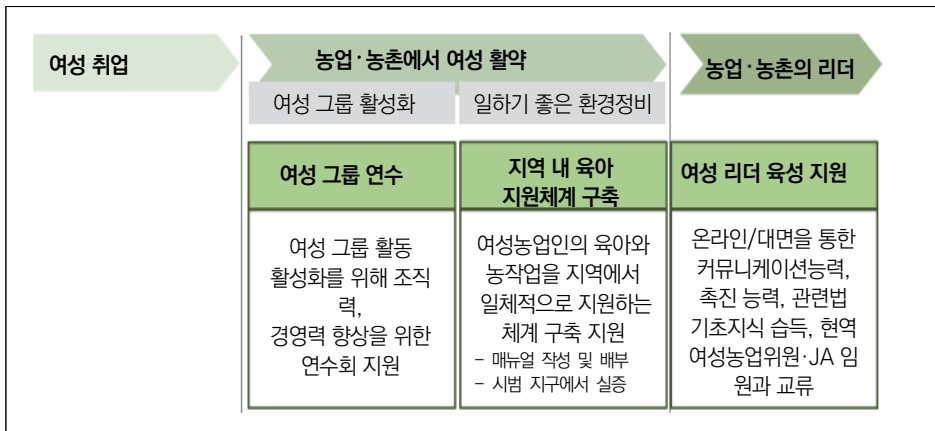
경영조직을 지원하는 국고보조 사업은 여성농업인 등의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되므로 여성경영자 네트워크 등을 통해 철저히 홍보함과 동시에 여성과 여성그룹의 사업이 채택되도록 배려했다.

③ 여성이 바꾸는 미래의 농업 추진사업

차세대 리더가 될 여성농업경영인의 육성 및 여성농업인이 일하기 좋은 환경정

비 추진과 관련한 사업을 지원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농업인이 능력을 발휘해 활약할 수 있고 여성에게 매력적인 직업으로 농업이 선택될 수 있도록 여성그룹 활동 활성화를 위한 연수, 지역에서 육아와 농작업을 일체적으로 지원하는 체제 구축, 여성리더가 될 수 있는 농업경영인 육성(특히, 농업 현장의 방침 수립에 참가하는 여성을 늘리기 위해 농업 위원, JA 임원 등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습득)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여성농업인의 활약을 추진하기 위해 여성농업 체험 및 연수 체제 구축, 지역 여성농업인 네트워크 구축, 지역에서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 정비를 지원하고 있다.

〈부도 2-1〉 여성이 바꾸는 미래의 농업 추진사업



자료: 농림수산업성 경영국 취농·여성과 여성활약추진실(2020: 7).

또한 2020년 제3차 추경예산 중에서 농업 분야의 노동력 확보를 위한 긴급 지원 사업 중 하나로 여성의 활약 추진을 위한 사업이 포함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농림수산업성 경영국 취농·여성과 여성활약추진실 2020: 7).

- 여성의 농업체험 및 연수 도입 체제 구축: 여성 취농 희망자의 체험 및 연수 장소인 농업법인이나 농가 등을 위해 인재 활용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한 매뉴얼 작성, 연수회 등을 지원
- 지역 내 여성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 지원: 지역 내에 여성 그룹의 설립이나

그룹을 통한 사업, 스터디 그룹 등의 활동 지원

- 지역에서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 정비: 지역 내에 간이 개·보수나 임대 등을 통한 보육 공간, 남녀별 화장실, 탈의실 등의 확보 지원

1.4. 일본의 여성농업인 현황

일본의 농업 인구는 전체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1995년 414만 명이었던 농업인구는 2019년 기준 168만 1천 명으로 줄어들었다. 여성농업인 수의 감소 폭도 크고, 전체 농업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역시 점점 줄어들고 있다. 1995년 농업인구 중 여성의 비율은 57.3%였으나 2019년에는 45.4%로 줄어 약 12%p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표 2-2〉 일반 농업 인구 중 여성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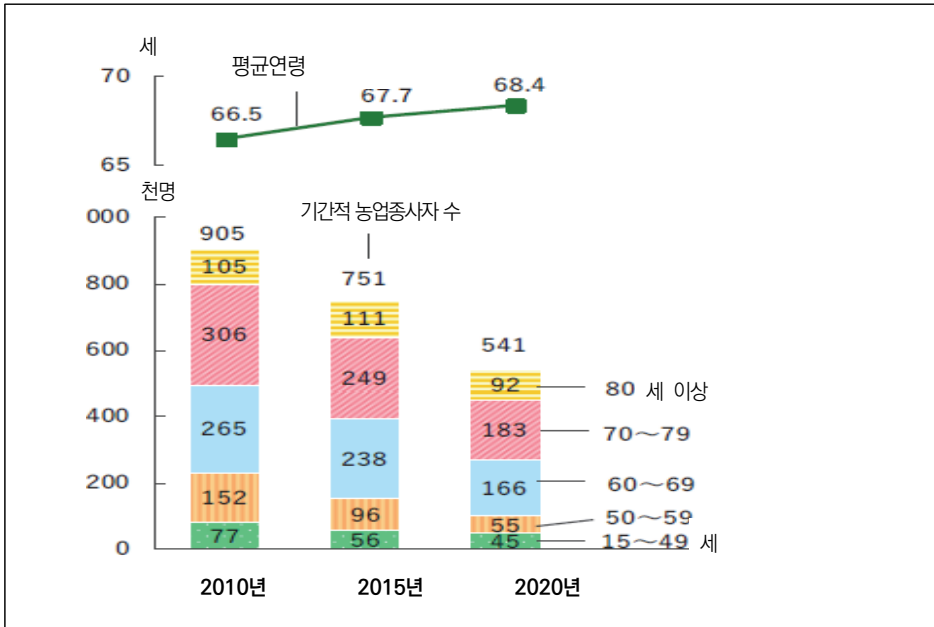
단위: 천 명, %

구분	1995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농업 인구	4,140	3,891	3,353	2,606	2,097	1,922	1,816	1,753	1,681
여성 수	2,372	2,171	1,788	1,300	1,009	900	849	808	764
여성 비율	57.3	55.8	53.3	49.9	48.1	46.8	46.8	46.1	45.4

자료: 농림수산물성 경영국 취농·여성과 여성활약추진실(2020: 2).

주로 농업에 종사하는 기간적 여성 농업종사자 수는 2015년에서 2020년까지 5년 동안 21만 명(28.0%)이 감소해 54만 1천 명으로 집계되었다. 모든 연령 계층에서 감소를 보이고 있는데, 60~69세에서 7만 2천 명으로 가장 많이 감소했고 그다음으로 70~79세에서 6만 6천 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0년 기간적 여성농업인의 평균연령은 68.4세로 5년 전에 비해 0.7세 높아졌다(농림수산물성 2021: 143).

〈부도 2-2〉 기간적 여성농업인 수와 평균연령



자료: 농림수산성(2021: 143).

농림수산정책연구소에 의하면 일본에서 여성농업인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원인은 여성의 고학력화, 남성농업인의 미혼화, 인구의 고령화 진행과 더불어 ‘의료·복지’ 분야의 노동력 수요 증가 등이다(여성의 농업 활약 추진을 위한 검토회 2020: 6).

〈부표 2-3〉 연령별 농업 취업인구와 여성 비율

단위: 천 명, %

구분	39세 이하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합 계
농업 인구	93	90	144	621	734	1,681
여성 수	30	36	72	301	326	764
여성 비율	31.8	39.8	49.9	48.4	44.5	45.4

자료: 농림수산성 경영국 취업·여성과 여성활약추진실(2020: 2).

농업인구 중에서 연령별 여성의 비율을 살펴보면, 50대에서 여성의 비율이

49.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60대가 48.4%였다. 반면 39세 이하의 여성비율은 31.8%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신규 취농자 전체에서 차지하는 여성의 비율은 24.0%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표 2-4〉 연령별 신규 취농인 수 및 여성 비율(2018년)

단위: 명, %

구분	39세 이하	40~49세	50~59세	60~64세	65세 이상	합 계
신규 취농인 수	12,810	6,490	7,390	12,290	16,840	55,810
여성 수	3,240	1,740	1,910	2,980	3,550	13,420
여성 비율	25.3%	26.8%	25.8%	24.2%	21.1%	24%

자료: 농림수산성 경영국 취농·여성과 여성활약추진실(2020: 2)

2. 일본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 관련 정책 동향

일본 정부는 법적 지원 및 검토회 등을 통해 농촌 여성의 지위 향상 및 역할 확보를 위한 노력을 거듭하고 있다. 2020년 7월에는 ‘여성의 농업 활약 추진을 위한 검토회’를 구성해 관련 정책 평가와 대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여성의 농업경영 및 이와 관련한 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여러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정책으로 ‘가족경영협정 체결’, ‘인정농업인 제도’, ‘농업 위원 등 지역정책 수립에 여성농업인의 참여’, ‘농업여자 프로젝트’, ‘여성농업사 제도’ 등이 있으며 이러한 정책은 현재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2.1. 2020년 여성농업인이 빛나는 농업 창조를 위한 제언

일본에서 처음으로 여성농업인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1992년에 발표한 『2001년을 향한 새로운 농어촌 여성(농어촌 여성에 관한 중장기 비전 간담회 보고서, 이하 ‘중장기 비전’으로 통일)』이다. 그 후 1999년에 시행된 「식료·농업·농촌기본법」의 기본 정책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과 관련한 사항을 포함시켰고, 같은 해에 시행된 「남녀공동참여사회기본법」을 중심으로 여성의 농업 경영 및 이와 관련한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추진해 왔다.

그 후 일본 사회 전체적으로 ‘여성의 활약’ 중요성이 주목받으며, 일본 정부에서도 여성 활약 추진을 위한 정책 과제로 2016년 ‘SDGs 실시 지침’을 수립했고, 2018년 「일하는방식개혁관련법」의 성립 등으로 농촌뿐 아니라 일본 사회 모든 분야에서 지향하는 여성의 모습도 크게 바뀌었다. 또한, 2020년 12월에는 ‘제5차 남녀공동참여 기본계획’이 새롭게 수립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맞추어 농림수산성에서는 농어촌 여성 중장기 비전 수립 이후 무엇이 달성되고 무엇이 달성되지 않았는지를 총괄적으로 검토하고, 농업·농촌에서 여전히 여성의 활약을 가로막는 과제는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2020년 7월 ‘여성의 농업 활약 추진을 위한 검토회’를 구성하였다. 이 검토회에서 발표한 보고서 “여성 농업인이 빛나는 농업 창조를 위한 제언-발굴하기, 역할부여하기, 연계하기-”에는 농어촌 여성 중장기 비전 책정 이후의 진행 사항을 총괄하는 한편, 향후 여성농업인 관련 정책에 있어 단기 과제와 중장기 과제는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은 무엇인지가 세세하게 담겨 있다.

이 보고서에서 제안한 여성농업인이 빛나는 농업 창조를 위한 제언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① 농촌의 의식 개혁, ② 여성농업인의 서로 배우기 및 여성 그룹 활동 활성화, ③ 지역을 선도하는 여성농업인 육성·지역 농업 방침 수립에 여성의 참여, ④ 여성농업인 관련 플랫폼 기능의 강화 등이다. 이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부표 2-5〉 2020년 여성농업인이 빛나는 농업 창조를 위한 제언 개요

농촌의 의식 개혁
▪ 연수·모임 안내 수신처에 부부 모두의 이름이나 자녀의 이름 기재, 여성농업인을 위한 모임 등에서 보육서비스 제공,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쉽도록 조기에 안내장 발송 ▪ 농업고등학교 학생이나 경영 계승자 등에게 가족경영협정에 대해 알림, 라이프 스타이지에 따라 협정 내용 재검토 등을 추진
여성농업인의 서로 배우기 및 여성 그룹 활동 활성화
▪ 도도부현이나 시정촌에 여성농업인을 위한 일원적 상담창구 설치 ▪ 여성그룹의 활동 발굴, 그룹을 이어주는 횡단적 네트워크 구축 추진 ▪ 육아, 돌봄 지원과 관련한 정보 제공
지역을 선도하는 여성농업인 육성, 지역 농업 방침 수립에 여성의 참여
▪ 여성리더 육성 연수, 여성의 횡단적 교류 추진 ▪ 농업위원이나 JA 임원 중 여성 임용 관련 목표 지표 설정, 도도부현·시정촌의 구체적인 목표 지표 설정 ▪ 여성 임용과 조직의 수익 향상 관련 상관관계 객관적 조사 실시 ▪ 시정촌·농업위원회 등 지역 내 협의에 여성의 참여 목표 설정
여성농업인 관련 플랫폼 기능의 강화
▪ 농림수산성 여성활약추진실이 플랫폼 역할을 담당하여 타 정부 부처, 도도부현, 시정촌, JA, 농업위원회, 전국농업회의소 등과 연계 강화 ▪ 10년을 기준으로 재평가 진행

자료: 농림수산성(2021: 146).

2.2. 가족경영협정 체결

2.2.1. 가족경영협정 개요

농림수산성에서는 농촌 여성의 경영 참여 및 역할 분담, 의사결정, 경영 이양 등 농업경영과 생활에 관해 가족이 서로 협의하여 수행하도록 1995년부터 ‘가족경영협정’을 추진해 왔다. 가족농업 경영을 구성하는 개개인의 주체적인 농업경영 참여를 이끌어 농업에 대한 성취감과 만족감을 높이고 현대적 가족농업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가족경영협정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농업경영과 관련된 것으로 취로 조건(보수, 휴일 및 휴가, 보험료 등)과 수익배분, 역할분담 등이며, 둘째는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가사, 육아나 돌봄, 가계비 지출법 등을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다. 가족경영협정 체결의 유형은 경영주와 경영주의 배우자, 후계자, 후계자의 배우자, 경영주의 부·모 등 여러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협정의 양식이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부분은 미리 제시되어 있으나, 일정하게 정해진 양식은 없어 지역이나 개개의 경영 실정에 맞추어 협정을 체결하기 때문에 내용은 매우 다양하고 풍부하다. 협정은 농업개량보급센터, 농업위원회 위원 등 제삼자의 입회하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약정을 문서화하고 있다.

가족경영협정을 체결하여 경영에 참여하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인센티브로는 다음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① 인정농업인

실제 여성농업인이 공동 경영을 하는 경우, 수익 배분과 경영 방침 결정에 대한 참여가 가족경영협정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것을 요건으로 부부 공동 인정농업인 신청이 가능함.

② 농업인연금

일본의 사회보장제도에 있어 여성의 사회권은 남성노동자의 피부양 배우자로서 아내 자격을 기준으로 발전해 왔음. 농업인연금의 피보험자이면서 인정농업자와 가족경영협정을 맺고,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배우자와 후계자에 대해 연금보험료(2만 엔) 중 일정 비율을 국고로 지원함.

③ 공적자금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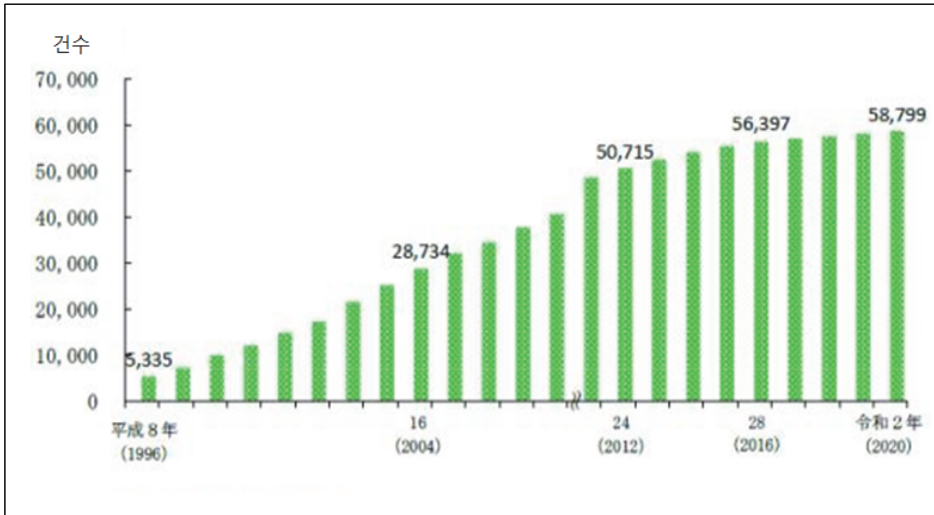
1995년 농업 개량자금에 여성 기업의 범위를 신설한 후, 현재는 농업 근대화 자금 및 경영 단체 육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부부가 함께 취농하여 농업 차세대인재 투자사업(경영개시형)에 지원할 경우, 가족경영협정과 경영자원의 공유 등에 따라 공동경영자인 것을 증명하면 부부합산 1.5인분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가족경영협정은 지역적인 운동의 일환으로 펼쳐져 왔다는 특징이 있으며, 현재는 협정 체결의 의의보다 협정을 맺는 과정이 핵심이 되고 있다. 또한 예전부터 지적되어 왔던 것처럼 가족경영협정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의사결정 참여가 촉진되었으나 협약의 내용이 가족 간의 약속이므로 내용이 느슨하고 사회적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는 문제(박대식·최경은 2008: 43)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럼에도 가족농업경영에 있어 여성농업인의 지위 확보와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라는 인식이 점차 자리 잡아가고 있다.

2.2.2. 가족경영협정 현황

가족경영협정의 체결 수와 그 추이를 살펴보면 1996년 5,335건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계속 증가해 왔으며, 전년 대비 증가 수로 보면 2004년에 정점을 찍었다. 이는 2002년부터 가족경영협정 체결을 조건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배우자, 후계자에 대한 농업인 연금 보험료를 국고로 조성하는 사업이 개시된 점, 2003년에는 가족경영협정 체결을 조건으로 부부 등에 의한 인정 농업인의 공동 신청이 가능해진 점 등이 체결 수의 증가를 뒷받침했던 요인으로 판단된다.

〈부도 2-3〉 가족경영협정의 체결 수 추이



주 1) 매년 3월 31일 현재.

2) 동일본대지진의 영향으로 2011년 미야기현 및 후쿠시마현 등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체결 농가 수는 2010년 3월 31일 기준 데이터를 인용.

자료: 여성의 농업 활약 추진을 위한 검토회(2020: 10).

한편, 2012년까지는 전년 대비 증가 수를 2,000건 이상으로 추이해 왔지만, 2016년에 전년 대비 증가 수가 1,000건을 기록한 이후 점점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이는 신규 체결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에 더해 사망, 이농, 폐업, 법인화 등에 따라 협정을 해지하는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2020년에는 체결 합계 수가 역대 최고치인 58,799건을 기록했지만, 전년 대비 증가 건수는 약 600건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2020년 전체 농가 중에서 가족경영협정이 차지하는 체결 건수의 비율은 약 25%인 것으로 나타났다(여성의 농업 활약 추진을 위한 검토회 2020: 9).

가족경영협정의 체결 내용으로는 ‘농업 경영 방침 결정’이 94.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근로 시간 및 휴일’이 85.6%, ‘농업에서 역할 분담’ 83.7%, ‘근로보수’ 71.7%, ‘수익배분’ 69%, ‘경영 이양’ 56% 순으로 나타났다.

〈부표 2-6〉 가족경영협정 체결 내용(2020년 3월 기준)

협정 체결 내용(복수응답)	비율
농업 경영 방침 결정	94.1%
근로 시간 및 휴일	85.6%
농업에서 역할 분담(작업분담, 부기기장 등)	83.7%
근로보수(일급, 월급)	71.7%
수익 배분(일급, 월급 이외의 수익 배분)	69.0%
경영 이양	56.0%

자료: 농림수산업 경영국 취농·여성과 여성활약추진실(2020: 4).

2.3. 인정농업인 제도

2.3.1. 인정농업인 개요

일본에서 공적으로 인정하는 농촌 지역의 리더로 ‘인정농업인’ 제도가 있다. 이는 1993년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에 의거하여 농업경영 규모 확대에 초점을 맞춘 리더 육성제도로 시정촌(市町村)이 인정하는 제도이다. 인정농업인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한 농업 구조가 확립되도록 계획적인 농업 경영 개선을 추진하는 농업인을 지자체가 인정하는 제도로, 소득·노동시간, 농업 규모, 생산 방식 합리화, 경영 관리 합리화 등과 관련한 농업인의 농업경영개선계획을 토대로 인정을 부여하며, 이를 통해 농지이용 등 경영기반 강화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이순미 외 2020: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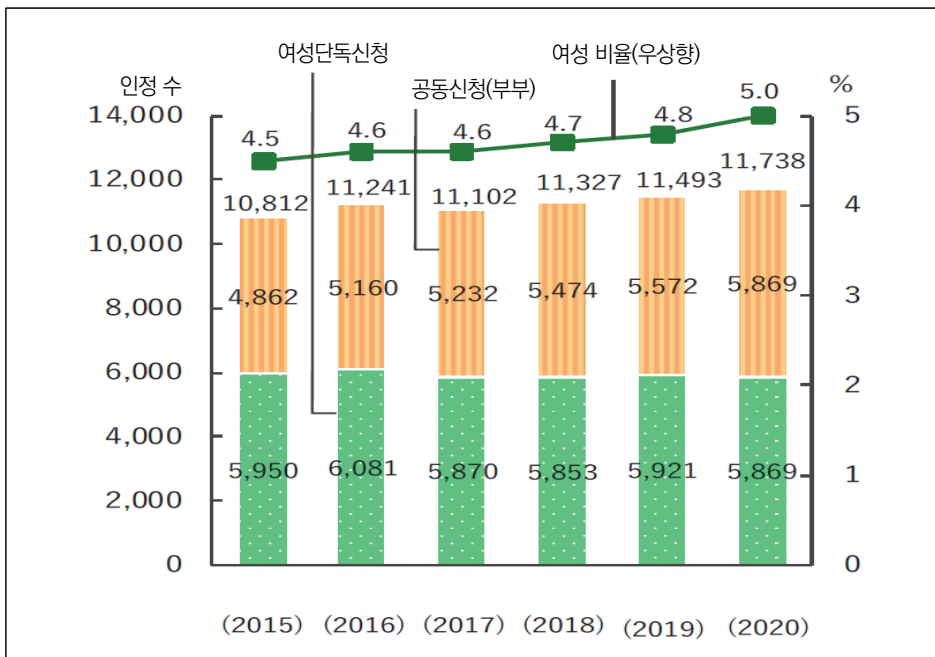
인정농업인의 인정 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정은미 외 2020: 40). 첫째, 경영규모 확대에 관한 목표(작부면적, 사양두수, 작업 수탁면적), 둘째, 생산 방식의 합리적인 목적(기계나 시설 도입, 신기술 도입 등), 셋째, 경영 합리화 목표(복식부기에서의 기장 등), 넷째, 농업종사 형태에 관한 개선 목표(휴일제 도입 등) 등이다. 시정촌의 인정농업인 선정 기준은 농업인의 계획이 시정촌의 기본구상에 적합하고, 농지를 효율적이고 종합적으로 이용할 것, 농업인의 계획 달성 전망이 확실할 것 등이다.

인정농업인은 저금리 용자, 농지유통화대책, 기반정비사업 등 국가지원이 중점적으로 제공되고 보험료 국고보조도 시행하고 있다. 현재 지역 농업을 이끌어가는 여성 인정농업인의 비율은 1999년 1.6%에서 2020년 5.0%로 꾸준히 상승하며 비율은 3배가 되었지만 질적 수준은 여전히 낮은 상태다(여성의 농업 활약 추진을 위한 검토회 2020: 6).

2.3.2. 여성 인정농업인 현황

여성 인정농업인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여성 인정농업인 수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8.6% 증가한 11,738명으로 전체 인정농업인 수 대비 점유율은 0.5%p 증가하여 5.0%가 되었다. 이는 2003년부터 허용된 부부 공동신청의 증가가 하나의 요인으로 판단된다(농림수산성 2021: 143).

〈부도 2-4〉 여성 인정농업인 비율



자료: 농림수산성(2021: 143).

2.4. 농업 위원 등 지역정책 수립에 여성농업인의 참여

2.4.1. 지역정책 수립에 여성농업인의 참여 개요

일본의 시정촌에 설치되어 있는 농업위원회는 농업인의 이익을 대표하거나 지역의 상담인 역할, 농지행정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농지 매매나 임대, 전용 등의 인허가 업무, 농업의 구조개혁 추진의 일환으로 인정농업인을 지원하거나 농지의 유효 이용을 촉진한다. 예전에는 이들 업무 중 농지법에 관한 역할이 가장 컸다. 농지에 대한 인허가를 심의·결정하므로 이해관계가 얽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업위원회는 농촌에서 권위적 배경이 필요한 중요한 직무이고 명예직인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권익과 명예직인 농업위원이라는 지위를 양보하는 것에 기존 리더층의 저항이 강하고, 관례적으로 위원 수가 지구마다 할당되어 있어 주로 남성이 선출되는 경향이 강하다(정은미 외 2012a: 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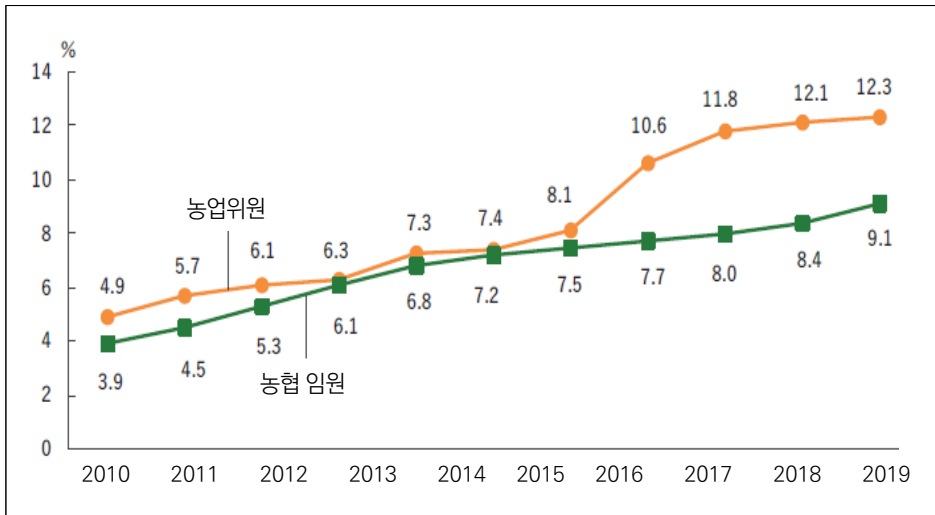
일본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사회적 활동 지원을 위해 남성 중심적인 농업위원회와 지역농협에서 여성 임원 비율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1992년에 발표한 중장기 비전에서는 ‘남녀의 사실상 평등을 목적으로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잠정적인 특별조치(affirmative action, 적극적 차별 철폐 조치)’의 도입과 더불어 각 조직에서 여성의 참여율을 목표 지표로 설정하도록 제안해 왔다. 이에 따라 지역정책 수립에 여성농업인의 참여와 관련하여 ‘남녀공동참여 기본계획’에서 성과목표를 설정하는 것뿐 아니라, 여성 농업위원의 전국 조직인 전국농업위원회 여성협의회나 농협전국대회 결의에서도 별도의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2016년 4월에 개정 시행된 「농업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면, 농업위원이나 농협 임원에 연령이나 성별에 현저한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성에서는 농업 위원이나 농협 임원에 여성 참여를 추진하기 위한 연수회 등도 실시하고 있다(여성의 농업 활약 추진을 위한 검토회 2020: 7).

2.4.2. 농업 위원 등 지역정책 수립에 여성농업인의 참여 현황

지역의 농업 정책을 수립하는 농업위원 또는 농협 임원 중 여성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으나 2019년 기준 농업위원은 12.3%, 농협 임원은 9.1%로 여전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도 2-5〉 농업위원 및 농협 임원 중 여성 비율



자료: 농림수산성(2021: 145).

이에 제5차 남녀공동참여기본계획(2020년 12월 각의결정)에서는 제4차 계획의 성과목표에 더해 토지개량구(土地改良区, 토지개량구 연합 포함) 이사직의 여성 비율과 인정농업인 중 여성 비율을 목표 지표로 추가했다. 이처럼 새로운 여성 임원 비율의 목표 설정 및 지역에서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명시하여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표 2-7〉 제5차 남녀공동참여기본계획의 성과목표

항목		성과목표 (2025년)	현황 (기준 연도)
농업위원 중 여성 비율	여성위원이 등용되지 않은 조직 수	0	273/1,703 (2019년)
	농업위원 중 여성 비율	20%(조기 달성), 30% 목표 지향	12.1% (2019년)
농업협동조합 임원 중 여성 비율	여성 임원이 등용되지 않은 조직 수	0	107/639 (2019년)
	임원 중 여성 비율	10%(조기 달성) 15% 목표 지향	9.1% (2020년)
토지개량구 이사 중 여성 비율	여성 이사가 등용되지 않은 조직 수	0	3,737/3,900 (2017년)
	이사 중 여성 비율	10%	0.6% (2017년)
인정농업인 중 여성 비율		5.5%	5.0% (2020년)
가족경영협정 체결 수		70,000건	58,799건 (2020년)

자료: 농림수산물성 경영국 취농·여성과 여성활약추진실(2020: 5).

2.5. 농업여자 프로젝트

2.5.1. 농업여자 프로젝트 개요

농림수산물성은 2013년 11월 여성농업인의 지혜와 농업 내·외부 기업의 기술을 결합하여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등을 추진해 왔다. 이와 동시에 사회 전체적으로 여성농업인의 존재감을 높이고, 여성농업인 스스로의 의식 개혁 및 경영 능력 향상은 물론, 젊은 여성이 직업을 선택할 때 ‘농업’을 고를 수 있도록 ‘농업여자 프로젝트’를 설립했다.

농업여자 프로젝트는 다양한 기업, 교육기관 등과 연계하여 여성농업인의 지혜를 살린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 개발, 미래의 여성농업인을 육성하는 활동, 여성 농업과 관련한 정보 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회 전체에서 여

성농업인의 존재감을 높이고 여성농업인 스스로의 의식 개혁, 경영 능력 발전을 촉진하여 직업으로 농업을 선택하는 젊은 여성들의 증가를 목표로 한다. 또한 농업 여성인 간의 네트워크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농림수산성 경영국 취농·여성과 여성활약추진실 2020: 8).

〈부표 2-8〉 농업여자 프로젝트의 사업 내용

사업	내용
기업 프로젝트	▪ 기업과 농업여자멤버가 협동으로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 등을 개발, 여성농업인의 활약과 매력을 홍보 (각 기업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
팀 육성	▪ 고등학교, 대학 등의 교육기관과 활발하게 활동하는 농업여자멤버가 연계하여 농업을 꿈꾸는 학생 발굴, 동기부여, 의식 향상을 위한 사업 실시
SDGs 활동 홍보	▪ 농업여자멤버의 SDGs 활동을 적극 홍보
농업여자 LAB 활동	▪ 멤버 개개인이 관심 있는 주제로 자주적 스터디 그룹 활동을 지원
SNS나 이벤트 등을 활용한 여성농업인의 매력 홍보	

자료: 농림수산성 경영국 취농·여성과 여성활약추진실(2020: 8).

2.5.2. 농업여자 프로젝트 현황

2021년 2월 현재 농업여성 프로젝트의 멤버는 840명이며, 농업기계 제조업체 등 37개사, 교육기관 7개교가 참여하고 있다.

농업여자 프로젝트는 기업 프로젝트와 조직 육성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기업 프로젝트는 기업과 여성농업인의 협력을 통해 신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목표가 있다. 이와 관련한 성과로 (주)시마무라의 기능성 좋은 여성용 작업복 개발, 몽벨의 소재와 디자인을 겸비한 여성 작업복 개발, 가네코소교의 여성이 사용하기 편리한 농기구, 이세키농기의 여성농업인용 예초기 개발 등을 사례로 들 수 있다. 둘째, 2016년부터 교육기관이 참여한 조직 육성은 고등학교, 대학과 여성농업인이 연계하여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학생 발굴, 동기 부여, 의식 향상 등을 실시하는 활동이다.

이러한 농업여자 프로젝트는 여성농업인들의 목소리를 담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상품 개발 및 여성농업인의 노동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성농업인의 권익과 위상을 높이고 여성농업인이 겪는 문제를 직접 해결한다는 점에 큰 특징이 있다.

2.6. 여성농업사 제도

농업사 제도는 지역에 크게 공헌한 농업인을 농촌 지역의 리더로서 도도부현이 인정하는 것이다. 지역 농업의 핵심 리더라는 자격이자 명칭이다. 농업사 육성 사업은 전국적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사업을 중앙정부가 장려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의 특성에 맞춰 유연하게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정은미 외 2012a: 89).

사업을 시작한 시기는 나가노현이 1967년, 이시카와현이 1995년 등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현재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여성농업사 제도를 두고 있지만 그 명칭이나 사업 방식은 지역마다 매우 다양하다. 각 지방 여성농업사의 공통점은 여성 집단이나 조직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거나 경영조직을 발전시킨 여성, 즉 이미 지역 내의 여성모임에서 리더로 활동하는 여성을 발굴하여 인정하는 것이다. 여성을 지역리더로 인정함으로써 지위 향상은 물론 공식적인 리더로 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정은미 외 2012: 89).

이처럼 여성농업사 제도는 여성의 활동을 장려함으로써 능력발휘 기회를 주고 지역주민에게는 그 능력을 인식시켜 사회적 평가를 높이는 효과도 있다. 여성농업사는 아직 소수이지만 여성농업사로 인정되는 것이 지역의 정치적 의사결정 기회에 참여하는 통로가 되어 여성 농업위원 수가 특히 많아지는 현(県)도 등장하고 있다(정은미 외 2012a: 90).

일본의 지역 농업에서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지역의 의사결정에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여성농업사 인정제도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여성 개인적으로도 여성농업사로 활동하며 유용한 정보를 얻는 기회가 될 뿐 아니라 농업 기술과 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3. 일본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 관련 사례

3.1. 표창을 통한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

농림수산성의 보조사업인 ‘빛나는 여성농업경영자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농업의 미래를 만드는 여성 활약 경영조직 100선(WAP 100³³⁾)’이라는 사업을 진행했다. 여성농업인의 활동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농업경영 조직을 선발하고 선진 사례로 홍보하는 등의 사업을 시행해 전국에 농업 여성의 활약상을 보급할 목적으로 실시한 것이다.³⁴⁾

‘농업의 미래를 만드는 여성 활약 경영조직 100선’의 심사 포인트로는 ① 여성의 활약을 추진하는 다양한 노력이나 환경 정비(경영 리더의 의식, 일하기 편리함, 경력 형성, 능력에 관한 대응)와 ② 경영 성과이다. 이 두 가지 기준 중 전자의 결과로 후자가 탄생한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표창 기관 중에는 최고경영자가 여성인 법인, 사회 보장은 물론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제도 등을 운영하는 법인이 주로 선발되었다. 2015년에 32곳, 2016년 28곳, 2017년에 42곳이 선발되었고 사업은 2017년에 종료되었다.

또한 매년 열리는 ‘농림수산제’에도 2015년부터 ‘여성 활약’ 부문을 개설하여 표창을 실시하고 있다.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 정비, 적극적인 여성인재 채용, 사업에 대한 정당한 평가, 사업이나 지역농림어업 발전에 여성의 공헌, 농림어업 생산에 대한 의욕, 경영 안정 등이 주요 심사 대상이 되고 있다.

이처럼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정책은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조직 활동을 넘어 경영조직 내에서 여성의 능력 발휘나 평가, 다른 산업과의 연계와 같은 방향으로 중점이 옮겨가고 있다(하라 주리 2017: 700).

33) WAP은 Women's Active Participation in Agricultural Management의 약자.

34) 일본 농업법인협회(<https://hojin.or.jp>, 검색일: 2021. 8. 11.).

□ 2020년 농림수산물 내각총리대신상 - 주식회사 비스트로 쿠루론

(주)비스트로 쿠루론(株式会社ビストロくるるん)은 오키마치(大木町)의 자원 순환형 마을 만들기 일환으로 건설한 미치노에키(道の駅, 국도 변에 위치한 휴게소)에서 여성들만으로 운영하는 지산지소 뷔페식 레스토랑이다. ‘농업의 가치와 역할을 전하는 레스토랑’이라는 이념 아래 연매출 약 1억 엔을 달성했고, 연간 약 7만 5천 명의 손님이 방문한다. 이 회사는 농가의 여성으로 구성된 농업조합법인 모어하우스의 이사를 중심으로 미치노에키 조성 공모에 적극 나선 3명의 여성이 출자해서 설립한 점이 특징 중 하나다.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경영하고 지역 농가와 협동하여 농업의 매력 제고, 식품 손실 저감 대책,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올바른 식생활 교육 수업이나 고령자를 위한 배식 서비스 등에도 힘쓰고 있다. 지역 내 고용 및 창업을 목표로 하는 여성들의 비즈니스 모델로서 높게 평가받고 있다(농림수산물 경영국 취농·여성과 여성 활약추진실 2020: 14).

□ 2020년 일본농림어업진흥회 회장상 - 구리모토 메구미 씨, 시즈오카현

비농가 출신인 구리모토 씨는 고등학생 때 꿈꾸었던 ‘농사를 짓고 싶다’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 도쿄농대 졸업 후, 일반 기업에 취업해 농업 현황과 매니지먼트 등을 배운 후에 시즈오카현의 신농업인지원사업을 활용해 딸기 농가에 취농했다.

4년째 접어들어서는 경영규모를 15a에서 22a로 확대하고 직원을 고용하기 시작했다. 취농 이전에 습득한 관리능력을 활용해 연간 노동시간을 1,800시간 이하로 억제하면서도 매상 목표를 안정적으로 달성하고 있다. 회사의 이념을 직원과 함께 공유하며 작업 효율을 향상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실천하고 철저한 데이터 기록과 경영 가시화로 여성 특유의 감성 운영을 하고 있다.

‘인재를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어 여성농업 경영자의 롤모델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앞으로 더욱 활약이 기대되고 있다(농림수산물 경영국 취농·여성과 여성 활약추진실 2020: 14).

3.2. 여성농업사 선진 사례: 나가노현 농촌생활 마이스터³⁵⁾

나가노현(長野県)의 ‘농촌생활 마이스터’는 각 도도부현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성농업사 인정제도의 하나이다. 일본의 각 현마다 비슷한 유형의 제도가 실시되고 있지만, 나가노현은 지역 내의 농업위원 등 여성농업인 활약의 기반이 되는 선진 사례로 많이 알려져 있다.

나가노현은 1991년 전국에서 제일 먼저 ‘나가노현 농촌여성 플랜’을 수립했다. 1992년에는 농촌 여성 리더 설치사업의 일환으로 ‘나가노현 농촌생활 마이스터 인정요령’이 제정되었고, 1993년 ‘나가노현 농촌생활 마이스터 협회’가 설립되었다. ‘제4차 나가노현 남녀공동 참여계획’에는 여성농업위원과 함께 농촌생활 마이스터 인정자 수가 목표 지표로 설정되어 있다. 또한 나가노현 농촌생활 마이스터협회는 ‘제5차 나가노현 농촌여성 도전플랜’을 행정기관과 공동으로 수립하기도 했다.

나가노현 농촌생활 마이스터의 인정 요건은 의욕적이고 지역의 신망이 두터울 것, 지역의 실천 집단에 속해서 활동할 것, 40~60세 정도일 것 등의 세 가지이다. 신청은 시정촌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업개량보급센터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나가노현 지사에게 제출된다. 신청자는 농촌생활 마이스터 사전 연수를 다섯 차례 받고 인정회의의 심사를 거쳐 지사로부터 인정서를 교부받는다. 2016년 기준 인정자 수는 1,056명이다.

농촌생활 마이스터로 인정받은 후에는 지역 내에서 다음과 같은 활약을 한다. 먼저 여성 참여라는 측면에서 가족경영협정 체결의 추진, 정책결정에 참여(시정촌 의회의 의원, 농업위원, JA 이사 등)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지역 활성화 과정에서 지산지소, 6차 산업화, 식농(食農)교육, 학교급식, 그린 투어리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즉 농촌 마이스터는 ‘나가노현 농촌여성 도전플랜’을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리더가 되는 것이다(오우치 마사토시 2017: 116-117).

35) 일본 나가노현(<https://www.pref.nagano.lg.jp/index.html>, 검색일: 2021. 7. 25.).

3.3. 후쿠오카현의 여성정책 담당창구 일원화 사례

후쿠오카현(福岡県)의 여성 농업정책은 농림수산부 경영기술지원과에 설치된 ‘여성농업인지원계’가 담당한다. 후쿠오카현 여성농업인지원계의 특징을 정리하면 2012년에 설치된 새로운 부서라는 점, 여성농업인이라는 용어를 채용한 점, 모든 여성농업인 정책이 일원화된다는 점, 경영기술지원과는 보급지도센터 소관 부서로 여성정책이 보급사업과 연계되기 쉽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경영기술지원과에는 협동농업 보급사업과 관련한 경영기획담당도 있다.

여성농업인지원계의 업무 내용은 여성농업인이 활약하는 농업경영의 추진과 관련된 것이다. 먼저 2015년부터는 ‘여성농업인 활약 촉진 사업’의 일환으로 후쿠오카 농업여성 창업가 육성, 후쿠오카 농업여성 창업네트워크 구축, 여성농업인 대활약대회 개최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경영관리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연수회 개최, 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여성농업인 활약 추진사업 등도 수행하고 있다. 이는 후쿠오카현 내의 기업과 연계하여 여성농업인이 사용하기 쉬운 상품개발을 검토하는 것으로 농림수산성이 실시하는 농업여자 프로젝트의 후쿠오카현 판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농업인지원계는 이처럼 후쿠오카현 차원의 사업을 담당함과 동시에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여성농업인 홍보활동에도 힘쓰고 있다(오우치 마사토시 2017: 183-184).

3.4. 6차 산업 성공 사례

일본에서 6차 산업화(농업인이 농산물의 생산뿐 아니라 가공·판매도 하는 형태)는 여성농업인이 가족경영체제 속에서 여성의 능력을 발휘한 산업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사토 가즈에 2016: 61-62). 2011년 3월 「6차산업화·지산지소법」이 시행되며 6차 산업 종합화 사업계획의 누계 인정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약 2,600건에 달한다. 최근에는 가공·직매뿐 아니라 경영의 다각화를 목표로 농가 레스토랑이나 농업 체험, 수출 등의 사업도 증가하고 있다.³⁶⁾

6차 산업이란 1차 산업(농업생산)을 기본으로 2차 산업(가공), 3차 산업(판매, 서비스)을 융합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형태를 가리킨다(1차 산업×2차 산업×3차 산업=6차 산업). 농업 생산에 종사하면서도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하던 여성들이 조금씩 동료와 함께 농산물을 가공하여 상품화하고 직판장 등에서 판매하며 성공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여성농업인의 훌륭한 수입원이 될 뿐 아니라 농업에 보람과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2020년 6차 산업화 우수 사례 표창식에서 농림수산대신상을 받은 곳은 ‘유한회사 슈슈’이다. 슈슈는 지역 생산자의 소득 향상을 목적으로 생산자가 법인을 세워 현지산만을 이용한다는 운영 방침과 현지 관광업체와 제휴, 지역 인재와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지역 활성화를 실현하는 대표 사례로 평가받았다.

유한회사 슈슈는 2000년에 농가 8가구가 모여 공동 농산물 판매를 위해 설립한 후 현지에서 채취한 농산물이나 가공품을 판매하는 직매장, 현지에서 재배한 식재료를 사용해 요리하는 레스토랑, 이 외에도 아이스크림 공방, 빵 공방, 야외 예식 서비스, 농원체험, 농가민박 등을 제공하는 농업테마파크로 발전하면서 연중 손님이 끊이지 않는 농촌교류의 거점이 되었다.

슈슈는 연간 49만 명이 방문하는 농업교류 거점 시설로 계절에만 고용하는 사람을 포함해 약 100명이 넘는 종사자(여성 인력이 약 80%)가 활동하며 농업 관련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여성의 아이디어를 충분히 활용한 사업 전개로 농업의 발전 잠재력을 현실화한 선진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36) 일본 농림수산성(<https://www.maff.go.kr>, 검색일: 2021. 8. 10.).

- 강혜정. 2008. “여성농업인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농촌경제』 31(4): 69-81.
- 강혜정. 2013. “여성농업인의 농업경영 참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여성경제연구』 10(1): 43-62.
- 고은실. 1991. “여성농민운동: 대중투쟁과 함께 급속한 조직화의 길로.” 『여성과 사회』 2: 247-252.
- 공미혜. 2019. “페미니즘의 기원과 역사.” 『여성우리』 61: 6-9.
- 곽삼근·김현미·손승영·이소희·주은희. 2012. 『일상의 여성학』. 전영사.
- 김경섭·김성철·김태식·김현호·양경희. 2012. 『지역사회복지론』. 양지사.
- 김경화·신동호. 2017. “사회적 자본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농어촌 중년기 남녀의 주관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농촌사회』 27(2): 137-172.
- 김보명. 2018. “급진 페미니즘(Radical feminism).” 『여성이론』 39: 158-178.
- 김선웅. 2006. 『개념 중심의 사회학』. 한울.
- 김영정. 2018. “마을공동체와 여성 : 공공성과 젠더화된 돌봄의 딜레마.” 『기억과전망』 38: 13-62.
- 김정섭·김광선·정문수·한이철·조승연·조여니. 2021. 『농어촌 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진용. 2020.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현황과 시사점.” 『CEO Focus』 제420호. 농협 미래경영연구소.
- 김혜연. 2020. “사회적 자본이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22(3): 41-68.
- 농림수산성. 2020. 『2019년도 농림수산성 연보』.
- _____. 2021. 『2020년도 식료·농업·농촌 백서』.
- 농림수산성 경영국 취농·여성과 여성활약추진실. 2020. 『농업에서 여성의 활약 추진에 대하여』.

- 농림축산식품부. 2020. 『제5차(’21~’25년)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안)』.
- _____. 2021. 『여성농업인 정책자료집 모아모아 한눈에』.
- 노화준. 2003. 『정책학원론』. 박영사.
- 문성훈. 2016. “프레이저-호넬트 논쟁의 한계와 대안.” 『사회와 철학』 (32): 219-258.
- 박대식·안석·임지은. 2017. 『농촌의 사회통합 실태와 정책 개선방안(1/2차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대식·최경은. 2008. 『해외 여성농업인의 지위 현황과 우리나라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 방안: 공동경영주의 개념 및 기준에 대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선영·배광빈. 2020. “사회적 자본이 사회적 경제조직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포용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34(1): 1-23.
- 박신규·정은정. 2010. “여성농민의 사회적 정체성 형성과 여성농민운동의 발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을 중심으로.” 『농촌사회』 20(1): 89-129.
- 박주희. 2009. “주민주도형 농촌마을 만들기에서 여성의 노동에 대한 연구.” 『농촌사회』 19(2): 207-242.
- 사토 가즈에. 2016. “여성농업인의 활약에 대한 과제.” 『일본노동연구잡지』 675: 59-68.
- 신승춘·권자경. 2013.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16(4): 307-333.
- 신현옥. 2000. “국가개발정책과 농촌지역 여성조직에 관한 연구 : 1960-70년대 마을 부녀조직의 역할과 활동을 중심으로.”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 아오야마 히로코. 2017. “여성이 움직이는 농업, 그리고 농촌사회-여성농업인에 의한 이노베이션에 관한 고찰-.” 『농업경영연구』 55(1): 23-31.
- 안상돈. 2021. “청년조합원 유입 확대를 위한 농협의 대응.” 『청년농업인 육성과 농협의 역할』. 토론회 발표 자료.
- 안상수·박성정·문미경. 2013.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 방안: 여성농업인센터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안석·엄진영·박지연. 2019. 『2018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안태윤·정혜원·오혜은. 2014. 『경기도 농촌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연구』. 경기도의회.
- 엄진영·최용호·박지연. 2018.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여성가족부. 2021.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안내.” 브로슈어.

- 여성의 농업 활약 추진을 위한 검토회. 2020. “여성농업인이 빛나는 농업 창조를 위한 제언~발굴하기, 역할부여하기, 연계하기-.” 『여성의 농업 활약 추진을 위한 검토회 보고서』.
- 오미란. 2009. “여성농업인의 지위평등성 확보를 위한 법적제도 개선방안.” 『젠더법학』 1(1): 151-172.
- 오우치 마사토시. 2017. “농촌여성정책의 전개와 다양화-농림수산성의 전개와 도도부현의 다양화-.” 『메이지대학 사회과학연구소기요』 56(1): 145-189.
- 유수진·김현지·장태순. 2020. “마르크스주의와 페미니즘이 바라보는 여성억압: 가부장제의 해체를 중심으로.” 『철학논고』 2: 119-142.
- 유정미. 2001. “국가 주도 발전에 참여한 여성들의 경험에 관한 연구: 새마을부녀지도자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문수. 2012. “정의에 대한 새로운 인식: Honneth와 Fraser의 인정이론을 통해 본 현대 사회에서의 정의.”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9(3): 23-46.
- 이선영·황미진. 2019. “여성농업인 조직활동의 가치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개선회 60년 활동 가치에 관하여.”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51(4): 1-26.
- 이순미. 2019. “여성친화적 농촌공동체가 충분히 ‘여성주의적’이기 위하여: 비비정, 여민동락, 문화기획달 사례를 중심으로.” 『2019년 한국여성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227-247.
- 이순미·위라점·정인경. 2020. “농어촌의 미래 여성농어업인 인력육성 방안.” 전남여성가족재단 연구용역보고서.
- 이인재·이문국·김정원·강병노. 2013. 『여성친화적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통한 여성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 이중구. 2020. “마을사회 여성 리더의 성장과 정치적 의미-연지 3리 여성 이장의 사례.” 『민속연구』 40: 115-155.
- 이철선·이연희·오미애·임성은·안주엽·김대연·정숙희·김기태·김형미·민동세·남관우. 2018. 『2017년 협동조합실태조사』. 기획재정부.
- 이충한. 2017. “정의의 차원들, 인정과 분배-프레이저와 호네프의 논쟁을 중심으로.” 『동서철학연구』 (85): 541-567.
- 이혜정. 2010.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몇 가지 단상-주체, 공동체, 연대 그리고 우정의 윤리.” 『한국여성철학회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1-15.

- 임선주·정정운. 2016. “농촌지역 고령여성의 노동신화 분석 : 마을기업의 보도기사를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7(2): 299-321.
- 임소영·김정섭·김남훈·하인혜. 2020. 『제5차 여성농어인육성 기본계획(2021-2025) 수립방안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 임춘희·송인하. 2010. “젠더의 관점에서 본 농촌의 마을공동체 재구조화의 문제.” 『여성연구』: 115-153.
- 장지연·오성영. 2017. “성별임금격차 해소의 철학과 정책: 프레이저 분배·인정 이론을 중심으로.” 『이화젠더법학』 9(1): 167-194.
- 제주여민회. 2019. 『성평등마을규약표준조항 마련 및 공론화 사업 결과 자료집』.
- 전라북도. 2020.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 지침』.
- 정명채. 2003. “해방 이후의 농민운동.” 『한국 농업·농촌 100년사 논문집 제2집·한국 농촌사회의 변화와 발전』: 215-25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명채·민상기·최경환. 1995. 『주요 농민운동단체의 형성과 전개과정』. D10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은미·아키히모토키·아와시마후미. 2012a. 『일본여성농업인의 현황과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은미·김태환·박은지. 2020. 『여성농업인 지위향상을 위한 농업경영체제도 개선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 정은미·마상진·민자혜. 2012b. 『여성농업인의 경제·사회적 역할 제고방안(1/2차연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은미·민자혜. 2013. 『여성농업인의 경제활동 실태와 활성화 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은미·박석두·김용렬·김우태. 2013. 『여성농업인의 경제·사회적 역할 제고방안(2/2차연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현주. 2017. 『사회적경제, 새로운 여성일자리 대안이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
- 정영·김남현. 2021. “지속가능한 도시 관광을 위해 주민 임파워먼트가 지속가능성 인식, 지지도 및 참여의도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 관계: 관광도시 경주를 중심으로.” 『관광연구저널』 35(6): 5-21.
- 조관일. 2006. 『농촌발전과 여성의 역할』. 한국학술정보.
- 조나영. 2018. “‘인정’패러다임 안에서 주체로 ‘투쟁’하기: 호네프트(A. Honneth)의 ‘인정 이론’과 교육 비판.” 『교육철학연구』 40(1): 139-163.

- 조남수. 2020. “페미니즘에 대한 일고찰: 지금까지의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가 아닌 남성과 여성의 투쟁의 역사로 바뀌어야 하는가?” 『노동사회과학』 13: 98-129.
- 조옥라. 1986. “가부장제에 관한 이론적 고찰.” 『한국 여성학』 2: 9-49.
- 조연숙. 2015.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한 성 인지적 개선방안 연구.” 『현대사회와 행정』 25: 1-24.
- 주재선·김영란·김난주. 2015. 『2015년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 점검지표 분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진명숙. 2020. “친밀과 돌봄의 정치경제학: 충남 홍동 지역 여성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53(2): 51-115.
- 진혜민. 2016. 『경상북도 농촌여성 사회경제적 역할 변화와 정책과제』. 경북여성정책개발원.
- 최유진·김영옥·김이선·문희영. 2013. 『여성농업인 사회자본 확충 방안 연구』 R705 연구자료-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운지. 2020.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 문제와 개선방안 관련 토론편.” 『제2차 희망을 만드는 농어촌 여성정책 포럼: 여성농업인의 지위 및 권리 향상 자료집』.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 최종혁·안태숙·이은희. 2010. “지역사회 사회자본 척도 개발을 위한 질적 연구: 지역사회 복지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2(4): 297-324.
- 최형미. 2020. “에코페미니즘.” 『여성이론』 43: 169-182.
- 통계청. 2020. 『농림어업총조사』.
- _____. 각 연도. 『사회조사』; 김홍주·하영진·이현진·김혜인(재인용). 2021. 『농업분야 주요사업 성인지통계』. 농림축산식품부.
- 하라 주리. 2017. “여성농업경영주의 사례로 본 여성 활약과 조직의 변화.” 『농업 및 원예』 92(8): 697-704.
- 행정안전부. 2021. 『주민자치(위원회)회 구성 현황』.
- _____. 2021. 자치분권지원과 내부자료.
- 한상미. 2007. “사회복지사들의 사회자본 측정도구 개발.” 『사회복지연구』 33: 237-272.
- 황미진·윤순덕·최정신. 2017. “여성농업인 조직활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농촌지도와 개발』 24(3): 155-172.

- 황정미. 2007. “여성 사회권의 담론적 구성과 아내, 어머니, 노동자 지위.” 『페미니즘연구』 7(1): 13-54.
- 현혜경·라해문. 2020. 『제주지역 마을운영규약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제주연구원.
- Almedom, A. M. 2005. “Social capital and mental health: An interdisciplinary review of primary evidence.” *Social Science & Medicine* 61(5): 943-964.
- Anderson, C., Hildreth, J. A. D., & Howland, L. 2015. “Is the desire for status a fundamental human motive? A review of the empirical literature.” *Psychological Bulletin* 141(3): 574.
- Bjornstrom, E. S., Ralston, M. and Kuhl, D. 2013. “Social cohesion and self-related health: The moderating effect of neighborhood physical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52(3-4): 302-312.
- Bourdieu, P. 1986. “Le Forms of Capital.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ed. JG, Richardson.” *New York: Greenwood*.
- Coleman, J.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95-120.
-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1996. “Incorporating Equal Opportunities For Women And Men Into All Community Policies And Activities.”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 Ferlander, S. 2007. “The importance of different forms of social capital for health.” *Acta Sociologica* 50(2): 115-128.
- Fiske, S. T. 2010. “Interpersonal stratification: Status, power, and subordination.”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941-982.
- Goldman, M. J., Davis, A. and Little, J. 2016. “Controlling land they call their own: Access and women’s empowerment in northern Tanzania.” *The Journal of Peasant Studies* 43(4): 777-797.
- Gould, R. V. 2002. “The origins of status hierarchies: A formal theory and empirical test.”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7(5): 1143-1178.
- Gregg, A. P., Mahadevan, N. & Sedikides, C. 2018. “Taking the high ground: The impact of social status on the derogation of ideological opponents.” *Social Cognition* 36(1): 43-77.

- Grosz, M. P., Nagengast, B., Trautwein, U., Lechner, C. & Roberts, B. 2019. "Is the Desire for Fame Related to Well-being or Ill-being?"
- Kabeer, N. 1999. "Resources, agency, achievements: Reflections on the measurement of women's empowerment." *Development and Change* 30(3): 435-464.
- Koski, J. E., Xie, H. & Olson, I. R. 2015. "Understanding social hierarchies: The neural and psychological foundations of status perception." *Social Neuroscience* 10(5): 527-550.
- Krumbiegel, K., Maertens, M. and Wollni, M. 2020. "Can employment empower women?: Female workers in the pineapple sector in Ghana." *Journal of Rural Studies* 80: 76-90.
- Leary, M. R., Jongman-Sereno, K. P. & Diebels, K. J. 2014. "The pursuit of status: A self-presentational perspective on the quest for social value." *The Psychology of Social Status*: 159-178.
- Majokweni, Z. P. and Molnar, J. J. 2021. "Gender and rural vitality: Empowerment through women's community groups." *Rural Sociology* 86(1): 1-25.
- Maligalig, R., Demont, M., Umberger, W. J. and Peralta, A. 2019. "Off-farm employment increases women's empowerment: Evidence from rice farms in the Philippines." *Journal of Rural Studies* 71: 62-72.
- Marshall, T. H. 1992. "Bürgerrechte und soziale Klassen." *Campus: Frankfurt a. M.*
- Narayan, D. 2005. *Measuring Empowerment: Cross-Disciplinary Perspectives* World Bank Publications.
- Nyqvist, F., Gustavsson, J., and Gustafson, Y. 2006. "Social capital and health in the oldest old." *International Journal of Ageing Later Life* 1(1): 91-114.
- Park, D. S. 1996. "A sociological analysis on the roles of farm women in Korea." *Journal of Rural Development* 19(Winter): 243-261.
- Pettersen, L. T. and Solbakken, H. 1998. "Empowerment as a strategy for change for women in western industrial countries." *Sociologia Ruralis* 38(3): 318-330.
- Portes, A. 1998. "Social capital: Its origins and applications in modern sociology." *Annual Review of sociology* 24(1): 1-24.
- Putnam, R. 1993. "The prosperous community: Social capital and public life." *The*

American Prospect 13(Spring), Vol. 4.

Putnam, R. D.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Simon and schuster.

Sedikides, C. & Guinote, A. 2018. "How status shapes social cognition: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the status of status: vistas from social cognition." *Social Cognition* 36(1): 1-3.

Seymour, G. 2017. "Women's empowerment in agriculture: Implications for efficiency in rural Bangladesh." *Agricultural Economics* 48: 513-522.

Shortall, S. 2017. "Gender and agriculture." B. B. Bock and S. Shortall(eds.). *Gender and Rural Globalization*. Boston, MA: CABI. 89-99.

Solbakken, H. 1996. "Planning for Empowerment? An Application of Gender Planning in Zambia." A Dissertation as a Part of MSc Development Studies. London School of Economics, London.

Swencionis, J. K., & Fiske, S. T. 2018. "Cross-status interactions: Concerns and consequences." *Social Cognition* 36(1): 78-105.

Whitley, R. and McKenzie, K. 2005. "Social capital and psychiatry: Review of the literature." *Harvard Review of Psychiatry* 13(2): 71-84.

Wright, W. and Annes, A. 2016. "Farm women and empowerment potential in value-added agriculture." *Rural Sociology* 81(4): 545-571.

Young, I. M. 2000. *Inclusion and Democracy*. Oxford University Press.

[웹사이트]

강원도청. <www.provin.gangwon.kr>.

경기도청. <www.gg.go.kr>.

경상남도청. <www.gyeongnam.go.kr>.

경상북도청. <www.gb.go.kr>.

나주시청. <www.naju.go.kr>.

뉴스스토리 인터넷 기사. <<http://www.news-stor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282>>.

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사업정보시스템. <<https://uni.agrix.go.kr>>.

부여군청. <www.buyeo.go.kr>.

아산시청. <www.asan.go.kr>.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영월군청. <www.yw.go.kr>.

일본 나가노현. <<https://www.pref.nagano.lg.jp/index.html>>. 검색일: 2021. 7. 25.

일본 내각부. <https://www.gender.go.jp/about_danjo/basic_plans/5th/index.html>. 검색일: 2021. 7. 25.

일본 농림수산물성. <<https://www.maff.go.jp>>. 검색일: 2021. 7. 25.

일본 농업법인협회. <<https://hojin.or.jp>>.

일본 도도부현별 통계와 랭킹으로 보는 현민성 홈페이지. <<https://todo-ran.com/t/kiji/22967>>. 검색일: 2021. 7. 22.

일본정부 법령검색 홈페이지. <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411AC0000000106_20181022_430AC00000000062>. 검색일: 2021. 7. 25.

일본 히로시마시 농림수산진흥센터. <<http://www.haff.city.hiroshima.jp/hp-josei/jigyos/josei-jigyos.htm>>.

전라남도청. <www.jeonnam.go.kr>.

전라북도청. <www.jeonbuk.go.kr>.

제주특별자치도청. <www.jeju.go.kr>.

충청남도청. <www.chungnam.go.kr>.

충청북도청. <www.chungbuk.go.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 <<https://gsis.kwdi.re.kr>>. 검색일: 2021. 7. 22.

한국행정학회 행정학전자사전. <https://www.kapa21.or.kr/data/kapa_dictionary.php>.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ILO). <<https://www.ilo.org/public/english/bureau/gender/newsite2002/about/defin.htm>>.

[법률조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시행 2020. 12. 8. 법률 제17618호, 2020. 12. 8., 타법개정) 제3조제2호.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3597&ancYd=20201208&ancNo=17618&efYd=20201208&nwJoYnInfo=Y&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검색일: 2021. 8. 18.

「농업협동조합법」(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45조 제8항.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6%8D%EC%97%85%ED%98%91%EB%8F%99%EC%A1%B0%ED%95%A9%EB%B2%95>>. 검색일: 2021. 8. 18.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시행 2020. 3. 11. 법률 제16786호, 2019. 12. 10., 일부개정) 제1조, 제2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2193&ancYd=0191210&ancNo=16786&efYd=20200311&nwJoYnInfo=Y&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검색일: 2021. 8. 18.

KREI

www.krei.re.kr

농촌 지역사회에서 여성농업인 지위와 정책 과제

The Roles of Rural Women and Gender Inequality in
Local Communities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T. 1833-5500 F. 061) 820-2211



9 791161 495217
ISBN 979-11-6149-521-7